

연구보고서 2022-54

#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강신욱

이원진·김현경·오욱찬·정은희·남윤재·전지현·정해식·김미복·김안나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2-54

##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18-8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54>

## 발|간|사

한국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렇듯이 소득보장제도 역시 복잡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각 시기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고, 또한 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그 시기를 규정하는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제도의 역사에 내포된 고유한 사정이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를 발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복잡하게 분화된 제도들이 전체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배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로 연구 결과물을 남기려는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시도를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목록을 파악 및 정리하고, 제도들의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집적하려는 것이 이 연구가 의도하는 바이다. 제도의 목록을 수집하고 제도별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결과를 DB의 형태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만큼 이 연구가 갖는 현실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의미 있는 연구를 기획하고 총괄한 강신욱 선임연구원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연구에 참여하여 준 모든 원내외 연구진들(우리 연구원의 김현경, 오옥찬, 정은희, 정해식 연구위원과 이원진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원과 남윤재 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김안나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미복 박사)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

이 연구는 다년차 연구의 첫해 결과물이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진들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 1  
요 약 ..... 7

##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25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목적 ..... 3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4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 39**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범위 ..... 41  
제2절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 47  
제3절 DB 작성의 단위 ..... 51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 55**  
제1절 DB 항목의 의미 ..... 57  
제2절 DB 항목의 구성 ..... 58

---

## 제2부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b>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b> .....	<b>69</b>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	71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 및 구성 .....	73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구축 .....	76
<b>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b> .....	<b>89</b>
제1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 종류 .....	91
제2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내용 .....	96
제3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DB 처리 방식 .....	99
<b>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b> .....	<b>111</b>
제1절 개요 및 사업 범위 .....	113
제2절 사업별 개요 .....	116
제3절 사업 특성 - DB 정보 .....	130
<b>제7장 장애보훈 분야</b> .....	<b>137</b>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	139
제2절 포함 및 제외 사업의 주요 특징 .....	140
제3절 사업 및 급여의 구분 .....	145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 구축 결과 .....	148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154
<b>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b> .....	<b>157</b>
제1절 주요 특징 .....	159



제2절 사업 범위 .....	159
제3절 사업별 개요 .....	161
제4절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	164
제5절 사업별 DB 정보 .....	171
제6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181
<b>제9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b>	<b>185</b>
제1절 주요 특징 .....	187
제2절 사업의 범위 .....	187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특성 .....	189
제4절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개요 .....	198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203

### 제3부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b>제10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b>	<b>207</b>
제1절 분야별 DB의 종합과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	209
제2절 세부 사업의 기본적 특성 분포 .....	210
<b>제11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b>	<b>221</b>
제1절 개인 대상 급여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분포 .....	223
제2절 소득-재산 기준의 분포 .....	225
제3절 수급자의 분포 특성 .....	230

---

<b>제12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b> .....	<b>235</b>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	237
제2절 DB의 개선을 위한 과제 .....	242
<b>참고문헌</b> .....	<b>247</b>
<b>부 록</b> .....	<b>257</b>
부록 1. DB의 항목 구성과 항목별 값의 구분 .....	257
부록 2.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	262
부록 3. 농업·농촌 분야 .....	264



# 표 목차



〈표 1-2-1〉 DB의 기본 단위(예시) .....	53
〈표 2-4-1〉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세부사업명) .....	72
〈표 2-4-2〉 공적연금제도 관련 세부사업의 급여 구성(용자사업 제외) .....	77
〈표 2-4-3〉 기초연금의 급여 및 세부급여 구분 .....	79
〈표 2-4-4〉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도의 예산 규모(2019년) .....	84
〈표 2-4-5〉 공적연금제도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	84
〈표 2-4-6〉 연금급여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	85
〈표 2-4-7〉 연금급여의 수급자 규모(2019년) .....	86
〈표 2-4-8〉 기초연금의 세부 급여별 수급자 규모(2019년) .....	87
〈표 2-5-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제도 .....	92
〈표 2-5-2〉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급여와 세부급여 .....	94
〈표 2-5-3〉 세부사업의 급여 및 세부급여 종류 .....	96
〈표 2-5-4〉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예산 및 결산 규모 .....	104
〈표 2-5-5〉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수급자 규모 .....	106
〈표 2-5-6〉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별 대상자 추정 .....	107
〈표 2-6-1〉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 목록 .....	114
〈표 2-6-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2019.10.1. 이전) .....	117
〈표 2-6-3〉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121
〈표 2-6-4〉 2019년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지원액 및 구직급여액 .....	125
〈표 2-6-5〉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종사상지위, 사업장 규모 지원 요건 .....	132
〈표 2-7-1〉 장애·보훈 분야 검토 세부사업 현황 .....	140
〈표 2-7-2〉 장애·보훈 분야 DB에 포함된 사업의 구성 .....	142
〈표 2-7-3〉 장애·보훈 분야 DB에서 제외된 사업의 구성 .....	144
〈표 2-7-4〉 장애·보훈 분야 급여 분리 결과 .....	147
〈표 2-7-5〉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담당 부처 .....	149
〈표 2-7-6〉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지원 성격 .....	149

〈표 2-7-7〉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연령 조건 .....	150
〈표 2-7-8〉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	151
〈표 2-7-9〉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지급주기 .....	153
〈표 2-7-10〉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자원 .....	153
〈표 2-8-1〉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범위 .....	160
〈표 2-8-2〉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개요 .....	163
〈표 2-8-3〉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	165
〈표 2-8-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급자 규모 .....	180
〈표 2-9-1〉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 DB 개요 .....	189
〈표 2-9-2〉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수급자 규모 .....	202
〈표 3-10-1〉 소득보장제도 DB의 제도 위계별 구성 .....	209
〈표 3-10-2〉 부처별 세부사업 수 및 예산(예산 규모 순) .....	211
〈표 3-10-3〉 지원 방식의 분포 .....	212
〈표 3-10-4〉 지원 성격의 분포 .....	213
〈표 3-10-5〉 지원(급여) 대상의 분포 .....	214
〈표 3-10-6〉 기여 조건 여부와 기여 조건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	215
〈표 3-10-7〉 수급자 특성별 급여 차등 여부 .....	215
〈표 3-10-8〉 정액급여 및 보충급여 분포 .....	216
〈표 3-10-9〉 급여 지급주기의 분포 .....	217
〈표 3-10-10〉 급여 지급 한도(최대 수급기간) 유무 .....	218
〈표 3-10-11〉 회계 구분별 분포 .....	219
〈표 3-11-1〉 수급자격의 성별 제한 .....	224
〈표 3-11-2〉 수급자격의 연령 제한 여부 .....	224
〈표 3-11-3〉 수급자격의 장애 관련 제약 .....	225
〈표 3-11-4〉 소득-재산 기준 적용 유형 .....	226
〈표 3-11-5〉 소득-재산 조사의 단위 .....	227
〈표 3-11-6〉 소득-재산 조사의 방식과 기준선 범주 .....	228



〈표 3-11-7〉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세부사업의 선정기준선 분포(기준중위소득 대비 %) · 229	229
〈표 3-11-8〉 수급 대상자 단위 분포 .....	231
〈표 3-11-9〉 세부사업별 수급자 수(개인단위, 수급자 수 순) .....	232
〈표 3-11-10〉 세부사업별 수급 건수(수급 건수 순) .....	233
〈부표 2-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	262
〈부표 3-1〉 농업농촌 분야 소득지원 사업 .....	264
〈부표 3-2〉 농림업 분야 DB 사업 현황 .....	269
〈부표 3-3〉 재해대책비 사업 개요 .....	271
〈부표 3-4〉 재해대책비(용자) 사업 개요 .....	272
〈부표 3-5〉 경영이양직불 사업 개요 .....	273
〈부표 3-6〉 발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	274
〈부표 3-7〉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 개요 .....	275
〈부표 3-8〉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 개요 .....	276
〈부표 3-9〉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277
〈부표 3-10〉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개요 .....	278
〈부록 3-1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 .....	279
〈부표 3-12〉 경관보전직불 사업 개요 .....	280
〈부표 3-1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282
〈부표 3-14〉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	283
〈부표 3-15〉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 개요 .....	284
〈부표 3-16〉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사업 개요 .....	285
〈부표 3-17〉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개요 .....	288
〈부표 3-18〉 농지연금(용자) 사업 개요 .....	289

# 그림 목차

---

[그림 2-6-1] 생활안정자금 사업 월평균 소득의 정의 .....	124
[그림 2-6-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	129
[그림 2-9-1] 2019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	193



## Abstract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Income Security System DB**

Project Head: Kang, Shin-Wook

The income security system DB is a dataset of each income security system as an observation un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systematic DB for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major information on Korea's income security systems. Once a list of income security systems can be prepared for continuous accumulation of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by converting it into quantitative information, it will be possible to grasp the entire system at a glance and easily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each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To prepare the DB, projects for performing the income security func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list of budget program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data issued by the ministry were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by converting them into quantitative informati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can be regarded as excluding the system of benefits in kind but meaning the rest (i.e., cash bene-

---

Co-Researchers: Lee, Wonjin · Kim, Hyeon-Kyeong · Oh, Ukchan · Jung, Eunhee · Nam, Yunjae · Jun, Ji-hyun · Jung, Haesik · Kim, Meebok · Kim, Anna

fit system) of the government's social security systems. This study did not adopt a method of limiting the scope of the system to be included in the DB according to the strict theoretical definition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Instead, various projects of cash payment were included in the DB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so that users of the DB could set their own analysis scope.

The DB was established by extracting the budget data on the social security projects of cas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n detailed expenditure of fiscal 2019. In this data, the hierarchy of the systems is divided into programs, unit projects, and detailed projects. This study further subdivided the detailed projects into hierarchies such as benefits and detailed benefits, and in some cases, observation units were subdivided into detailed benefits for each qualification standard.

In this DB,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were quantitatively expressed by each item (column). Items in the DB mainly include such items as system names (of detailed projects, benefits, detailed benefits, etc.), the Minister in charge, and support method and nature. In addition, such related variables were included in relation to eligibility a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 condition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etc.) and income and property conditions (including deduction and conversion-related information). In addition, such items

were included as the nature and decision method of benefits, information on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accounting classification, amount of settlement of accounts, etc.) and the size of recipients.

In order to establish an income security system DB, cash benefit systems were first reviewed for each field. The system in the field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was covering 18 detailed projects, including the income support for retired individuals or the elderly, and various public pension-related systems for working-age groups to guarantee the retirement income.

The family and child income support sector was including 37 cash payment projects for families and children. Income support for working-age groups was covering the unemployment benefits and training expenses to develop workers' abilities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employment services and cash support for the vulnerable in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labor cost support for local job creation,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child tax credit.

The disabled and veterans sectors were mainly covering the projects targeting the disabled and veterans. Projects in the field of support for the disabled may be classified into employment and welfare support, industrial accident support, and others. Veterans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support for national merit, for veterans, and for soldiers. There are 72 detailed projects in the field of disability and veterans.

#### 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In the field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examination was held for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supporting the low-income class. First of all,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covers such benefits as livelihood, housing, education, family dissolution, and funeral. . Next coverage was such projects as self-support, and asset formation support operated as part of self-support projects. Finally, it included an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a health insurance support project for the next lowest class, and a social and natural disaster victim support project.

Most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s in the education sector are mainly scholarship support projects center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also includ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ees for preschool children, employment-linked incentive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 representative income support project for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re are scholarship projects such as the national scholarship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or outst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s an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low-income students. Income security system in the culture and arts sector includes the artist life stabilization fund projec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a loan project to help artists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ir livelihoods.

As a result of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DB by combining



the DBs for each field as described above, a dataset covering 458 observation units was completed. Among them,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or 99 detailed projects (total budget of about KRW100 trill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 detailed projects, about KRW44.4 trillion) is responsible for the largest number of detailed projects and budgets, and cash payments in terms of support methods, and simple cash benefits in terms of support nature were found to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detailed projects or budge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detailed projects targeting individuals (not household)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 majority of 89. The number of detailed projects with contributing conditions mainly for social insurance-related systems is smaller than those without contributing conditions, but the budget is larger. In terms of financing, it can be seen that detailed projects were financed by fund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all aspects of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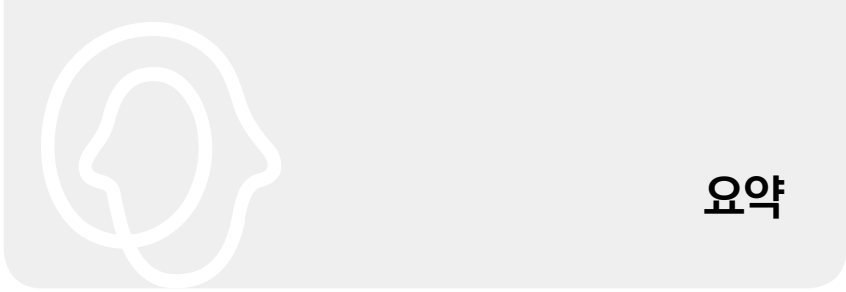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There were 20 detailed projects imposed of both income and property conditions, of which 18 adopted the tariff income method. Nearly half of the detailed projects that impose income or property conditions use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tegory while adopting the tariff income metho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bout 90% of the detailed project budget using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tegory adopts the selection criterion withi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

detailed project with the largest number of recipients was the basic pension (about 5.35 mill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B is largely divided into the direction of expanding and supplementing the list of systems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the items of DB. In order to supplement the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various expenditure reduction and exemption projects and tax expenditure projects that were excluded from this DB. In addition, methods to include support projects for institutions should be reviewed.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come security system DB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DB, including in-kind support projec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criteria in segmenting the detailed projects into benefits and detailed benefits in this DB.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information loss may inevitably occur, which is expected to be supplemented in the process of continuously adding up and developing characteristic items or options for each item. Although it is an important item for effectiveness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estimates of the size of potential recipients were not included in this DB. In the future, data supplementation and methodological research are needed so that the information can be included in the DB.

Keyword : income security, income security system, data base, cash benefit, expenditure budget, recipients, eligibility condition



##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 제1장 서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면 전체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의 특성별 분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DB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출하였고, 사업 부서가 발행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양적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3개의 부로 구성된다. 1부(1~3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와 구체적인 작성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2부(4~9장)에서는 전체 제도를 노후소득보장 분야(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6장), 장애·보훈 분야(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9장)로 나누어 DB에 포함될 제도를 추출하고, 개별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부(10~12장)에서는 분야별로 구축된 DB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DB에 대해 종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된 DB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소득보장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즉 현금급여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와 제도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엄밀한 이론적 정의에 따라 DB에 포함될 제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DB 작성의 실용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DB에 포함시키되 각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DB의 사용자가 분석 범위를 각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 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DB에 포함된 것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된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 이외에 지출보전 사업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였고 자활 및 일자리 사업, 각종 용자, 자산형성,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도 포함하였다. 개인과 가구 대상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사업제 대상 지원 사업은 제외하였다.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결산 금액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DB에 담기 위해서였다.

소득보장제도 DB는 제도를 하나의 관측 단위로 하는 데이터인 만큼 제도를 구분하는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세출/지출 세부 사업 예산편성 현황」에는 사업의 위계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을 더 세분하여 급여, 세부 급여 등의 위계를 추가로 두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기준별 세부급여로 관측 단위를 세분하였다.

###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각 제도를 비교할 때에는 제도별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제도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설명 틀이 필요하다. 본 DB에는 각 항목(칼럼)을 통해 이 특징들을 계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DB에 포함된 항목에는 주로 제도명(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등), 담당 부처, 지원 방식과 성격 등 항목이 포함되었고 또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건(성별, 연령, 학력 등), 소득 및 재산 조건(공제 및 환산 관련 정보 포함) 등 관련 변수가 포함되었다. 또한 급여의 성격과 결정 방식, 예산 및 결산 관련(회계 구분, 예결산 금액 등) 정보, 수급자의 규모 등 항목이 포함되었다.

## 제2부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제도에는 은퇴한 개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과 근로연령층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각종 공적연금 관련 제도들이 포함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3대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각 연금 관련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업과 용자사업이 포함되었다. 공적연금과는 별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었다.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업이나 노인단체나 노인보호시설지원 사업 등은 가구나 개인

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DB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는 모두 18개 사업이다.

공적연금 관련 사업은 대부분 기여 조건이 있는 사업이다. 다만 급여의 수준은 기여 이력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한다. 기초연금은 기여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가구 일부(노인 부부)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부과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약 61조 원이며 그 가운데 공적연금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른다. 수급자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약 535만 명)이고, 공적연금의 퇴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국민연금(약 519만 명)이다.

## 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5장은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의 제도 설계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기술했다. 5장에서는 총 37개의,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종류와 급여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개별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액 결정 방식, 예산 및 수급자 규모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시했다.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 내용과 예산 및 결산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제도에 대한 정보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해당 사업에 대한 2019년 사업안내 자료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활용했다. 제도명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2019)에서 제공하는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액)」 원자료의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을 이용했다. 세부사업

명은 동일하나 제도 설계상 세부급여로 나눈 경우는 해당 부처의 사업 안내 자료에 기술된 세부급여 명칭을 그대로 활용했다.

## 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는 크게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현금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국세청이 담당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근로연령층 소득지원제도는 대부분 근로할 수 있는 연령으로 연령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학력 조건 및 전공 제한도 없다.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는 주로 청년 대상 제도로, 취업성공패키지는 18~69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세,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령 상한이 39세 등이다. 대부분 사업에서 종사상지위 제한 조건을 주로 사용한다.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과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자영자와 실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등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특고 포함 자영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자(비경활+실업자),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자영자,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된다.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다. 소득 조건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안정자금(용자)은 월소득이 각각 210만 원, 176~251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각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100%, 120%, 65%라는 소득 요건이 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부 또는 개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2,000~4,000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급여액 결정 방식은 구직급여액,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기여 이력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고,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각각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1~3년간 연간 1,650~2,7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등 급여액이 균등하게 결정되고, 그 외는 최대 급여액 또는 최대 용자액만 결정되어 있다.

2019년 결산액 기준, 사업 규모는 구직급여 8조 9백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1조 3천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2백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이 가장 크다. 그다음은 4조 3천억 원의 근로장려세제, 7.3천억 원의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하는 국세청 사업이다. 수급자 규모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가 388만 5천 가구,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가 84만 8천 가구로 가장 크다. 그다음은 실업급여 152만 7천 명,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 약 51만 명,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15만 명 순이고, 취업성공패키지 수급자는 1유형 10만 3천 명, 2유형 12만 명



으로 총 22만 3천 명이다.

## 제7장 장애·보훈 분야

소득보장 DB에서 장애·보훈 분야는 주로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장애 분야에 포함되는 사업은 고용복지 지원, 산업재해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훈 분야는 국가 유공자 지원, 제대군인 지원, 장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2개 분야, 6개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장애·보훈 분야 사업은 정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72개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 31개 세부사업은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1개 세부 사업이 소득보장 DB에 포함되었다.

소득보장 DB에 포함된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41개는 장애 분야 15개, 보훈 분야 26개로 구성된다. 장애 분야 사업은 다시 장애인 고용·복지 지원 6개, 산업재해 지원 3개, 기타 지원 6개로, 보훈 분야 사업은 국가 유공자 지원 19개, 제대군인 지원 1개, 장병 지원 6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의 소관 사업들이다. 급여의 유형은 단순급여와 단순용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급여의 자격에서는 사회보험인 산재 관련 급여만 기여 조건이 존재했고, 산업재해나 보훈 분야의 사업이 많아 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급여가 많다. 산재 급여 외에는 대부분 균등 급여이면서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가 많다. 재원에서는 산재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보훈, 군인복지, 자동차사고 지원 등 별도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장애·보훈 분야 소득보장제도별 사업 대상자를 추정하는 것은 현재

로서는 쉽지 않다. 이는 장애, 산재, 보훈 등 각 사업의 대상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적인 표본조사에서 절대적인 사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표본조사의 경우 장애, 산재, 보훈 등의 정보 자체가 조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정 집단에 특화된 별도의 표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재산 등의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이 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는 자활사업과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다.

DB에 입력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급여 형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현금급여’로 코딩하였지만,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긴급복지지원제도/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현물급여’로 코딩하였다. 급여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급여를 ‘인건비’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자산형성지원’으로 코딩하였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 지원,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육보호·장제보호,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출보조’로

코딩하였으며, 그 밖에 특정 지출을 전제하지 않은 급여를 '단순급여'로 코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사상자 지원 사업과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188백만 원/중소도시 118백 만 원/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 셋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6; 보건복지부, 2019f, p. 11). 넷째, 해산·장제급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자활사업은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타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은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 않는데,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소수의 사업은 소득·재산과 급여의 관계가 정적인 사례와 부적인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과 급여의 관계가 부적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231). 주거급여는 보충급여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급여를 차감한다(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둘째,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19e, p.21, p. 64). 셋째, 자활사업의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하는 생계급여이므로, 자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19d, p. 137).

## 제9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야 소득보장제도들은 대부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 사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연령에 따라 학령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사업, 고등학생 대상 취업연계 장려금, 대학생 대상 대표적인 소득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과 기획재정부의 중·고등학생 대상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제도로는 예술인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보장 DB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다. 먼저, 교육 영역은 교육부의 유아 단계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사업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 고졸 취업자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대표적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인문 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이공계 분야 우수 학생의 조기 발굴과 학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와 기획재정부의 저소득층 중고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추가된다. 소득보장제도 DB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을 소개한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는, 먼저 제도의 기본정보로 시작한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는 각 부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명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이 하부사업

으로 구분될 경우 세부급여로 제시하였다. 세부급여에 제시된 사업이 소득보장 DB의 기본 분석 단위이며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 DB는 세부급여에서 제시된 사업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소득보장 DB 작성을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의 경우,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은 성별의 구분은 없으며 연령 기준은 사업 내용에 따라 연령의 하한과 상한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코딩하였다.

소득 및 재산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장학금 및 단순급여 지급방식의 교육 및 문화예술사업들은 기여 조건의 유무 및 성격 항목에서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여부 항목에서 선정 대상의 기준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고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급여액 결정 방식 영역은 기여 이력이나,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은 대부분이 장학금 혹은 단순급여 방식이므로 기여 이력이나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에는 차등이 없이 설계되어 '균등'으로 코딩되었다. 회계 구분을 위한 재원과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 예산 금액 및 결산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사업 내용에 따라 항목을 기입하였다.

## 제3부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 제10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분야별 DB를 합하여 종합 DB를 구축한 결과 458개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이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99개의 세부사업(총예산 약 104조 원)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세부사업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23개 세부사업, 예산 약 44.4조 원)이고, 지원 방식 면에서는 현금 지급이, 지원 성격 면에서는 단순급여가 세부사업 수나 예산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89개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보험 관련 제도에서 기여 조건이 있는 사업은 수적으로는 기여 조건이 없는 사업에 비해 소수이지만 예산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사업수와 예산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1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수급자의 선정기준 관련 특성은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DB에 포함된 제도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87개의 세부사업이 성별에 따른 수급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58개 세부사업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75개 세부사업이 장애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66개 세부사업이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선정기준을 두지 않고 있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부과하고 있는 사업은 20개였는데, 그 가운데

18개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 가운데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하면서 기준중위소득 범주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범주를 활용하는 사업 예산의 약 90%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선정기준선을 두고 있는 세부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자의 규모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기초연금(약 535만 명)이었다.

## 제12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DB의 개선 방향은 크게 제도의 목록을 확대·보완하는 방향과 DB의 항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분된다. 향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지원 사업 가운데 이번 연구의 DB 작성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감면제도와 조세지출 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기관 대상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물지원 사업까지 포함하여 소득보장제도 DB를 사회보장제도 DB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체 및 산업지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DB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촌·농가소득지원 분야 사업도 장기적으로 DB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DB에는 세부사업을 급여 및 세부급여로 세분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급여 및 세부급여 구분이 갖는 의미가 제도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역시 DB의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각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보의 손실은 특성 항목이나 항목별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새로운 제도군이 DB에 포함될 경우 항목이 추가되거나

항목의 구분 값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DB는 많은 변화와 발전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잠재적 수급자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이번 DB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잠재적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미시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지만, 이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DB에 해당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방법론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본 DB를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 현금급여, 지출예산, 수급자, 수급 조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부

##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1. 소득보장제도들의 상호 연관성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00년대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더라도 국민초생활보장제도(2000), 기초(노령)연금(2008), 근로장려세제(2009), 보편적 아동수당(2019) 등 중요한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이미 시행되던 제도들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정책 변화까지를 포함하면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목록은 더욱 길어진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소득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의 빈곤이나 불평등 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시장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충분히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소득보장제도가 어떤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길래 빈곤과 불평등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소득보장제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양한 개별 제도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 전체의 성과와 한계는 개별 소득보장제도들의 성과 및 한계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제도 전체의

기능은 개별 제도의 기능을 단순히 합한 것이라기보다 제도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될지는 얼마나 많은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각 제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각 제도는 대상자 집단을 서로 배타적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지만(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반대로 대상자를 중첩되도록 하면서 급여액이 보완 관계를 이루도록 설정되기도 한다(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기초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배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구 단위로 소득이 공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집단에게도 효과가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과 같이 사는 가구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소득보장제도가 개별 가구와 개인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소득보장제도 전체의 성과와 한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득보장제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소득보장제도를 개별 제도가 아닌 제도의 묶음이란 관점에서, 개별 제도들의 단순 합이 아닌 상호 연관성을 지닌 체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체계’로서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제도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일 때, 제도의 복잡

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가 사각지대의 문제일 것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는 개별 제도가 잠재적 위험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설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바가 크지만, 한 제도의 한계를 다른 제도가 보완하도록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구인회, 손병돈(2005), 손병돈(2012)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득 보장급여가 빈곤층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권혁창(2021)의 연구는 일정한 연령대(초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의 관계를 지역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김상호(2021)는 고령층 대상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기존의 제도들을 대체할 때의 효과에 대해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윤상용(2013)은 복수의 제도로 구성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들을 국가별로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비록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개별 제도의 효과가 아닌 관련된 복수의 제도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문헌들에서는 포괄하는 대상 집단과 제도의 범위가 넓게 설정된다. 여유진(2009)은 한국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후, 한국의 사회보장급여가 절대빈곤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홍경준(2011)은 공적이전소득이 근로빈곤층의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용재, 김용미(2018)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 추이를 분석하고 한계를 지적하였다. 강신욱 외

(2021)는 한국의 주요 소득보장급여들이 빈곤층의 빈곤격차(poverty gap)를 얼마나 축소시키는지 분석한 바 있다.

관련된 소득보장제도들이 집합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는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도 분석된 바 있다. 강신욱 외(2017b)는 개별 제도가 아닌 여러 제도의 결합된 효과를 소득보장 ‘제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강신욱 외(2017b)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는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군’ 단위의 평가가 적절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강신욱(2017)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보장제도군의 포괄성과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 고령층에 대해서는 포괄성과 충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근로연령층, 특히 실업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정 계층에게 소득보장제도가 집중되고, 일부 계층에는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소득보장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되지 않고 개별 제도별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별 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특정 집단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제도 설계상 배제된 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 결과 빈곤 위험이라는 소득보장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 속도와 폭은 제한되게 된다.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강신욱 외, 2017a)’ 또는 ‘재구조화’가 우선적으로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대명 외(2020)는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가 기존 제도의 선정기준 조정이나 급여수준 인상 등 미시적 개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역할조정을 포괄하는 것임을 지적한다(노대명 외, 2020, p. 4. 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이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 이른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와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강남훈, 2019;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이나, 부(負)의 소득세 제도(김낙희, 변양호, 이석준, 임종룡, 최상목, 2021)나 그 변형된 소득보장제도 대안(박기성, 변양규, 2017)들은 모두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가 갖는 문제는 개별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고, 기존 제도들을 새로운 제도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완전기본소득 제안의 경우 기본소득은 현행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들을 대체하자는 것이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나 대안 마련 관련 논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대안들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조정함으로써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개별 제도들 사이의 보완 관계 또는 대체관계를 염두에 두고 소득보장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 3.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소득보장제도 선행 연구들에서 소득보장제도가 포괄하는 개별 제도의 범위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원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여유진(2009)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제도별 급여들은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보고하는 10여 개의 제도들이고, 강신욱 외(2021)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7개 제도들의 대상자와 수급자 실태를 분석하였다. 물론 각 통계자료에서 기타 정부보조금 등의

이름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급여들을 조사하여 합산한 후 보고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등은 가구나 개인 등의 소득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고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원천별 소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가구(개인)의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료에 포함된 제도들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가구(개인)의 수급 여부와 당해 연도 급여액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수급 자격 보유 여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들 조사자료를 통해서만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윤곽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지출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수는 미시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제도들의 수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들의 전체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소득보장제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소득보장제도의 조정이나 체계화를 논의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근거 자료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로, 각 제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는지, 즉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보장제도들 가운데에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유지하는 제도들이 있다.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와 분포가 결정된다. 각 제도들

사이의 중복이나 보완 관계를 파악할 때에도 대상자의 중첩 여부가 중요하다. 나아가 제도 간 역할 조정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선정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로, 급여의 성격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다. 각 제도가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들이 어떤 조건으로 시행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도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통상 소득보장제도의 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다양한 유형의 급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출 수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감면이나 할인의 형태로 보조가 이뤄지는 급여들도 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적 임금 보조의 형태를 띠는 급여들이 있는가 하면 낮은 금리의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들도 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 대상자에게 무기한 반복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들도 있고, 반대로 생애 단 한 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다.

이 밖에도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을 설명하는 정보는 매우 많다.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상호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도들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가구나 개인단위의 미시 조사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각 제도의 사업설명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도별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에는 해당 제도의 급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표본조사에 포함된 가구별 수급액을 통해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든 가구나 개인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는 미시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제도의 (잠재적) 수급자인 개별 가구나 개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집적되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가운데 소득 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소득보장을 표방하는 제도들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부 사업들까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매우 많을 것이다.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의 일차적 목적은 우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전체를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 DB의 두 번째 목적은, 각 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용이나 제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들의 특성을 담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 설계나 실행, 평가, 관련 연구 등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각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많은 제도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단지 수집되고 그 내용들이 기술(記述)의 형태로 전달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로 만드는 것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키우는 방법이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주요한 정보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집한 후, 이를 수량적 정보로 전환하여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량적 정보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에는 다양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포함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많은 소득보장제도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화하거나 그 가운데 일부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마찬가지로 유형 간 비교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시계열이 연장될 경우 개별 제도는 물론 제도군의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고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체계화하는 정책적 과제를 상정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제도들 가운데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들이 어떤 제도들이고 모두 몇 가지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들이 고령층 가운데 몇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에 있어서 제도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제도의 수급 여부나 급여액이 다른 제도의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예컨대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는 것인지 급여의 충분성을 높이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 연구의 방법

소득보장 DB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 연구와 행정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을 병행하였다.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제도 목록의 기본적 출발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재정 재정정보시스템><sup>1)</sup>을 통해 제공하는 「세출/지출 세부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 제시된 수천 개의 중앙정부 사업 가운데 소득보장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였다.

DB에 포함될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제도들의 특성을 설명할 항목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소득보장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문헌을 광범위하게 참고하였다. 앞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관련 연구들은 제도를 비교하거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어떤 특성들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항목들을 포함하여 제도의 설계, 투입, 산출 등을

1)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설명할 수 있는 항목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들에 대해 제도별로 그 값을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안내서나 지침서, 사업별 안내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소득보장제도 DB의 핵심적 특징이 제도의 특성을 수량적 정보로 전환하여 수집, 제공하는 것인 만큼 DB의 작성 단계나 활용 단계에서는 양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제도별로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특성별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자(개인 또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소득보장급여가 인구학적 특성 조건 이외에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의 소득 및 자산 보유액을 보고하고 있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2부의 사업별 분석에서 소개하였고, DB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3부에서는 소득보장제도들의 특성별 분포를 주로 분석하였는데, 이때에는 작성된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보장제도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제도들의 주된 특성은 무엇인지, 유형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등을 자료를 이용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세 개의 부(部)로 구성된다. 먼저 1부는 소득보장제도 DB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과 관련 선행 연구, 소득

보장제도 DB의 의미와 작성 목적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DB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DB에 포함될 소득보장제도들을 선정하는 과정과 DB의 작성 단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DB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 각 항목이 소득보장제도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값들을 부여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다. 작성된 DB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DB의 각 행(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장의 내용이라면 DB의 각 열(列)을 이루는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3장의 역할이다.

2부는 소득보장제도 DB를 구축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부에서는 DB에 포함되는 각 제도를 대상이나 영역별로 묶어 장을 구분하였는데, 노후소득보장 분야(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6장), 장애·보훈 분야(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8장), 농촌·농가소득지원 분야(9장),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10장) 등이 2부를 구성한다.

2부의 각 장이 공통된 구성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공통으로 다룰 것이다. 우선, 각 영역에 속하는 제도들의 주요한 특징과 DB에 포함된 제도들과 그렇지 않은 제도들에 대해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로 지칭되는 각 제도가 「세출/지출 세부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서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2부에서는 이들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DB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업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관측 단위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사업이 다양한 급여 및 세부 급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의 세부급여 안에서도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선정기준들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관측 단위가



급여일지, 세부급여일지, 아니면 자격기준별로 구분된 세부급여일지가 사업마다 달라지는데, 2부의 각 장에서는 사업별로 이러한 기본 관측치의 구분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기본 관측 단위에 대해 항목별로 값을 부여하는 것도 2부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2부가 소득보장 DB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면, 마지막 3부는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11장에서는 제도의 유형별로 소득보장제도(사업)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12장에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별 집단에 따라 해당되는 제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13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 제2장

###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범위

제2절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제3절 DB 작성의 단위



## 제 2 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범위

#### 1.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규정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일치된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에 따라, 사회정책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제도군에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맥키와 로울링슨(Mckay & Rowlingson, 2016)은 사회보장제도를 세 가지 범위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사회보장제이란 적정한 소득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게 정의할 경우, 사회보장이란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고, 더 좁게 정의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지원의 형식은 현금급여(cash benefit)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in-kind benefit)가 있다. 이때 현물급여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재화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소득보장제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sup>2)</sup> 그 가운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때 각종 세액 공제(tax credit)도 현금급여로 간주된다.

소득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현금급여라고 했을 때, 이에 포함되는 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실업보험급여 등의 사회보험 급여와 아동이나 가족 대상 급여, 그리고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부조성 급여 등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가운데에서 조세지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각종 세액 공제를 소득보장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급여가 아닌 경우 이를 소득 보장제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예산안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을 서로 배타적인 제도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사회보장급여에는 주로 사회보험(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 급여를, 그리고 소득보장급여에는 공공부조성 현금급여 이외에 신용지원(직접 용자와 보증)과 조세지출은 물론 푸드 스탬프(Food Stamps) 같은 현물급여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U. 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0<sup>3)</sup>). 이러한 미국 정부의 구분 방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설명하면서 사회보장급여란 보험을 든 경우(즉 일정 기간 노동하면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납부한 경우) 개인이나 가구원 일부에게 주어지는 급여로, SSI는 이전의 근로 이력과 무관한 급여로 구분한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 2)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회보장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맥키와 로울링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은퇴, 실업, 질병 등 특정한 사건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빈곤과 저소득을 완화시켜야 하고, 자원을 생애주기 내에서 또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부가적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거나 '전통적 의미' 가족이 해체되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 3)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예산안 보고서에서는 각 예산안이 사업의 성격별로 보고되지 않고 부서별로 보고되고 있다.

2022. 12. 20.). 푸드 스탬프를 소득보장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이 제도가 갖는 현실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용자나 보증 등 신용지원 사업들도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지칭하는지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가 지녀야 할 핵심적인 요건은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라는 점, 즉 사회(정책)적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 2. 국가 간 제도 비교 자료를 통해 본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OECD의 사회지출(OECD SOCX) 데이터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료에서 사회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소득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OECD는 사회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구나 개인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급여 또는 가구나 개인을 목표로 한 재정적 기여. 단 이 급여와 재정적 기여들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지불이 되거나 개인 간 계약이나 이전에 대한 직접적 지불이 되지 않아야 한다(OECD, 2019, p. 8).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지출은 기관에 의해 제공된 급여만 포함하고, 이때 사회적 급여는 현금급여와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세제 우대 조치(tax break)를 포함한다.

사회지출을 정의할 때에는 특정 기관의 지출이 ‘사회적’ 성격을 띠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 간 재분배나 민간의 강제적 기여를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지출 가운데 현금급여와 일부 세제 우대 조치와 포괄 범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지출에 행정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 소득보장제도의 지출(예산 및 결산) 범위를 파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OECD 사회지출 자료를 추계할 때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현금급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자본투자를 (연 단위로 환산되어) 포함한다는 점, 대출 사업을 사회지출에서 제외한다는 점, 재난이나 재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일시적 지출이 제외된다는 점 등은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방식과 상이하다.<sup>4)</sup>

OECD는 회원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 모형(OECD 조세-급여 분석 모형(OECD tax-benefit simulation model))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의 조세와 사회보장급여가 근로 연령대의 가구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모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형에는 각 회원국에서 지급하는 주요 사회보장 현금급여들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금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절의 내용을 참조할 것.



〈참고〉 OECD 조세-급여 모형에서 현금급여

-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급여
- 소득-재산 조사가 부과되는 공공부조(최저소득보장급여 포함)
- 민간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 고용 조건부 급여
-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시적 급여
- 한부모 급여를 포함하는 가족 또는 아동 대상 급여
- 학령 전 아동에 대해 시설에 아동을 위탁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급여 등

자료: OECD. (2020). The OECD tax-benefit simulation model: Methodology, user guide and policy applications. p.12.

이 모형은 각 국가의 다양한 현금급여를 포괄하고 있지만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가 간 제도 비교 모형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제도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주요 국가의 사회적 부조나 최저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SAMIP(The Social Assistance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terim Data-Set)의 경우 각 국가의 소득-재산 조사를 수반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Nelson, 2010a, p. 1, 2021. 9. 28.인출).

따라서 이들 모형의 범위와 본 연구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범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연구의 경우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제도를 선별한다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제도를 일차적으로 DB의 작성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3. 이론적 접근이 갖는 의미와 한계

소득보장제도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소득보장제도 DB 작성에서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DB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를 사전적(事前的)으로 구분하는 데 한 가지 준거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보장제도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보장(제도)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것도 국가별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소득보장제도의 범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유형의 제도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포함되고 다른 경우에는 제외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기는 것도 대부분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보장제도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DB에 포함될 제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DB 작성의 실용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큰 의미가 없다. 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 급여, 아동수당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소득보장제도 이외에도 다른 명목상의 목적과 명분으로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들 제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파악하여 이를 DB의 형태로 체계화하는 것인 만큼, 이들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 대상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일정한 이론적 기준에 따라 일부 제도들을 제외하는 대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하는 DB를 작성하면, 그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들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2절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 1. 중앙정부의 사업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될 제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제도들, 그 가운데에서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들의 목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들 제도의 전체 목록을 모두 개별적으로 취합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현금 지급제도들 이외에 각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들이 많고, 이들 사업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고 해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DB에 포함되어야 할 여타 특성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의 목록을 파악하고 수집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DB의 작성 대상을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향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DB 작성이 안정화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초적 자료 수집이 체계화될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을 아우르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자료에서 사업목록 추출

소득보장제도의 실행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사업의 내역과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액을 작성하고, 이것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부처별 예산편성과 관련된 목록을 살펴보는 것은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목록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열린재정, 2019)」(이하 <예산편성현황>)의 세부 사업 목록을 기준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추출하였다. <예산편성현황>은 연도별로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사업들에 대해 소관부처, 회계명, 사업의 분야 및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경비구분, 정부의 예산안 금액과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총 7,891개 세부사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차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 관련 사업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사업의 대상자나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제도군으로 구분하였다. 제도군은 크게 노후소득보장, 가족 및 아동 지원, 근로 연령층 지원, 장애·보훈, 기초생활보장, 농촌·농가 지원,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군은 최종적으로 DB에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각 연구의 검토 단위가 되었고 2부의 각 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각 제도군의 분석 대상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진 간 논의 과정을 거쳐 총 135개 세부사업을 선별하였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각 제도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제도’라는 명칭보다는 ‘사업’, ‘세부사업’ 등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분석 대상 사업의 선정은 소득보장제도를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그 범주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 대신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다. 장기적으로 DB의 대상을 사회보장제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1차 연도 DB 작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물(서비스)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 가운데에서 1년 차 DB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다.

선정된 분석 대상 사업은 크게 현금지원과 지출보전 사업으로 구분된다. 제도의 포괄 범위는 현금지원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보전 사업의 경우에도 장학금, 할인, 용자, 자산형성, 보험료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크레딧 사업 등과 같은 보험료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만, 보험료 경감 사업은 제외하였다. 보험료 지원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반면, 보험료 경감은 애초에 보험료가 할인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인 개인 입장에서는 지출 수요가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자활사업 및 재정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현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급여 성격이 소득보장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출보전 사업 중 최종 지원 내용이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인 경우, 예컨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바우처 사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택개조사업 등과 같은 설비 설치 관련 지원도 제외된다.

지원 대상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나 가구 대상 소득보장만 포함하며, 기관이나 사업체 대상 지원은 제외된다. 예컨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중에서도 저소득 예술인 등 근로자 대상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만, 사업주 대상 지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풍수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 등과 같이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 대상만을 지원하는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도 제외하였다.

### 3. 2019년 사업에서 출발

정부의 사업 예산이 연도별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목록의 출발점이 되는 <예산편성현황> 자료 역시 연도별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제도 DB 역시 연 단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DB의 작성 대상을 2019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선, 본 연구가 DB의 작성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다년도의 DB를 만드는 것보다 단년도의 DB를 체계적이고 유용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단년도 기준으로 DB를 작성한 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거나 활용상 유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반영한 후 연도별 DB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22년의 시점에서 볼 때 각 사업에 관한 최근의 <예산편성현황> 자료는 2022년의 사업별 자료이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항목들 가운데에는 2022년 시점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항목이 사업별 결산 금액이다. 결산 금액은 실제로 사업 시행에 지출된 금액을 말해주기 때문에 예산상의 금액과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결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는 데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DB에 결산 금액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DB의 작성 연도에 일정한 시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사업의 대상자와 관련된 항목을 작성하는 데에 일정한 시차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의 잠재적 대상자, 즉 사업이 요구하는 인구학적 특성 기준이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개인(또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sup>5)</sup>의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2022년의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보고하는 통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구 단위 미시 조사자료들은 일정 연도 이전 시점의 소득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시점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는 2020년의 소득이다.

이와 같이 DB의 항목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과 그 자료들의 제공 시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DB의 모든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2019년을 본 연구의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다. 향후 DB 작성 연구가 지속될 경우 이 시점은 2019년 전후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0년 기준 DB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검토된 작성방법을 바탕으로 2018년 이전 시점에 대한 DB 작성도 가능할 것이다.

### 제3절 DB 작성의 단위

#### 1. 세부사업 - 급여 - 세부급여의 구분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산편성현황> 자료는 사업의 위계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서 다양한 급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사업 가운데 세부사업명이 모성보호육아지원인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안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서로 다른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서로 다른 급여라고 하는 이유는 각 급여가 각기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갖고 있고 급여액도

5) 즉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내용의 급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면 각 급여의 특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DB에서는 같은 세부 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의 급여를 구분하였다. 이때 세부사업 바로 아래의 제도 구분 단위를 ‘급여’로 지칭하였다.

하나의 급여가 그 안에서 더욱 세분화된 급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세부사업의 육아 휴직급여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구분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급여의 내용은 매월 15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의 경우 2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급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의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세부급여’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되면 각 급여는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급여명 - 세부급여명의 위계적 이름을 갖게 되고, 세부급여가 DB의 가장 기본적인 작성 단위가 된다. 급여가 세분화되는 경우 세부급여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상위의 사업 또는 급여에 대한 정보도 하나의 관측치로 유지하였다.

〈표 1-2-1〉은 DB의 기본 작성 단위를 세부급여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 더 이상의 급여와 세부급여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활지원 사업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하나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 급여는 다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표 1-2-1〉에서 보듯이 세부급여로 구분되지 않은 급여 단위의 관측치와 세부급여 단위의 관측치 모두를 DB에 수록하였다.



〈표 1-2-1〉 DB의 기본 단위(예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상위 제도명과 하위 제도명을 동시에 DB에 수록하는 것의 장점은 어떤 제도적 수준에서 분석할지를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사업 단위의 제도 간 비교를 희망하는 경우 급여명이나 세부급여명의 값이 공란인 경우(즉 data 값이 결측인 경우)만을 선택해서 분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급여 단위의 제도 간 비교를 원할 경우 세부급여 값이 공란인 경우만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DB의 기본적 관측 단위를 일단 세부급여로 하되, 상위 제도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DB를 작성하였다.

## 2. 자격기준에 따른 작성 단위의 구분

동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상 집단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복수의 자격기준을 지닌 세부사업<sup>6)</sup>을 DB에서 하나의 관측치로 표현하는 데에는 기술적 문제가 뒤따른다. DB에서 하나의 관측치가 다양한 조건 항목 값을 갖는다. 그리고 각 조건 항목은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떤 급여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월소득이

6) 급여 또는 세부급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00만 원이고, 보유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에 대해 지급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만일 이 세 조건을 DB에서 각각의 항목(연령 하한값, 소득 상한값, 재산 상한값)으로 구분한다면 이 제도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65세, 100만 원, 1억 원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제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위에서 말한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60~64세 연령에는 소득 130만 원 이하, 재산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급여의 자격기준 항목은 64세, 120만 원, 1억 2천만 원의 값을 가져야 한다.<sup>7)</sup> 이렇게 되면 하나의 급여가 두 쌍의 자격기준 조합을 갖는 셈인데, 이를 DB에서 하나의 줄(행, row)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줄(행, row)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DB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개의 자격기준을 갖는 경우 관측 단위를 서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즉 하나의 세부급여도 복수의 자격기준을 갖는다면 복수의 관측치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DB의 관측치로서 가장 낮은 위계의 관측치는 자격기준이 된다. 급여의 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위계의 단위가 세부급여였음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세부급여가 복수의 자격기준을 갖는 경우 가장 낮은 위계의 단위는 자격기준별 세부급여가 된다. 제도의 위계적 구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7) 연령의 하한(60세)을 표현하는 문제는 잠시 논외로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제1절 DB 항목의 의미

제2절 DB 항목의 구성



## 제 3 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 제1절 DB 항목의 의미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특성을 설명할 때와 달리 다수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할 때에는 각 제도의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제도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틀이 필요하다. 데이터셋의 형태로 작성된 소득보장 DB에서 그것은 데이터의 각 항목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자의 연령층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연령 조건은 각 제도의 특징을 설명함과 동시에 다른 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은 제도 간 비교 분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 간 제도 비교를 위한 데이터셋에서는 이러한 면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LIS의 가족 조세 급여 데이터베이스(Family Tax Benefit Database, FTBD)에서는 각 국가의 가족 지원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과세의 단위가 개인인지(individual taxation),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세율을 적용하는지, 부양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나 면세 혜택이 있는지 등 9개의 항목을 사용한다(Schechtel, 2020, p. 1. 2021. 9. 28. 인출). 또한 LIS의 공공부조 및 최저소득보장 데이터베이스(SAMIP)의 경우 가구 유형(독신, 한부모, 양부모 등)별 급여액 및 연간 급여 총액, 한부모 및 양부모 가구의 아동 대상 지원 금액, 주거비 지원

금액, 조세 환급 가능 금액(refundable tax credit), 기타 급여액, 그리고 이들 급여의 총액 등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Nelson, 2010b, pp. 3-7. 2021. 9. 28. 인출).

이들 DB는 비교적 동질적인 제도들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도의 기본 특성을 항목으로 하며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관측치가 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작성하는 DB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소득보장제도들을 포함하고 개별 제도도 세부급여나 자격별 세부급여 단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항목들도 훨씬 많다.

3장의 이하에서는 소득보장 DB의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항목은 크게 각 제도(사업)와 관련된 기본정보,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보, 급여액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예산 관련 정보, 수급자의 규모와 관련된 정보, 기타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 제2절 DB 항목의 구성

### 1. 제도와 관련된 기본정보

#### 가. 사업명/급여명/자격 구분

제도와 관련된 기본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앞의 2절에서는 <예산편성현황>의 제도명이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순으로 제공된다고 하였다.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이 명칭은 DB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에서는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하위 단위가 세부 사업명이다. 소득보장제도 DB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세부사업을 급여 및 세부급여 단위까지 구분하였고 그렇게 구분된 제도에 대해 급여명과 세부급여명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급여명과 세부급여명은 각 사업의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부여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여나 세부급여 안에서도 복수의 자격기준이 운용되는 경우 자격기준별로 구분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관측치(record)를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하여 부여하였다. 당초 〈예산편성현황〉 자료에는 사업 구분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이는 세부사업을 구분하는 식별번호이다. DB에서는 이와 별개로 자격 조건까지를 구분하는 제도 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 나. 담당 부처

각 제도는 제도의 시행 주체, 즉 중앙부처 단위로 구분된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처의 사업인지가 사업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의 편성이 각 부처 단위로 이루어진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두 개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DB에서는 두 개의 관측치로 구분하여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당 부처가 해당되도록 하였다. 즉 시행 주체가 다른 제도는 실제로 동일한 내용의 제도이더라도 각기 다른 제도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 다. 지원 방식과 성격

제도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마지막 항목은 급여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현물로 지급되는지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금급여여서 DB에 현물급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 이 DB가 현물급여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DB로 확장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현금/현물 구분 항목을 두었다.

현금급여 안에서도 지원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단순히 현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환을 조건으로 용자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현금지급, 용자, 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출을 경감해주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가구와 개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금액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DB에 포함하였지만, 지출을 부과하는 단계에서 경감해주는 사업들은 제외하였다. 이 경우 가구나 개인이 직접 지원받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간주하였다.

지원 방식과 별개로 지원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지원의 성격은 단순한 급여, 인건비, 지출보조, 자산형성지원, 장학금, 단순용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금 지급은 참여 수당 또는 임금보조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받게 되는 해당 일자리의 임금은 시장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도 소득보장 사업의 하나로 보고 DB에 포함시켰으며, 지원의 성격 항목을 통해 구분하였다. 자산형성 사업은 명칭 그대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로 보아 DB에 포함시켰고 지원의 성격 항목에서 자산형성지원을 별개의 선택지로 둬으로써 다른 유형의 현금 지원 사업



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급여의 대상이 개인인지 가구인지를 급여 대상 항목을 통해 구분하였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구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간주하였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는 DB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시설에 입소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는 DB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급여 대상 항목을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수급자격 관련 정보

### 가.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소득보장급여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또는 지원 대상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유무(및 정도), 특정 질병 보유 여부, 학력(전공) 등을 자격을 식별하기 위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경우 종사하는 산업이나 직업, 사업장의 규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들 요건을 항목에 추가하였다.

가구 대상 급여의 경우 가구의 특성을 자격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가구의 특성은 매우 특수하고 구체적이어서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가구 특성에 따른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표기하는 항목만을 DB에 포함시켰다.

## 나.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보장급여는 크게 기여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급여, 소득-재산 조사(means test)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급여, 그리고 기여나 소득-재산 조사와 무관하게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충족하는 집단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선 각 급여가 과거의 기여 이력에 따라 수급 요건이 결정되는지를 판단하였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험 관련 급여의 경우가 대표적인 기여 조건부 급여이다. 그런데 재산형성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일정한 대응 저축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 대응 저축도 크게 보아 기여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한정된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그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 자체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 조건을 살펴보자. 소득 조건이 부과되는 급여의 경우에도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을 측정할 때 어떤 소득원천<sup>8)</sup>이 합산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 조건이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소득을 합산할 때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원천들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합산된 소득을 어떤 기준 범주와 비교하는지도 급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비교 범주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이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된 일정한 금액이 비교 범주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재산 기준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가구나 개인의 재산을 합산할 때 어떤 유형의 재산들이 합산 대상이 되는지, 재산 공제는 없는지,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 유형은 무엇인지 등을 각 항목으로 표현하였다.

8)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소득원천의 예이다.

다수의 복지제도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부과할 때 소득인정액 개념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부과하는 제도 가운데 소득인정액 범주를 사용하는 제도들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들이 DB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 유형별 환산율과 환산율의 적용 기간이다.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에 월 또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율이 적용되는지, 환산율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 3. 급여액의 결정 방식

급여액의 결정 방식은 우선 급여를 받는 개인이나 가구에 균등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차등 급여가 지급되는지로 나뉜다. 차등 급여의 경우도 성이나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인지 소득이나 재산 보유액에 따른 차등 급여인지를 별도의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균등/차등과는 별개로 급여액이 정액인지 보충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지도 중요하다. 차등 급여일지라도 차등화된 급여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통상 보충급여는 일정한 급여 기준선과 개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급여의 경우 개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보장 생계급여액이 통상의 보충급여의 형태라면 근로장려금의 점증 구간에서 결정되는 급여액이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와 같은 유형을 기준선 미달액 연동 보충급여로, 후자와 같은 유형을 기준선 초과액 연동 보충급여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도 급여의 지급주기(월, 분기, 연 등)가 무엇인지, 최대 수급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각각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 4. 예산 관련 정보

각 사업의 예산 및 결산액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항목이다. 예산이 클수록 포괄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넓거나 평균적인 급여액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고, 그만큼 소득보장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예결산 금액과 별개로 예산이 어떤 성격의 회계에서 출연되는지, 즉 일반 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기금회계인지 등을 구분하였다.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시행하는 소득보장 급여라고 할지라도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의 부담분이 존재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도 급여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얼마이고 지방의 분담률은 얼마인지를 각각의 항목을 통해 표현하였다. 지방의 분담률도 단일한 비율이 아닌 경우가 있어 이를 하한값과 상한값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5. 수급 대상자의 규모

수급 대상자의 규모는 각 소득보장급여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수급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행정 자료를 통해 보고된 실제 수급자 규모이다. 이 수치가 어떤 자료를 통해 보고되었는지도 중요한데, 자료의 출처는 DB 항목에 넣지 않았고 대신 참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규모이다. 각 급여가 부과하는 인구사회학적 요건이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규모를 각 요건을 결합하여 다양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실제 수급자의 규모와 달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의 규모는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근거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사업들마다 수급 조건을 규정하는 정보들이 각기 다른 만큼 이들 정보를 다 제공하는 통계자료원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통된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사업들의 대상자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할 경우, 그 결과 값이 개별 사업의 추정치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들 추정치를 서로 합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추정치는 DB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추정치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방법론이 마련될 때까지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추정치는 DB 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대신 2부에서 각 사업별 특성을 설명할 때 잠재적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정치는 얼마인지를 언급할 것이다.

## 6. 기타 항목

본 DB의 각 항목은 DB에 포함된 사업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사회보장제도가나 소득보장제도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성 정보도 있지만 일부 사업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 조건이 있다. 같은 항목이라도 분류 기준이 다른 사업들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이나 농가 지원 사업의 경우

재산을 유형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같지 않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DB의 항목으로 모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DB에 포함하지 않되, 2부에서 부가적으로 서술하거나 다른 형식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항목들의 구체적인 목록과 각 항목 내에서 어떤 값을 부여했는지는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한다.



## 제2부

###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제7장 장애·보훈 분야

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9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 제4장

##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 및 구성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구축



##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은 주로 은퇴한 개인이나 고령자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이미 고령층(65세 이상)인 개인들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나 근로연령층이더라도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화된 각종 사업들(주로 공적연금제도)들이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특성상 고령층에 대한 각종 의료 및 돌봄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대상 사업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열린재정, 2019)」(이하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4장에서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경우 핵심적인 제도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 4개 부처에 의해 실행된다. 공적연금 이외에 고령층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예산편성현황>에 제시된 4개 부처의 사업 중 사업 '분야명'이 사회복지로 구분된 사업들을 일차적 검토 범위로 잡았고, 이 가운데 부문명이 공적연금인 사업들과 프로그램명이 노인생활안정인 사업들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모두 89개였다.

이 가운데에서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예, 사립학교 연금기금 인건비, 정보화 사업, 국민연금공단 사업 신축 등), 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업들(예, 사립학교 연금기금 채권 매입, 국민연금기금 국채 매입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지원이 아닌 기관 지원 사업들(예, 노인단체 지원, 노인보호시설 지원, 장사시설 설치 등)을 제외하였고, 현금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사업들(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 운영 등)도 분석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8개의 사업이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으로 추출되었다. 18개 분석 대상 사업의 부처별, 사업 내용별 구분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세부사업명)

소관 부처	공적연금 부문	노인 부문	세부사업 수
교육부	(사립학교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5
국방부	(군인연금)재해보상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급여 지급, 노후연금자금 대부사업(용자),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대부(용자), 대여학자금 용자(용자)		5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18개의 사업은 사업 부문에서는 모두 공적연금 부문 또는 노인 부문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를 제외하면 모두 공적연금 부문에만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관련 사업 이외에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8개 세부 사업의 주요 특징과 세부사업 내에서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 및 구성

### 1.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은 크게 노령연금 사업과 노령연금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노령연금은 다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사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으로 나뉜다. 노령연금 이외의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공적연금제도는 생산활동 연령의 가입자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이후 연금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노후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의 지급 측면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의 대상은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연령층까지를 포괄한다. 그런데 생산연령층의 인구가 공적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보험료의 기여 측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크레딧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가입 기간의 단절과 단축을 방지함으로써 노후에 받는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급여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은퇴(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 관련 급여이다. 국민연금급여,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자 가운데 연금 수급 연령에 미치지 못했지만 일정한 가입 이력을 지닌 개인을 대상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수당도 퇴직 관련 급여에 포함된다.

두 번째 종류는 재해보상급여이다.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자가 직업과 관련된 활동 중에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재해보상급여이다.

마지막은 연금 기금을 이용한 각종 용자사업이다. 보험 가입자가 학자금 조달이나 생계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각 공단은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국고대여학자금 용자사업은 보험 가입자(사립학교교직원)가 가족의 대학학자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보험 가입자에게 용자해주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노후소득보장 사업에 속하지만 실제로 현금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고령층이거나 은퇴자일 필요는 없다.

## 2.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물론 전체 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포괄 범위와 급여액은 기초연금이 현재

의 명칭과 구조로 확립된 2008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공적연금)처럼 가입 이력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단위, 적용 방식 등에서는 비노인층을 포괄하는 다른 소득보장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될 기초연금의 특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 3. 노인일자리 사업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포함된 또 다른 세부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임금 또한 생계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높지 않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이 빈곤선 이하임을 고려한다면 노인일자리는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중요한 소득지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포괄범위는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성격과 참여 자격 등은 일자리의 유형별로 상이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구축

### 1. 기본 단위의 설정

#### 가. 공적연금의 급여

〈표 2-4-1〉에서 제시된 각각의 세부사업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수급 자격 기준과 급여 결정 방식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급여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 급여들은 그 특징이 구분되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분야 DB를 구축할 때에는 별도의 관측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장에서도 2장에서 제시한 구분 방식, 즉 세부사업- 급여 - 세부급여 - 자격별 세부급여의 제도 구분 위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공적연금 관련 제도(세부사업) 안에서 어떤 급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2-4-2〉이다. 급여의 구분은 각 연금공단이 발행한 자료와 홈페이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sup>1)</sup> 각 연금의 연금급여(세부사업)는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유족급여(연금)로 구분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 두 급여에 해당하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이 연금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연금들과 비교해 볼 때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세부사업 중 재해보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라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재해보상급여는 명칭이 다소 상이할 뿐 유사한 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급여의 종류가 좀 더

---

1) 공무원연금공단(2019)의 2019년 공무원연금 실무, 국민연금공단(2020)의 2019년 제32호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방부(2020)의 201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0)의 2019 사학연금통계연보 등을 참조할 것.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는 물론 재난 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 같은 부조성 급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표 2-4-2〉 공적연금제도 관련 세부사업의 급여 구성(용자사업 제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연금급여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역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유족연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퇴직수당	퇴직수당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9). 2019년 공무원연금 실무; 국민연금공단. (2020). 2019년 제32호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방부. (2020). 201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 2019 사학연금통계연보.

제도의 특징을 DB라는 형식을 통해 설명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셀(cell)에 복수의 값을 입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각 관측 단위의 특성 항목에는 하나의 값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여러 개의 세부 급여로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의 퇴직급여와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일반직(공무원)인가 교육직(공무원)인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 교육직은 62세

부터 일반직은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수급자격(연령 조건)을 단일한 숫자로 표기하기 위하여 일반직 대상 급여와 교육직 대상 급여를 별도의 세부급여로 구분하였다. 공적연금 관련 세부사업 가운데 용자사업들은 별도의 급여로 구분하지 않았다.

#### 나. 기초연금의 급여 및 세부 급여

기초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단일한 성격의 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급여의 종류만으로는 기초연금 세부사업을 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기술적인 제약에 따라 기초연금을 다수의 급여로 구분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단독가구인지 기초연금인지에 따라 다르다. DB의 셀(cell)에 표기되어야 할 소득 및 재산(정확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다른 만큼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한 급여와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급여를 별도로 구분하였다.

한편 2019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노인(또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급여액을 증액하였다. 단독가구의 경우 일반 단독가구는 2019년 4월부터 월 253,750원을 받았으나 저소득 가구는 월 30만 원을 받았다(보건복지부, 2022. 12. 5.). 급여액 정보가 다른 만큼 일반 가구 대상 기초연금과 저소득 가구 대상 기초연금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급여로 구분한 만큼 일반 가구 대상 급여와 저소득 가구 대상 급여는 세부급여로 구분하였다. 요컨대 기초연금 세부사업의 급여 및 세부급여는 <표 2-4-3>과 같다.

〈표 2-4-3〉 기초연금의 급여 및 세부급여 구분

세부사업	급여	세부급여
기초연금 지급	단독가구 기초연금	단독 일반가구 기초연금
		단독 저소득 가구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초연금	부부 일반가구 기초연금
		부부 저소득 가구 기초연금

#### 다. 노인일자리 사업<sup>2)</sup>의 구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따라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세 가지 급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즉 연령 제한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야 수급을 자격을 받는 셈이다. 급여액은 월 27만 원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공형 일자리와 동일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자격 제한이 없고(즉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액도 약 54만 원으로 공공형 일자리의 두 배 수준이다.

시장형 일자리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임금을 보충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과 다르고 급여액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2)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2019)의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를 참고하였다.

## 2. 주요 항목별 특징

### 가. 공적연금 관련 급여

급여의 유형과 관련된 특징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퇴직급여는 지원 성격에 있어서 단순급여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활급여,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등은 지출보조(실비지원 포함) 성격의 급여이다. 사학연금의 국고대여학자금 용자와 생활안정자금 용자, 국민연금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연금 대부와 대여학자금 용자 등은 단순용자 성격의 사업이다.

공적연금 관련 급여들은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연령 제한 이외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인구·사회학적 제약은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의 연령 제한은 55세 이상이고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이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기 위한 연령 제한은 60세 이상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기 위한 연령 제한이 일반직의 경우 60세 이상, 교육은 62세 이상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군인연금의 장애보상금, 공무원연금의 재활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등 재해보상급여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들 급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타 급여의 장애등급, 즉 중증 및 경증장애와 다른 별도의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따라서 장애 유무 항목에서는 이들 급여의 수급 요건을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급여의 경우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게 가입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수급을 위해서도 직업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셈이다. 따라서 수급을 위해 직업 제한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서비스업으로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사 산업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공적연금 관련 급여 가운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종사상지위의 제한(실업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이 있는 유일한 급여이다.

공적연금 관련 급여들은 모두 기여 조건이 있는 급여들이다. 대신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여액의 결정 측면에서는 퇴직급여들은 기여 이력과 기준보수월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차등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해보상급여들은 기여 이력에 따른 차등 급여인 경우도 있고, 장애와 재난의 정도에 따른 차등 급여인 경우가 있다. 장애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로 간주하였고,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로 분류하였다. 모든 퇴직연금과 유족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고 지급 기한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수당은 1회 한정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용자사업의 경우 기여 이력에 따라 대부 가능한 금액의 상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성격을 정액급여와 보충급여 가운데 한가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 나. 기초연금<sup>3)</sup>

급여의 대상 면에서 보면, 각 연금공단의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 대상 사업이지만 기초연금은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구가 아닌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 이유는 노인 부부를 포함한

3)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를 참고하였다.

비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의 단위는 부부로 한정되고 급여의 대상도 부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아닌 노인 한 명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가구원 전체를 급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분류하였다.

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건 가운데에는 연령 조건(65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제약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37만 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가구의 경우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약 월 219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8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식에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다른 점이 있다.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 항목과 재산 항목,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 항목 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재산 유형의 구분 없이 연간 4%의 환산율이 적용된다.<sup>4)</sup>

대부분의 수급가구에서 기초연금은 정액급여(단독 일반 가구 월 25만 4천 원, 부부 일반 가구 월 40만 6천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갖추었지만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에서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징까지를 고려하여 급여의 성격을 보충급여로 분류하였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급여 지출을 위한 국고보조율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지방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고보조율의 범위는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최소 70%, 최대 80%이다.

4) 일정 기준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환산율이 100%이다.

##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세 급여는 모두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개인 대상 현금급여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그 밖의 인구·사회학적 제한은 없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기초연금과 동일한 내용의 소득 및 재산 제약 조건 항목 값을 갖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별도의 소득 조건이나 재산 조건을 부과받지 않는다. 급여액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균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서울과 지방의 국고보조율에 차이가 있다.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30%, 지방은 50%이다.

## 3. 예산 및 수급자 규모

### 가. 예산액 및 결산액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예산편성현황(2019년)> 자료는 각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5)</sup> 한편 각 사업의 통계자료나 소관 부처의 결산보고서는 결산 금액과 사업의 대상자(수급자)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 DB에 예산 금액, 결산 금액, 수급자 규모, 수급자 단위 등의 항목으로 포함시켰고 해당 값들을 입력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가운데 일부를 통합하거나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을 크게 공적연금 관련 제도

5) 급여 또는 세부 급여 단위의 예산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세 제도의 예산 규모 및 비율은 <표 2-4-4>와 같다. 공적연금 관련 제도의 총예산은 약 48.8조 원, 기초연금액예산은 11.5조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예산은 약 9천억 원이다. 각각의 비율은 공적연금 79.7%, 기초연금 18.8%, 노인일자리 1.5%이다.

<표 2-4-4>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도의 예산 규모(2019년)

(단위: 십억 원, %)

제도	예산	비중
공적연금	48,751	79.7
기초연금	11,495	18.8
노인일자리	923	1.5
계	61,169	100.0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표 2-4-5>는 공적연금 관련 제도 중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사업들을 4가지 제도로 묶은 것이다. 퇴직(연금)급여와 유족연금액급여를 포함하는 연금급여 사업의 총예산은 약 43조 원으로 전체 공적연금 관련 예산의 8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각 연금의 퇴직수당(약 3.5조 원, 전체의 7.3%)이고 그다음은 용자사업, 재해보상급여의 순이다.

<표 2-4-5> 공적연금제도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단위: 십억 원, %)

사업군	예산	비중
연금급여	42,800	87.8
재해보상급여	334	0.7
퇴직수당	3,536	7.3
용자사업	2,059	4.2
계	48,729	100.0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표 2-4-6〉은 〈표 2-4-5〉 가운데 연금급여 사업군에 대해서 다시 국민연금과 각 특수지역연금별로 예산 규모와 비율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으로 예산은 약 23조 원이고 전체 연금급여 예산의 53.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사업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로 예산의 비율은 전체의 약 32.9%이다.

〈표 2-4-6〉 연금급여의 사업별 예산 규모(2019년)

(단위: 십억 원, %)

세부사업	예산	비중
(사학연금) 연금급여	2,767	6.5
(군인연금) 퇴직급여	2,937	6.9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지급	23,019	53.8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14,077	32.9
계	42,800	100.0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결산액은 〈예산편성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연금공단의 발간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결산보고서(보건복지부, 2020) 등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예산액과 달리 결산액은 세부사업뿐만 아니라 일부 급여 및 세부 급여에 대해서도 DB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제도 간의 자원 투입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예산액을 이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결산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 나. 수급자 규모

예산과 달리 수급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로 다른 단위로 보고된다.

공적연금급여나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명) 단위로 보고되지만 각 연금공단의 용자사업은 건 단위로 성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사업이나 급여 간에 수급자를 비교할 때에는 단위를 맞추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2-4-7〉은 각 공적연금의 퇴직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를 보여준다. 공적연금의 경우 유족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와 유족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퇴직(퇴역)연금 수급자의 수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급자 수를 제시하였다.

〈표 2-4-7〉 연금급여의 수급자 규모(2019년)

(단위: 명)

연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유족급여 제외)
사학연금	83,176	73,831
군인연금	94,147	71,983
국민연금	5,190,010	4,090,497*
공무원연금	532,641	467,143
소계	5,899,974	4,703,454
기초연금	5,345,728	

주: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0). 2019년 공무원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2020). 2019년 제32호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방부. (2020). 2019년 군인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 2019년 사학연금통계연보.

〈표 2-4-8〉은 2019년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이다. DB에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였고 각각은 다시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분한 바 있다.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부부 일반가구로 수급자 수는 약 235만 명이고,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44.0%에 해당한다. 단독과 부부가구의 저소득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2-4-8〉 기초연금의 세부 급여별 수급자 규모(2019년)

(단위: 명)

구분	수급자	비중
단독 일반가구	1,446,692	27.1
단독 저소득 가구	1,206,599	22.6
부부 일반가구	2,350,376	44.0
부부 저소득 가구	342,061	6.4
계	5,345,72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0).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지만 공적연금 관련 세부사업 및 급여의 수급자 규모,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별 수급자(참여자) 규모도 DB에는 포함하였다. 다만 국민연금의 실업자크레딧 지원 사업은 대상자 규모가 보고되지 않아 DB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 다. 잠재적 수급자

본 연구에서 잠재적 수급자란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잠재적 수급자는 제도의 설계상 포괄하는 대상자 집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이다. 잠재적 대상자와 실제 수급자를 비교할 경우 수급률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제도 간에 비교할 수 있다. 즉 잠재적 대상자는 제도의 포괄성과 수급률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이다.

각 제도는 다양한 선정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대상자 역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퇴직급여는 현재의 보험 가입자를 잠재적 수급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기초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잠재적 수급자를 추정하는 방식이 이와 다르다.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다면 기초연금

제도의 잠재적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좀 더 의미 있는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 이외에 소득 기준,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 수급자의 수는 각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노인 인구의 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제도가 부과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계자료를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잠재적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려면 개인별 연령, 개인 및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통계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재해보상급여는 재해와 관련된 특성 정보를 구하기 힘들다. 다른 출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추정한 값들을 DB에 포함시키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현 단계의 DB에는 잠재적 수급자의 추정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제도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 수급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주어지거나 상이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정치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마련될 때 잠재적 수급자 규모에 관한 정보를 DB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제1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 종류

제2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내용

제3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DB 처리 방식



## 제 5 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 제1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 종류

이 장은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의 제도 설계와 예산에 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특히 가족 및 아동 대상의 소득지원 분야에서 제도 선택 기준과 데이터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예산 및 결산은 2019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제도에 대한 정보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해당 사업에 대한 2019년 사업안내 자료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사업설명자료」를 활용했다. 제도명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2019)에서 제공하는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총액)」 원자료의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을 이용했다. 세부사업명은 동일하나 제도 설계상 세부급여로 나눈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사업안내 자료에 기술된 세부급여 명칭을 그대로 활용했다.

#### 1.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목록

가족 및 아동 대상 제도 중 시설지원과 서비스 이용 및 운영비를 지원 하는 방식의 제도는 제외했으며(〈부표 2-1〉 참조), 현금지급과 자산형성 지원 방식은 소득지원제도로 분류하여 다음 〈표 2-5-1〉에 제시했다.

〈표 2-5-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제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고용평등 증진	일·가정양립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보육지원 강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아동자립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주: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은 모두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명칭을 그대로 이용했으며 2019년 기준 자료임.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2. 제도와 급여 종류 및 구분

가족 및 아동 대상의 소득지원제도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급여로 구분하고, 급여 유형이 나뉘거나 급여자격이 달라지는 경우 세부급여로 구분했다.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세부사업명이 모성보호육아지원인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명이 “모성보호지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로 구분된다(고용노동부, 2019a, p. 23). 그러나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되어(고용노동부, 2019c) 시행되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포함했다. 여기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하위 세부급여로 분류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로 분류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로 구분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급여나 세부급여로 나누지 않았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현금지원으로 DB에 포함시켰다. 그 외 입양아동 심리치료비와 의료급여 등 서비스 제공은 제외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일 경우 급여 대상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급여로 구분했다(보건복지부, 2019b, p. 107).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유족구조금, 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세 개의 급여로 구분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으나 현금급여인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생계비와 학자금만을 급여로 포함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상담, 의료, 법률보호 등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법무부, 2019, p. 240) 가구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5). 여기서는 현금급여인 생계지원을 세부급여로 포함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급여를 구분했다(보건복지부, 2019b, p. 102). 아동발달지원 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급여나 세부급여가 없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에서 검정고시

학습비나 자립 지원 촉진수당 등은 지출보전으로 여기서는 제외했으며, 아동양육비만 급여로 구분하여 포함했다(보건복지부, 2019b, p. 27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으로 급여를 구분했다(보건복지부, 2019b, p. 26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은 기본금과 장려금, 가산금 세 개의 급여로 구분했다. 기본금은 정착금 기본금과 주거지원금으로 세부급여를 구분했다. 장려금에서 직업훈련 장려금은 직업훈련 총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출보전으로 제외하고 지방거주 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만 포함하여 세부 급여로 구분했다. 가산금에서 장기치료는 의료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장애, 제3국 출생 자녀양육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고령만 포함하여 세부급여로 구분했다(통일부, 2019, pp. 30-32).

아래 <표 2-5-2>에는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급여와 세부 급여로 포함된 제도의 목록을 제시했다. 급여명에 포함되는 제도이지만 서비스 제공이나 지출보전 방식의 경우는 아래 표의 세부급여명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5-2>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급여와 세부급여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보조금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장해구조금 및 증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생계비	-
	학자금	-
성폭력피해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
아동수당 지급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본금	-
	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가산금	장애
		제3국 출생 자녀양육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고령	

주: 세부사업명과 급여명 순서대로 자료를 제시했으며, 고용보험 비적용자 출산급여와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은 급여나 세부급여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 표에서 “-”로 표기했음. 마찬가지로 세부급여명에 “-”표기는 급여명이 세부급여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9a).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p. 23; 고용노동부. (2019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 p. 2; 법무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2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a). 장해구조금 및 증상해구조금.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b). 긴급구조.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보건복지부. (2019a).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p. 5;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 102, p. 107, p. 271, p. 269, p. 301; 보건복지부. (2019d). 아동분야 사업안내 3권. pp. 3-4; 보건복지부. (2019e). 아동사업안내 1권 아동발달계좌. pp. 232-233; 통일부.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 30-32.

## 제2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내용

가족 및 아동 대상 사업 중 세부사업과 급여, 세부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2-5-3>에 제시했다. 세부사업명만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했고, 세부급여까지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 급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표 2-5-3> 세부사업의 급여 및 세부급여 종류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급여 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휴가급여 지급	
	유산, 사산 휴가급여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5~90일 휴가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최초 5일분 급여 지급	
	육아 휴직급여	육아 휴직급여	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급여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급여액=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 (단추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 여성에게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지급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월 15만 원 수당 지급	
		장애아동양 육보조금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입양에 대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급여액을 달리 지급함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급여 내용
범죄피해 구조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해 사망한 유족에게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여액이나 평균임금 등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유족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범죄로 인해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 피해를 일부 또는 전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장해등급별 개월수에 5의 배수 곱한 개월 수만큼의 급여를 제공
	긴급구조금	-	구조피해자의 장해나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생계비	-	범죄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범죄피해 1건에 대해 최대 3개월 생계비 지원
	학자금	-	범죄피해자에 대해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 학자금 지급하며 학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
성폭력피해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계 지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피해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생계비를 1개월간 지원받음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에게 4개 구간 월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당 지급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에게 5개 구간 월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당 지급
	장애아동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장애아동 영유아에게 2개 구간 월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당 지급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	-	취약계층 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해 국가에서 월 4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
아동수당 지급	-	-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10만 원씩 지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급여 내용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하며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 원 지급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본금	정착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800만 원에서 3,900만 원 지급
		주거지원금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1,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보호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장려금	지방거주 장려금	광역시(인천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원금의 10% 지급하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주거지원금의 20%를 지원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와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에 대해 1회에 한해 200만 원 지원
		취업장려금	취업한 기간과 취업지역에 따라 200만 원에서 750만 원 지급
	가산금(1세대에 장애, 제3국 출생 자녀양육, 한부모 가정, 고령 등 1개 사유만 인정하여 지급)	장애	장애 정도에 따라 360만 원에서 1,540만 원 지급
		제3국 출생 자녀양육	만 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4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2명까지만 지원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 13세 미만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세대별로 360만 원 지원
		고령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별로 720만 원 지원

주: 급여나 세부급여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위 표에서 “-”로 표기했음.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의 경우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급기간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에 수급권을 가진 아동은 2020년도에도 지속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또한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 이내로 명시되었음(보건복지부, 2020, p. 1).

자료: 고용노동부. (2019a).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p. 23; 고용노동부. (2019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 p. 2; 법무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2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a). 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b). 긴급구조.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보건복지부. (2019a).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p. 5;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 102, p. 107, p. 271, p. 269, p. 301; 보건복지부. (2019d). 아동분야 사업안내 3권. pp. 3-4; 보건복지부. (2019e). 아동사업안내 1권 아동발달계좌. pp. 232-233; 통일부.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 30-32.

## 제3절 가족 및 아동의 소득지원제도 급여 DB 처리 방식

### 1. 제도 기본정보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정보는 사업 담당 부처, 지원 유형(현금/현물), 지원 방식, 지원 성격,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로 구분했다. 담당 부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기입했으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사업으로 코딩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 긴급복지 지원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보건복지부로 코딩했다.

지원 유형은 현금지원 방식과 자산형성지원 방식의 제도만 입력했으므로 대부분 현금으로 코딩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학용품비는 현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학용품비는 현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따로 용도 지정이나 지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받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상에는 현금으로 코딩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 중 주거지원비도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현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금액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5년 후 현금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일부 용도가 지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보증금은 현금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으로 코딩했다. 나머지 가족 및 아동 소득 지원 제도는 모두 현금으로 코딩했다. 지원 방식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만 자산형성지원으로 코딩했으며 나머지 급여나 사업은 모두 현금지급으로 코딩했다. 지원 성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자산형성지원으로 코딩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학용품비와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금 중 주거지원비는 지출보조로 코딩했으며 나머지 급여나 사업은 단순급여로 코딩했다.

대부분 사업과 급여의 지원 대상은 개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중 범죄피해구조금은 가구 일부이며, 유족구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중 정착금 기본금과 지방거주 장려금, 가산금 급여는 가구 단위로 코딩했다.

## 2. 대상자 선정기준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연령, 장애 유무, 학력, 사업장과 직업 특성 등에 대해 코딩했다. 먼저 성별은 급여 대상이 개인일 경우 성별 구분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코딩했다. 그러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 유산·사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여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코딩했다. 가구 단위 급여는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연령은 해당 사업이나 급여가 연령과 관련되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으며, 연령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없는 경우에는 하한 연령을 0으로 기입했다. 상한 연령을 사업안내나 지침에서 정한 연령으로 코딩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 사업중 고령가산금은 연령 하한이 만 60세 이상이나 상한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음으로 코딩했다.

대상자 선정기준 중 장애 유무 기준을 사용하는 사업은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사업, 장애아동 양육수당 급여다.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사업의 장애



유무 기준은 경증 이상으로 코딩했으며, 장애아동 양육수당 급여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등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서는 경증 이상으로 코딩했다. 학력 기준은 대부분 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으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 중 학자금은 학력 하한 조건이 어린이집 재학이며 상한은 대학교 재학까지 지원으로 코딩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력 조건은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제도는 산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직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지만,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급여는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에 한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직업 제한은 없지만 종사상지위는 제한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가구 단위 급여에서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중 유족구조금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생계지원 급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사업은 가구 특성에 따른 제약이 없다. 가구의 소득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등과 같이 가구 특성이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사업과 급여는 아동 발달지원계좌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 중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다. 나머지 개인단위 급여는 가구 특성 제약 유무 항목에 모두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 나. 소득 및 재산 조건

고용보험제도에 연동되는 급여와 기초보장제도 같이 공공부조성 급여와

관련 있는 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활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제도와 연동되는 사업과 급여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 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파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로, 이들은 기여 조건 있음으로 코딩했으며 기여 조건의 성격은 사회보험 관련으로 코딩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기여 조건 있음으로 코딩했으나 기여 조건 성격은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매칭사업으로 수급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매칭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기여 조건 있음으로 코딩했으며 기여 조건의 성격은 사회보험 이외로 코딩했다. 이 외에 나머지 사업과 급여는 기여 조건 없음으로 코딩하고 기여 조건 성격은 해당 없음으로 코딩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생계지원 급여, 아동발달계좌 사업,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에서 아동양육비 급여,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다. 소득 파악 단위는 모두 가구이다. 이들 급여의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기준이 기초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따른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비율이 다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생계지원 급여의 소득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는 4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에서 아동양육비 급여는 60% 이하이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모두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이다.

### 3. 급여액 결정 방식

기여에 따른 급여 기준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관련 없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해 기여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제외하고 기여 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 않고 균등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연동하기 때문에 기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부분은 성,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균등 지원하지만, 가구원 수나 월령에 따라 금액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 차등 지원으로 코딩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급여는 유족구조금과 긴급복지 지원이며, 학년이나 월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급여는 학자금,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아동양육비가 해당된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경우는 대부분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급여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복지 지원에서 생계지원, 청소년한부모나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아동양육비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정액급여에 해당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최소 급여액이 있고 이에 미달할 경우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기준선 미달액 연동 급여로 코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와 연동하지만, 월 상한액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미달액을 채워주는 방식의 보충급여로 보기 어려워 기타 방식으로 코딩했다.

지급주기는 대부분이 월 단위이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범죄피해자 구조금, 북한이탈주민정착금에서 장려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에서 학자금은 반기 주기로 지급

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에서 정착금 기존금과 가산금은 분기 주기로 지급한다. 대부분은 지급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며, 지급기한 범위는 최소 1회인 경우와 최대 만 18년이 되는 해까지 다양하다. 급여액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정액급여의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코딩했다.

#### 4. 예산 및 수급자 규모

##### 가. 예산 및 결산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예산 및 결산은 세부사업 단위로 코딩했다. 예산과 결산 값은 세부급여 단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부사업 단위로 해당 값을 코딩했다. 세부사업은 서비스와 현물급여까지 포함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 값은 DB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나 현물 등의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2-5-4〉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예산 및 결산 규모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	결산
모성보호육아지원	140,000	1,350,03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00	6,524
입양아동 가족 지원	1,786	1,786
범죄피해구조금	10,000	11,650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19,620	18,859
성폭력피해자 지원	31,345	31,2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892,330	860,589
아동발달지원계획(보조)	20,929	20,92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858	9,858
아동수당 지급	2,162,729	2,162,770

세부사업명	예산	결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4,674	4,643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6,933	254,52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41,136	39,160

주: 예산자료는 모두 열린재정(2021)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2019년 기준)에서 발췌했으며, 결산자료는 부처별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에서 발췌했음. 결산액은 2년 후 자료에 기술되어 있음. 예산과 결산은 해당 세부사업 중 현금지원 이외의 사업들도 포함된 규모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163, p. 518; 기획재정부. (2019).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p. 6; 법무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227, p. 236, p. 244;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131, p. 139, p. 180, p. 220; 여성가족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86; 통일부. (2021). 2021년도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p. 60.

## 나. 수급자 규모

수급자 규모는 통계를 제공하는 출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2019년도에 신규로 수급받는 대상자(초회 수급자)만을 통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2019년도 누적 수급자 수를 통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고용노동백서를 발간하고 해당 자료에 당해 연도 수급자 수 통계를 제공한다. 백서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통계는 초회 수급자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초회 수급자 수와 누적 수급자 수 모두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에 지원받는 누적 수급자 규모 값을 부여했다. 구체적인 값과 자료 출처는 아래 <표 2-5-5>에 제시했다. 아래 표에는 관련 통계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로 표시했다.

〈표 2-5-5〉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수급자 규모

세부사업명	급여/세부급여	수급자 규모(명)	자료출처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79,60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유산, 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59	
	육아휴직급여	220,858	
	아빠육아휴직보너스	9,79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1.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7,88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 통계 부재	-
입양아동 가족 지원		공표자료 없음	-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185(건)	e나라지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장해구조금	34(건)	
	중상구조금	86(건)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	-
성폭력피해자 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합계	658450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보육통계 부록
	양육수당	653,497	
	농어촌 양육수당	3,174	
	장애아동 양육수당	1,779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
아동수당 지급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33,277	여성가족부(2022). 주요통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

주: \* 2019년도 연간 누적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 수 합산한 수이며, 초회 수급자(당해 연도에 순수하게 진입한 수급자 수를 의미)가 아님에 유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 7월 신설하여 관련 통계가 부재함.

\*\*\* 수급자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로 표시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https://www.ei.go.kr/ei/eh/st/retrieveAdOfferList.do>에서 2022. 11. 23. 인출; 고용노동부. (2020. 1. 23.). 2019년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221227440a028ab9abc94da9a25674530f64e8d4.hp&rs=/viewer/ENEWS/2020/>; e-나라지표. (2022).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https://www.index.go.kr>에서 2022. 11. 22. 인출;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2022). 주요통계. [http://www.mogef.go.kr/io/stt/io\\_stt\\_s003.do](http://www.mogef.go.kr/io/stt/io_stt_s003.do)에서 2022. 11. 22. 인출.

## 다. 사업별 대상자 추정

사업별 대상자 추정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아래 <표 2-5-6>은 급여별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관련 급여의 대상자 규모를 추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관련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이름을 명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 또는 관련 실태조사 자료 등으로 지칭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2-5-6>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사업별 대상자 추정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대상자 추정방법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일반 서베이조사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아 개별 대상자 추계는 용이하지 않음.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이용하면 대상자 규모 추정 가능	
	유산·사산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출산 여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자 규모 추정 가능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대상자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일반 서베이에선 입양 여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장애아동양육 보조금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대상자 추정방법
범죄피해 구조금	유족구조금	-	범죄피해와 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상자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대상자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생계비	-	
	학자금	-	
성폭력피해 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경우 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농어촌 지역 구분과 아동월령 장애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상자 추계 가능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급 여부 정보가 필요하거나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활용하는 가구 정보와 아동 연령 및 가구 소득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 가능. 한국복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규모 추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보호종료아 동 자립수당 지급	-	-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관련 대상자 실태조사 자료 등을 사용해야 추정 가능. 시설에서 보호 후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기 어려움
아동수당 지급	-	-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패널 자료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 추계 가능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인지 여부와 해당 가구 내 아동 수와 연령, 소득 등 정보가 필요하며, 복지패널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계를 시도해 볼 수 있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대상자 추정방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본금	정착기본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사업의 세부급여별 대상자 추계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어 대상자 추계는 어려움
		주거지원금	
	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가산금 (1세대에 장애, 제3국 출생 자녀양육, 한부모 가정, 고령 등 1개 사유만 인정하여 지급)	장애	
		제3국 출생 자녀양육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고령	

자료: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제1절 개요 및 사업 범위

제2절 사업별 개요

제3절 사업 특성 - DB 정보



## 제 6 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 제1절 개요 및 사업 범위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는 크게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현금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로 구분된다. <표 2-6-1>에 프로그램명(1-3)과 단위사업명(1-4), 세부사업명(1-5), 급여명(1-6)을 정리하였다.

소득보장제도 DB의 한 행은 세부사업명을 더욱 세분화한 급여명 또는 세부급여형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 급여명은 1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다양한 급여(예, 훈련비, 장려금)이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 제도 내용이 다른 경우(예,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세부사업명이 다수의 급여명으로 구분된 경우는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훈련비와 장려금으로 구분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I, II 유형에서 단계별로 훈련비와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을 각각 구분하였다. 생활안정자금(용자)으로 선정기준과 사업 내용의 공통점이 있는 의료비, 훈련비, 장려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을 하나의 급여명으로 하고, 조건과 내용이 개별적인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를 각각의 급여명으로 하여 각 제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2년 형과 3년 형으로 나누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상은 유사하지만 급여액과 기한 등 제도 내용 및 국고보조율이 상이하여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외에는 세부사업명이 하나의 행으로 하나의 제도를 설명한다.

〈표 2-6-1〉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 목록

프로 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고용 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 창출 및 훈련	능력개발 용자 지원 (용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용자)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훈련비	
				장려금	
	대상별 취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1 유형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비
					(2단계) 참여수당
				(3단계) 취업성공수당	
2 유형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비				

프로 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2단계) 참여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소상 공인· 전통 시장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근로장려세제	홀벌이
			근로장려세제	맞벌이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홀벌이
	자녀장려세제	맞벌이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은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현금지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사업 성격이 현금지원으로 유사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단위사업도 있고, 단위사업은 포함되었어도 다른 사업과 달리 제외된 세부사업도 있다.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이라는 성격은 유사하지만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는 실업급여 내 세부사업인 광역구직활동지원금이 있다. 광역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수급자가 3명으로 매우 적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p. 276). 그리고 균특회계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따로 수급자 수를 알기 어렵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제2절 사업별 개요

### 1.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인 실업보험 사업과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은 첫 번째 축인 실업보험 사업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하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포함한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 사업에서 2019년 현재 보수의 1.6%를 사업주, 피용자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로 산정된다.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일 60,120원이며, 소정 급여일수는 기여 이력에 따라 90~240일로 결정된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용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9a, pp. 417-418).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방식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 7등급의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며, 고용보험료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하고, 실업급여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이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표 2-6-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2019.10.1. 이전)

구분	구직급여	자영자 실업급여
적용 대상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제외)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보수의 1.6% (사업주, 피용자 0.8%씩)	총 7등급 중 선택한 기준보수 (1등급 182만 원~7등급 338만 원)*2.25%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0,120원/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 급여일수 (1등급 91만 원~7등급 169만 원)
소정 급여일수	90~240일	90~180일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에서 2022.

11. 5. 인출하여 저자 작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2019년 기준 210만 원 미만)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신규 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9a, pp. 93-94; 고용노동부, 2021, p. 137).

## 2. 고용 창출 및 훈련

### 가. 능력개발 용자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생계비 대부를 통해 덜어줌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를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고용노동부, 2019a).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중에 부부 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이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에 참여 중이고 남은 훈련기간 15일 이상이면 1인당 1천만 원의 대부 한도 내에서 월별 50~200만 원을 용자받을 수 있다. 연 1%의 이율로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19.7.; 고용노동부,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d)

## 나. 능력개발 지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재직자 대상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대상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고용노동부, 2019.7.).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에 3년간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이거나 월 임금 총액 250만 원 미만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임의가입),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용노동부, 2019.7. p. 1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 지원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19.7. p. 12).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9.7., pp. 13-14).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현재 실업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18조, 19조를 근거로 한다(고용노동부, 2019a, pp. 364-366).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 졸업 예정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데, 1년간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한다.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소정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9.7, pp. 17-18).

2020년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일반회계),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고보기금),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고보기금) 사업이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폐합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p. 77).

#### 다.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등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 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상담, 진단)는 3주~1개월로,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2단계(직업능력 향상)는 최장 8개월로 훈련비 300만 원,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을 지급하며, 3단계(취업 알선)는 3개월로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II유형은 청년(18~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1단계에는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지급, 2단계에는 훈련비 200만 원,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3단계에는 현금 지원이 없다.

〈표 2-6-3〉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 취약계층	-3주~1개월 -참여수당 25만 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 원 -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	- 3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만 원, 최대 3개월 (중위소득 30~50%)
II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1주~1개월 -참여수당 20만 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 원 -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	- 3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2019.1.). 2019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p.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를 근거로 2017년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도입되었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0만 원(50만 원 6개월)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sup>1)</sup> 이하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3.19., 2022.5.12. 인출).

1)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3.19.)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에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2021년에 시행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 또는 3년간 적립한다. 2년 형은 청년이 300만 원, 정부 900만 원(일반회계), 기업이 400만 원(고보기금) 적립하여 2년간 총 1,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며, 3년 형은 청년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일반회계), 기업 600만 원(고보기금) 적립하여 3년간 총 3,000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9a, pp. 38-40).

## 3.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등 장기 저리 용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장기 저리 생계비 용자로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용노동부, 2019a, pp. 780-782). 2019년 11월 금리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고, 거치 방식이 다양화되어 기존 방식인 1년 거치 3년 상환과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20, pp. 800-802).

사업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 소득의 2/3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수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비, 장례비는 1,000만 원 한도, 혼례비는 1,250만 원 한도, 부모 요양비는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자녀 학자금은 1,0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자녀 연 500만 원 한도로 용자가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2022a).

2) 임금감소생계비는 신청일 이전에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 3개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의 7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감소한 임금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2022a).

3) 소액생계비는 신청일 이전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로 소득 기준은 임금감소생계비와 동일하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 용자액 한도는 200만 원이다(근로복지공단, 2022a).

마지막으로 4) 임금채불생계비는 휴업을 포함하여 영업 중인 임금채불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이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채불되었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소득액이 4인 가구 중위 소득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자금 한도액은 채불임금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근로복지공단, 2022a).

2종목 이상의 용자 신청 시에는 2,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때 소득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그림 2-6-1] 생활안정자금 사업 월평균 소득의 정의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2항  
2.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2022-20,20220222\)](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2022-20,20220222))에서 2022.11.5. 인출.

#### 4.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업 전환, 비과밀 업종 전환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재기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컨설팅·재기교육 수수료 및 폐업 신고 후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수료)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수료 시 40만 원, 취업 완료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의 2.25%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1인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도 없어 더욱 취약한 상황이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해당 사업의 도입 배경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4등급을 대상으로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pp. 1544-1545).

〈표 2-6-4〉 2019년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지원액 및 구직급여액

(단위: 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구직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자료: 중소기업부.(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p. 1544-154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5. 일자리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정의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행정안전부, 2019, pp. 913-914). 저소득층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용노동부, 2019b, p. 20). 직접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745,150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19b, p. 3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고용상황은 악화되는 반면 지역에서는 청년의 유출로 인해 구인난에 직면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행정안전부, 2019; 2020). 만 39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와 청년의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세부사업 공모 실시, 예산지원,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 보조율이 전국 40~50%, 서울 30~40% 수준이다. 지방재정법 제12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을 지원 근거로 한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2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전국의 마을기업,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2년 차에 청년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고,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2년간 이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연 2,400만 원과 교육 등 기타 지원 연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 비율은 국비 50%(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30%, 기업부담 20%이다. 3년 차에는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고용 시 1인당 연 1,0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또는 창업자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외에 지자체 자체 재원(지방비 100%)으로 주거·복지 등 청년의 정주 여건을 지원(자율 지원)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임대료, 교육 등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년간 창업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교육·컨설팅 비용 등 인건비 외 간접비용을 연 1,500만 원 수준으로, 교육 등 기타 지원을 연 15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정주 여건이 지자체 자체 재원(지방비 100%)으로 지원된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지방공공기관 등에서의 일 경험,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 서비스 등 공공·민간부문의 일 경험과 민간부문 취업 연계 1년간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인건비는 전일제 연 2,250만 원, 시간제 연 1,125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 등 연간 200만 원을 기타 지원한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2019년 사업 선정 결과, 총 912개 사업, 국비 2,082억 원 규모로 2.6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유형별로 지역정착지원형 257개 사업 1,257억 원 규모, 10,639명 지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14개 사업 301억 원 규모, 5,437명 지원, 민간취업연계형 436개 사업, 503억 원 규모, 10,106명 지원을 목표로 했다(행정안전부, 2019, pp. 405-408).

## 6. 근로·자녀장려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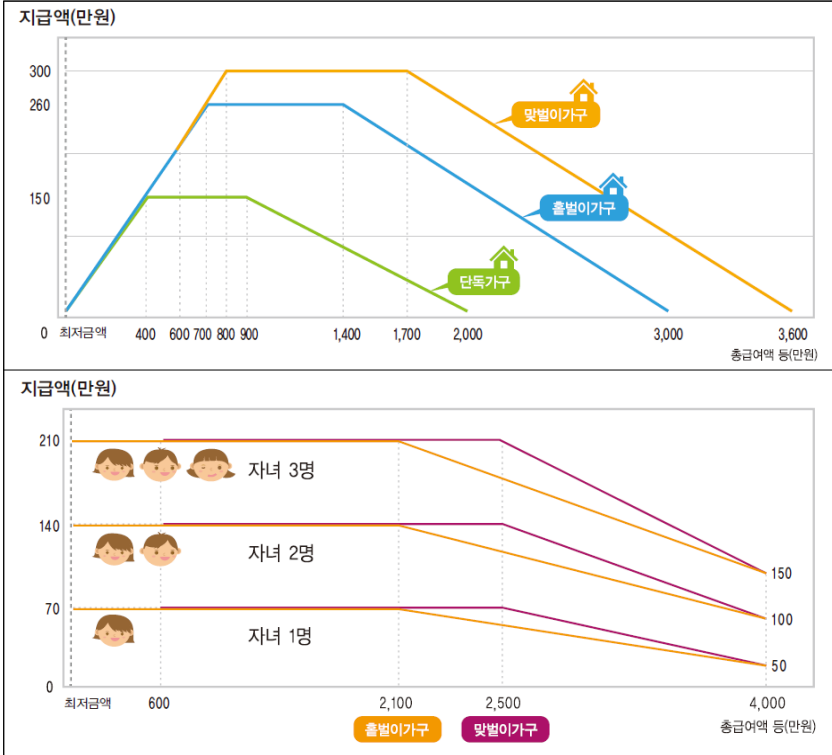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국세청, 2019).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하는 사람으로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과 기타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2018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별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4,000만 원 미만이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값이다. 신청 전년도인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며, 홀별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재산은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국세청, 2019a, p. 9).

급여액은 [그림 2-6-2]의 모형에 따라 산정된다. 급여액 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값이다(국세청, 2019a, p. 16).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별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 원이다(국세청, 2019a, p. 11).

[그림 2-6-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자료: 국세청(2019a).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p. 15.

## 제3절 사업 특성-DB 정보

### 1. 제도 기본정보

근로연령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일자리 관련, 또는 취업 형태에 따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국세청이 담당한다. 프로그램 명 기준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 창출 및 훈련,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담당이며(13개 세부사업), 소상공인·전통 시장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2개 세부사업), 일자리 지원이 행정안전부 담당(2개 세부사업), 근로·자녀장려세제가 국세청 담당이다.

### 2. 대상자 선정기준 -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연령층 소득지원제도는 개인의 취업상태와 연령에 따른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종사상지위를 포함한 취업상태가 주된 지원 조건이 되고, 연령, 사업장 규모 등이 그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서 성별, 장애 유무, 질병 보유 제한이 없다.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생산가능인구 연령 하한인 15세를 명시적인 연령 하한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근로할 수 있는 연령으로 하한을 두지 않는다. 그 외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포괄하는 제도로, 취업성공패키지는 18~69세로 연령을 제한하였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34세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덧붙여 행정안전부의 사업인 지역일자리 창출은 연령 하한은 18세로 두고 연령 상한을 두지 않았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연령 하한은 없으나 연령 상한은 39세로 제한하였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제도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지만, 가입자인 이상 65세 이상이어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상한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학력 조건 및 전공 제한도 없다. 이 가운데 학력 조건이 있는 사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18세 연령 하한과 더불어 적어도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해야 하고 대학원을 중퇴하거나 졸업하는 상한이 적용된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학력 하한으로 한다.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연령 제한과 더불어 추가적인 학력 조건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학력 조건은 없다.

취업상태가 가장 주된 지원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종사상지위 제한 조건이 가장 빈번하게 포함된다. 구직급여와 조기채취업수당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가 의무 가입이므로 <표 2-6-5>에서 하한을 1로 표기하였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의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 상한이 49인,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로 분류하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9인 이하 사업장 임금근로자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의 경우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특고 포함 자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므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한 임금근로

자나 비임금근로자, 실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과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 역시 각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특고 포함 자영자, 자영자와 실업자, 실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인 프리랜서 등(자영자(특고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므로 임금근로자(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자(비경활+실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소득 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된다.

〈표 2-6-5〉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의 종사상지위, 사업장 규모 지원 요건

세부사업명	급여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제한	종사상지위 제한 내용
		하한	상한		
구직급여		1	X	O	임금근로자(전체)
조기재취업수당		1	X	O	임금근로자(전체)
자영업자 실업급여		X	49	O	자영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X	9	O	임금근로자(전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용자)		X	X	O	③임금근로자(비정규직) ④자영자(특고 포함), ⑥실업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X	X	O	③임금근로자(비정규직) ④자영자(특고 포함)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X	X	O	④자영자(특고 포함), ⑥실업자



세부사업명	급여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제한	종사상지위 제한 내용
		하한	상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X	X	O	프리랜서 등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X	X	O	실업자 등
생활안정자금(용자)		X	X	O	임금근로자(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X	X	X	해당 없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X	X	O	⑤미취업자 (비경활 + 실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X	X	O	②임금근로자(정규직)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X	X	O	자영자(특고 포함)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없음	1	O	자영자(특고 포함)
지역공동체 일자리		X	X	X	해당 없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X	X	X	해당 없음
근로장려세제		X	X	O	①임금근로자(전체), ④자영자(특고 포함)
자녀장려세제		X	X	있음	①임금근로자(전체), ④자영자(특고 포함)

자료: 저자 작성.

### 3.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건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지원 분야 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의 취업상태를 가장 주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두 조건 모두 없는 사업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요건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라는 요건이 덧붙여지므로, 개인의 소득이 월 210만 원보다 적어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용자)은 소득 조건만 있고, 소득이 176~251만 원보다 적어야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각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100%, 120%, 65%라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는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각 기준 소득의 건강보험료보다 낮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도 소득인정액 방식은 아니지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부 또는 개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역시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2억 원의 재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용자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540만 원/년보다 소득이 낮을 때 수급 가능하다.

#### 4. 급여액 결정 방식

구직급여액은 기여 이력 및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고 월 상한액 198만 원을 최대 8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계속 취업할 경우 잔여 소정 급여의 1/2을 지급받기 때문에 구직급여액에 연동된다. 자영업자 실업 급여는 최대 소득 구간의 월 급여액이 169만 원(338만 원의 50%)이고, 최대 6개월 수급할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용자는 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은 훈련비 연간 2,000만 원, 장려금 월 116만 원이 최대 급여액이다. 생활안정자금(용자)은 지급주기 없이 최대

용자액만 결정되어 있는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최대 1,25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는 최대 1,000만 원,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임금체불 생계비는 1,000만 원으로, 다양한 목적의 용자액을 합산했을 때 상한이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급여액이 단계와 유형(훈련비, 참여수당)에 따라 다르고(〈표 2-6-3〉),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이 6개월간 지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급여명에 따라 1~3년간 연간 1,650~2,7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유형별로 평탄 구간의 급여액이 최대 급여액으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 5. 예산

2019년 결산액 기준,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조 9백억 원 규모의 구직급여와 1조 3천억 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1조 2백억 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4조 3천억 원의 근로장려세제, 7.3천억 원의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하는 국세청 사업 규모가 크다. 근로·자녀장려세제사업은 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위 금액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비를 포함하면 총 5조 원 규모이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1조 규모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며,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과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2020년 통합되어 0.88조 원 규모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 6. 수급자

수급자 규모는 근로장려세제가 가장 많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일부 단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급여액이 최대 300만 원이므로 예산 규모는 구직급여의 절반이 채 안 되지만 낮은 급여액을 다수의 수급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는 388만 5천 가구,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는 84만 8천 가구로 수급자 규모가 가장 크다. 그다음으로 수급자 규모가 큰 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152만 7천 명가량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다음으로 수급자 규모가 큰 사업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으로 약 51만 명이 지원 받았으며,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으로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수급자 규모가 큰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로 1유형 10만 3천 명, 2유형 12만 명이 수급하여 전체 22만 3천 명이 수급하였다. 그다음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82만 4천 명이 이 수당을 받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목표치가 8만 명으로 제시되어, 적지 않다. 그 외에는 수급자 수가 만 명 내외이거나 그보다 적다.



# 제7장

## 장애·보훈 분야

-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 제2절 포함 및 제외 사업의 주요 특징
- 제3절 사업 및 급여의 구분
-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 구축 결과
-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제 7 장 장애·보훈 분야

###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장애·보훈 분야는 주로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를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소득보장제도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 타 분야와의 배타적 구분이 가능하고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보훈 분야와 유사한 사업도 이 영역에 포함되었다.

우선, 장애 분야는 크게 장애인 고용·복지 지원, 산업재해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고용·복지 지원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일상생활 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산업재해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재근로자, 진폐근로자 등을 위해 산업재해보상 보험이나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기타 지원에는 명시적으로 장애나 산재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장애 혹은 산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희귀질환자, 원폭 피해자, 한센인, 석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훈 분야는 크게 국가유공자 지원, 제대군인 지원, 장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보훈처의 모든 사업들이 포함된다. 제대군인 지원 또한 국가보훈처의 사업이다. 장병 지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군간부, 장병, 예비전력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크게 2개 분야, 6개의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총 72개에 해당한다. 장애 분야에

29개, 보훈 분야에 43개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장애·보훈 분야 72개의 세부사업 중 이 연구에서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한 세부사업은 41개이며, 나머지 31개 세부사업은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포함된 41개 사업 중 장애 분야에서는 15개, 보훈 분야에서는 26개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표 2-7-1〉 장애·보훈 분야 검토 세부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장애			보훈			전체
	장애인 고용복지 지원	산업재해 지원	기타 지원	국가 유공자 지원	제대군인 지원	장병 지원	
포함	6	3	6	19	1	6	41
제외	12	2	0	11	2	4	31
전체	18	5	6	30	3	10	72

주: 사업의 수는 정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 단위로 산출하였다.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2절 포함 및 제외 사업의 주요 특징

### 1. 소득보장제도 DB 포함 사업의 특징

장애·보훈 분야에서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되는 사업은 용처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단순 현금급여와 함께 인건비(임금)가 지급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용자 및 이차보전, 매칭 금액이 지원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출 보전 성격을 가지더라도 이용자가 선 지출하고, 이후에 증빙을 통해 실비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소득보장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장애·보훈 분야의 소득보장제도 사업은 정부 예산서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41개이다.

장애 분야에서는 15개의 세부사업이 선별되었다. 첫째, 6개 세부사업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고용 지원 분야에는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연금과 같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단순급여와 함께, 임금이 지급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성격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포함되었다. 둘째, 3개 세부사업이 포함된 산업재해 지원 분야에서는 용자 형태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단순 현금급여가 대부분인 산재보험 급여와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이 포함되었다. 셋째, 6개 세부사업이 포함된 기타 지원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이 포함된다.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2개 포함되며, 용자와 단순 현금급여 형태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 중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원폭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의 사업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또한 환경부 소관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기타 지원에 포함된다.

보훈 분야에서는 26개의 세부사업이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하였다. 첫째,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이 19개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보상금, 4·19공로수당, 6·25자녀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등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장학금 지원,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교육비 지원이 포함되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영주귀국정착금도 포함된다. 둘째,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보훈처 소관의 제대군인 대부 사업 1개가 포함된다. 셋째, 6개 세부사업이 포함된 장병 지원은 국방부 소관의 사업들인데,

장학사업, 군간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부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부, 장애 보상금, 장병여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

〈표 2-7-2〉 장애보훈 분야 DB에 포함된 사업의 구성

구분		세부사업	담당부처
장애 (15)	장애인 복지·고용 지원(6)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지원(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산재보험 급여 -진폐위로금 지급	고용노동부
		기타 지원 (6)	-자동차사고 피해자 생활지원 및 학자금(용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회귀질환자 지원 -원폭피해자 진료비·장제비 등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보건복지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부
보훈 (26)	국가유공자 지원(19)	-5.18민주유공자 대부(용자)   -간호수당 -5.18민주유공자 장학금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대부(용자)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장학금           -참전명예수당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용자)   -고엽제수당 -특수임무유공자 장학금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재해보상금 -보훈 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4.19혁명 공로수당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 -6.25자녀수당                   (학습보조비 등)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1)	-제대군인 대부(용자)
	장병 지원 (6)	-장학사업                               -학자금 대부(용자) -군간부 전세자금 대부(용자)       -장애보상금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장병여비 지원	국방부

주: 제시된 사업명은 정부 예산서의 세부사업명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명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숫자이다.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에서 2021. 9. 28. 인출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외한 사업의 특징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72개 중 31개 사업은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사업은 대체로 현물(재화 및 용역)이 지원되거나,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수급자가 우선 지출한 후 증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실비가 지원되거나, 지출이 특정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으로 소득보장 성격이 없다고 보아 제외한 것들이다.

장애 분야에서는 14개 세부사업을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외하였다. 장애인 복지·고용 지원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지원 관리, 발달 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아동가족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장애인 취업 지원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도 고용서비스 사업이므로 제외하였다. 산업재해 지원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과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사업을 제외하였다.

보훈 분야에서는 17개 세부사업을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외하였다. 국가유공자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 격려, 노후복지 지원 사업들이 제외되었다. 이들 사업들의 예산은 가정돌봄, 요양원 입소, 그리고 행사경비 등에 소요된다.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고엽제환자 검진,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수업료 면제),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사업도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은 국립묘지 안장 지원, 묘비 지원, 묘소단장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보훈처 소관의 제대군인 의료 지원 사업과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제외하였고,

장병 지원에서는 국방부 소관의 장병 취업활동 지원, 예비전력 급식 지원, 장병 진료 지원, 장병 보건복지 지원 사업을 제외하였다.

〈표 2-7-3〉 장애보훈 분야 DB에서 제외한 사업의 구성

구분		세부사업		담당부처
장애 (14)	장애인 복지·고용 지원(1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지원 관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산업재해 지원(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고용노동부
보훈 (17)	국가유공자 지원(11)	-5·18민중유공자 위로격려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위로격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위로격려	-고엽제 환자 검진		
		-특수임무유공자 위로격려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수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업료 면제)	
		-참전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제대군인 지원(2)	-제대군인 의료 지원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국가보훈처
	장병 지원 (4)	-장병 취업활동 지원	-장병 진료 지원	국방부
		-예비전력 급식 지원	-장병 보건복지 지원	

주: 제시된 사업명은 정부 예산서의 세부사업명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명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숫자이다.

자료: 저자 작성.

### 제3절 사업 및 급여의 구분

이 절에서는 장애·보훈 분야에서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41개 세부 사업을 급여와 세부급여 단위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제시한다.

#### 1. 세부사업 단위와 실제 사업 단위의 불일치

정부 예산서에 제시된 세부사업 단위와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의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장애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 및 장학금 지원, 보훈급여금이 그렇다.

첫째, 장애수당의 경우 정부 예산서에는 ‘장애수당(기초)’과 ‘장애수당(차상위 등)’의 두 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수당을 ‘기초’와 ‘차상위 등’으로 구분한 것은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데(보건복지부, 2019), 이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예산서에 제시된 ‘장애수당’이라는 세부사업에는 실제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즉, 실제 사업은 연령대에 따라 장애수당(18세 이상)과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정부 예산서에는 이러한 두 가지 급여를 통합하고, 다시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사업과 장학금 사업은 실제로는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세부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사업과 보훈장학 사업(장학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통합되어 운영되지만(국가보훈처, 2019a, 2019b), 예산서상에는 이를 국가유공자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보훈 보상금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부가급여들이 더해지는 형태인데(국가보훈처, 2019c), 이러한 모든 부가급여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보훈급여금과 달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 보상금에 더해 지급되는 4·19공로수당, 6·25자녀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은 모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 급여를 정부 예산서상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세부급여가 있음에도 산재보험급여라는 하나의 세부사업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보훈 분야에서 이렇게 세부사업 단위와 실제 운영되는 사업의 단위가 다른 경우에도 세부사업을 통합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그 하위 단위로 급여와 세부급여를 분리하는 본 연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2. 급여의 분리

하나의 세부사업이 급여의 성격,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액 결정 방식 등에서 통일된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동일하게 코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급여로 분리하였다. 장애·보훈 분야에서는 14개의 세부사업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급여로 분리되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급여 중 장애수당(기초)과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지급 대상과 급여액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모두 급여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하였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과 급여액이 다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리하였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1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존재하는데, 급여 수준과 지급기간 등이 모두 달라 서로 다른 급여로 분리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표 2-7-4〉 장애보훈 분야 급여 분리 결과

세부사업명	급여명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_기초	-장애아동수당_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수당_차상위 등	-장애아동수당_차상위 등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의료비 -훈련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	-장해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급여
피해자 지원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
희귀질환자 지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원폭피해자 진료비·장제비 등 지원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5·18민주유공자 대부(용자) -국가유공자 대부(용자)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용자)	-주택 대부 -자영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제대군인 대부(용자)	-주택 대부 -자영사업 대부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 대부

주: 급여명에 제시된 숫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부급여의 숫자이다.  
자료: 저자 작성.

산재 관련 급여 중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용자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으로 구분되는데(근로복지공단, 2022), 용자 규모가 모두 달라 여러 개의 급여로 구분하였다. 산재보험급여 또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로 구분하였는데, 장해급여는 지급 형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누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원폭피해자 원호수당,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급여를 분리하였다.

보훈 분야에서 5·18민주유공자 대부, 국가유공자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대부는 모두 세부 대부 내용이 주택 대부, 자영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로 구분되어 이를 서로 다른 급여로 나누었다(국가보훈처, 2019a). 제대군인 대부의 경우에는 여기에 급여로 학자금 대부가 더 추가된다(국가보훈처, 2019d).

##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 구축 결과

장애·보훈 분야에서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41개 세부사업을 급여 단위로 보면 74개가 된다. 이는 급여까지 세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이 곧 1개의 급여로 간주했을 때의 숫자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장애·보훈 분야 74개 세부급여의 DB 구축 결과를 제도의 기본정보,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액 결정 방식, 예산의 측면에서 기초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제도의 기본정보

장애·보훈 분야 74개 급여의 담당 부처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29개, 고용노동부 18개, 보건복지부 14개로 이들 세 개 부처가 전체 급여의 86%를 차지한다. 이 외에 국방부가 6개, 국토교통부가 5개, 환경부가 2개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다.

〈표 2-7-5〉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담당 부처

(단위: 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체
14	18	29	6	5	2	74

자료: 저자 작성.

급여의 지원 성격을 살펴보면 전체 74개 중 절반이 넘는 42개 급여가 단순 현금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용자 성격을 갖는 급여도 23개로 비교적 많았다. 나머지 급여는 인건비 1개, 지출보조 1개, 자산형성지원 1개, 장학금 5개, 이차보전 1개이다.

〈표 2-7-6〉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지원 성격

(단위: 개)

단순급여	인건비	지출보조	자산형성 지원	장학금	단순용자	이차보전	기타	전체
42	1	1	1	5	23	1	0	74

자료: 저자 작성.

급여의 대상을 보면 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개뿐이었으며, 나머지 73개 급여는 모두 개인을 급여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는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이었다.

## 2.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연령의 하한 조건을 두는 경우는 18개 급여가 있다. 이 경우 15세 이상, 18세 이상, 19세 이상, 65세 이상과 같은 연령 하한 조건이 있었다. 연령 상한 조건을 두는 급여는 9개가 있었으며, 17세 이하와 69세 이하의 상한 조건이 존재했다. 연령 하한과 상한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 급여는 4개가 있었는데, 모두 18~69세로 연령대가 제한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급여였다.

〈표 2-7-7〉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연령 조건

(단위: 개)

연령 하한 조건		연령 상한 조건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8	56	9	65	74

자료: 저자 작성.

학력 조건이 존재하는 급여는 총 7개가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장학금, 학자금 대부, 학습보조비 지원이 포함된다.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는 급여 3개(국가유공자 등 장학금), 대학교 이상 과정을 지원하는 급여 1개(국가유공자 등 장학금), 대학교 과정만을 지원하는 급여 2개(장병 장학사업, 장병 학자금 대부), 중학교~대학교 과정을 지원하는 급여 1개(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학습보조비 등))가 있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종사상지위를 제한하는 급여는 모두 6개가 존재했다. 6개 급여 모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였으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4개 급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훈련참여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급여 자격에 기여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는 12개 급여가 있으며, 이는

모두 사회보험 기여금이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7개 급여)과 산재보험급여(5개 급여)가 해당된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보면 소득 조건만 있는 급여가 7개, 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고, 그 방식이 소득인정액 방식인 급여가 14개 있다. 나머지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없는 경우로 53개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 조건만 있는 경우는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7개 급여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월평균 소득은 신청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산재보험 현금급여를 합한 것이다(근로복지공단, 2022).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만 별도의 소득 인정액 산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과 일부 공제 수준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19).

〈표 2-7-8〉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단위: 개)

소득 조건만 있음	재산 조건만 있음	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 (소득인정액 방식 이외)	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없음	전체
7	0	14	0	53	74

자료: 저자 작성.

### 3. 급여액 결정 방식

기여 이력에 따라 급여가 차등되는 급여는 6개로 모두 사회보험 급여이다. 산재보험 급여의 5개 급여, 그리고 진폐위로금이가 해당한다. 이들

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급여액이 결정된다. 나머지 68개 급여는 모두 기여 이력과 무관하게 균등 급여가 지급된다.

성,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급여는 3개가 존재한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되는 규칙이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65세 미만과 이상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급여는 3개가 있다. 보훈 재해보상금의 경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본인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균등 급여를 지급하지만, 일반 순직의 경우에는 당사자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액으로 정하고 있어 차등 지급이라 볼 수 있다(국가보훈처, 2019e). 군인 장애보상금 또한 군인연금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액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급여 수준이 차등화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

급여의 지급주기를 보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가 33개로 가장 많으며, 1회 한정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21개로 많았다. 그 외에는 부정기 10개, 반기 7개, 기타 1개, 분기 1개, 연 1개였다. 부정기로 지급되는 급여는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5개 급여), 산재보험 급여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병 여비 지원이 해당한다. 반기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교육 관련 급여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 사업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의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희귀질환자 특수식이 구입비는 연 1회 지급된다. 이 외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성공수당은 지급주기의 규칙이 있지만 3, 6, 12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있어 기타로 분류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표 2-7-9〉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지급주기

(단위: 개)

월	분기	반기	연	1년 초과	부정기	1회 한정	기타	전체
33	1	7	1	0	10	21	1	74

자료: 저자 작성.

#### 4. 예산

장애-보훈 분야 74개 급여의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가 26개, 특별회계가 1개, 기금이 47개로 나타난다. 특별회계는 진폐위로금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되는 기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군인복지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있었다.

〈표 2-7-10〉 장애-보훈 분야 급여의 재원

(단위: 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특별회계	일반회계+기금	기타	전체
26	1	47	0	0	0	74

자료: 저자 작성.

지방비와 국비가 결합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급여는 6개가 있다. 급여는 6개지만 실제 사업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3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서울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 70%의 국고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다.

##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장애·보훈 분야의 소득보장제도 사업별 대상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국민 중에서 장애인과 보훈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하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보훈대상자(본인 및 유족)는 그보다 훨씬 적은 843,770명에 불과하다(국가보훈처, 2020). 2019년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도 320,184명에 그친다(근로복지공단,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혹은 수만 정도의 표본 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 조사자료에서 드러나는 장애인 혹은 보훈대상자의 수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은 표본으로 추정한 결과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국내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 문항에 장애 혹은 보훈과 관련된 문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장애인 여부에 대한 문항을 가지고 있어 장애 분리 통계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여부 문항만 있을 뿐 세부적인 장애 정보가 없어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되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급여의 대상자를 추정할 수 없다. 보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같이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조사자료가 있지만 이는 횡단 대표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작은 표본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더라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조사자료를 추정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제도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급여의 자격기준이, 연령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급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소득 항목의 조사가 일반적인 기준(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과 같지 않고, 자산부채 항목은 별도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 자산 조사가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추정할 수 없다. 더구나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는 3년으로 2017년과 2020년에 실시되어 2019년의 자료는 확보되지 않는다.







# 제8장

##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1절 주요 특징

제2절 사업 범위

제3절 사업별 개요

제4절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제5절 사업별 DB 정보

제6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제 8 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 제1절 주요 특징

이 장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살펴본다. 공공부조제도는 대체로 생계를 지원하는 단순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출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광의의 소득보장제도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포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분석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사상자, 재난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분석한다.

### 제2절 사업 범위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는 <표 2-8-1>과 같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포함하였다. DB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류되하였고,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해산장제급여’라는 명칭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포함하였다. DB에서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단위사업명은 ‘자활 지원’으로 동일하였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었다. 다음

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포함하였다. DB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의사상자 지원 사업,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포함하였다.

〈표 2-8-1〉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범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주거생활보장	주택정책 지원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노숙인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예우	의사상자 지원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재난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에서 2021. 9. 28. 인출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DB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노숙인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 심리회복 지원, 풍수해보험 지원은 이 연구가 정의한 소득보장제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제외한 사업은 대체로 현물·서비스 급여에 해당한다.

단, 다음과 같이 DB에 포함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소득보장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물급여를 포함한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는 현금급여이지만, 자가가구의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현물급여에 가깝다(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DB에서는 주거급여 항목의 완결성을 위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모두 포함하였다. 둘째,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부분적으로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을 실비 지원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교육부, 2019, p. 3; 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19c, p. 2). 그런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와 달리,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은 대체로 수급자가 아닌 학교로 지원되므로 현물급여에 가깝다. DB에서는 교육 지원 항목의 완결성을 위해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급여를 포함하였다. 셋째,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크게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 지원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9f, p. 3). 후자는 필수 지출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이 연구가 정의한 소득보장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전자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이 연구가 정의한 소득보장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DB에서는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항목의 완결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 제3절 사업별 개요

〈표 2-8-2〉에는 사업별 개요를 정리하였다. 우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 30%, 44%, 50%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x).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한다(교육부, 2019, p. 6).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장제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p. 253-255).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주로 본인 저축에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3).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하위사업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9e, p. 4). 자활사업은 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d, p. 2). 자활사업은 매우 다양한 하위사업이 포함되는데, DB에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장려금 등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는 주요 하위사업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pp. 81-93, p. 119, p. 137).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9b, p.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거, 시설, 의료 등을 지원하는 현물급여를 포함하지만, DB에는 생계,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 장제를 지원하는 현금급여를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p. 5).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보건복지부, 2019c, p. 1)을 지원한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의료, 고궁 등 이용,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현물급여를 포함하지만, DB에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의상자 및 가족 보상금,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현금급여를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2019c, p. 2).

〈표 2-8-2〉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내용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주거급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 입학급여,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급 지원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 지원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 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장려금 등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 신속 지원 · 생계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비·장제비 지원 등
의사상자 지원	· 의사상자 본인, 가족, 유족 지원 ·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의사자 및 가족 보상금,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 사망·실종·부상 시 지원, 생계 지원, 주택 피해 지원 등

자료: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x.  
· 주거급여지원: 국토교통부. (2019a).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p.38-40.  
· 교육급여: 교육부. (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 2019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해산장제급여: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253-255.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보건복지부. (2019e). 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pp.3-4.  
·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 자활사업안내(I). p.2, pp.81-93, p.119, p.137.  
·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pp.3-5.  
·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pp.1-2.  
· (건강보험)차상위계층 지원: 보건복지부. (2019f). 2019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 p.3.  
· 재난대책비(보조): 관계부처 합동. (2017). 2017년 지원 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p.2; 관계부처 합동. (2020). 2020년 지원 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p.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p.1.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f, p. 3).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생계 피해, 주택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구호물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난방·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현물이 함께 지원되지만, DB에는 주요 현금급여를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p. 7, pp. 32-44;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p. 21, pp. 54-6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p. 3, pp. 7-8).

## 제4절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DB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세부사업의 하위급여가 존재할 때 필요에 따라 하위항목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하였다. 급여에 따른 하위항목은 2단계까지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은 1단계에서 구분한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하위항목을 2단계에서 추가로 인턴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동일한 급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격기준으로 하위항목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부교재비 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하위항목을 구분하였다.



〈표 2-8-3〉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입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인턴형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복지·자활도우 미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생계 지원		1인 가구·대도시
			2인 가구·대도시
			3인 가구·대도시
			4인 가구·대도시
			5인 가구·대도시
			6인 가구·대도시
			1인 가구·중소도시
			2인 가구·중소도시
			3인 가구·중소도시
			4인 가구·중소도시
			5인 가구·중소도시
			6인 가구·중소도시
			1인 가구·농어촌
			2인 가구·농어촌
			3인 가구·농어촌
			4인 가구·농어촌
			5인 가구·농어촌
			6인 가구·농어촌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교육 지원	학비 지원	초등학생·대도시
			중학생·대도시
			고등학생·대도시
			초등학생·중소도시
			중학생·중소도시
			고등학생·중소도시
			초등학생·농어촌
			중학생·농어촌
			고등학생·농어촌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동절기 연료비	
	중소도시		
	농어촌		
	해산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제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의사상자 지원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의상자 및 가족 보상금		
	교육보호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장제보호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건강보험)차상위 계층 지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18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재난대책비(보조)	사망자·실종자 지원		
	부상자 지원		
	생계비 지원		
	주택 피해 지원		

자료: 저자 작성.

〈표 2-8-3〉에는 사업별 DB 하위항목을 구분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주거 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격을 구분하였다(교육부, 2019).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격기준에 따른 구분이 불필요하다(교육부, 2019).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는데, 개별 하위급여는 가입 대상, 본인 저축 조건, 정부 지원 등에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19e, p. 4). 하위급여 중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은 자격기준에 따라 하위항목을 추가로 구분하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을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4).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는데(보건복지부, 2019e,

p.4), 자활근로사업 주요 참여 대상자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이므로(보건복지부, 2019d, pp. 81-87), 희망키움통장Ⅱ의 하위항목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의 자격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지원하므로(보건복지부, 2019e, p. 4), 대체로 자격기준에 따른 구분이 불필요하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정부 지원이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를 하위급여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64).

자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자활장려금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고, 인턴·도우미형을 다시 인턴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pp. 81-93, p. 119, p. 137).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에게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데(보건복지부, 2019d, p. 11), 개별 하위급여에 따라 주요 참여 대상자에 차이가 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의 주요 참여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이고, 복지·자활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의 주요 참여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이며,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의 주요 참여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이다(보건복지부, 2019d, pp. 81-93, p. 119). DB에서는 이와 같은 하위급여별 주요 참여 대상자를 자격기준에 따른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므로, 자격기준에 따른 구분이 불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9d, p. 137).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고, 교육 지원은 다시 학비 지원과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p. 5).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자격기준에 따른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p. 5). 생계 지원은 가구 규모에 따라, 학비 지원은 학교급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1인 가구, 2인 가구, ..., 6인 가구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자격기준에 따른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p. 40, p. 50).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의사자 및 가족 보상금, 교육 보호, 장애보호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c, p.2).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육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와 동일한 형태로 지원되므로(보건복지부, 2019c, p. 2),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자격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고, 개별 하위급여의 자격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p. 3).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사망자·실종자 지원, 부상자 지원, 생계비 지원, 주택 피해 지원으로 하위급여를 구분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 제5절 사업별 DB 정보

### 1. 급여 형태 및 성격

다음으로는 DB에 입력된 주요 정보를 설명한다. 우선 급여 형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현금급여’로 코딩하였지만,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긴급복지지원제도/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현물급여’로 코딩하였다. 급여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급여를 ‘인건비’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자산형성지원’으로 코딩하였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 지원,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육보호·장제보호,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출보조’로 코딩하였으며, 그 밖에 특정 지출을 전제하지 않은 급여를 ‘단순급여’로 코딩하였다.

### 2. 급여 대상

급여 대상은 단일 사업 내에서도 하위급여별 성격을 고려하여 코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로 코딩하였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각각 학생, 출산자, 사망자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으로 코딩하였다.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생계·연료비 지원,

유족·가족 보상금은 ‘가구’로 코딩하였지만, 교육·해산·장제 지원은 ‘개인’으로 코딩하였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에게 인건비와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개인’으로 코딩하였고,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므로 ‘개인’으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p. 3).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과 희망키움통장 II는 각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므로 ‘가구’로 코딩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각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지원하므로 ‘개인’으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4).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가구, 주소득자나 주생계수단에 피해가 발생한 가구, 주택 피해가 발생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로 ‘가구’로 코딩하였지만, 부상자 지원은 재난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으로 코딩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체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코딩하였는데, 성별/연령/장애/학력/전공/산업/사업장 규모/직업/종사상지위/질병 등과 같이 DB에서 구성한 범주로 코딩하기 어려운 선정기준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49; 보건복지부, 2019f, p. 9).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충족된다(보건복지부, 2019a, p. 49).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보건복지부, 2019b, p. 5),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의사상자 본인, 가족, 유족을(보건복지부, 2019c, p. 1),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집단을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임차 가구를,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를 지원하고(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해산·장제 지원은 출산자 및 사망자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p. 253-255; 보건복지부, 2019b, pp. 53-54; 보건복지부, 2019c, p. 2).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하위급여에 따라 근로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 근로활동 중인 개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19, p. 33, p. 45, p. 63). 한편, 자활 사업에 연령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DB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구분한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조건부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18~64세에 해당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d, p. 12). 따라서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에 따른 하위항목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18~64세의 연령 제한을 코딩하였다.

#### 4. 기여 조건 및 소득·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대상자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본인 저축을 요구하므로, 기여 조건을 ‘있음’으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4).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여 조건을 '없음'으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사상자 지원 사업과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중소도시 118백 만 원/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

셋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6; 보건복지부, 2019f, p. 11).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각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44%, 50%, 50% 이하인 집단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6; 보건복지부, 2019f, p. 11).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163; 보건복지부, 2019f, p. 33). 한편,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소득평가액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9a, p. 97; 보건복지부, 2019f, p. 13).

넷째, 해산·장제급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자활사업은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타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은 하위급여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DB에서는 자격기준에 따라 하위항목을

구분하고 해당 자격의 소득·재산 기준을 코딩하였다.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의 자격별 소득·재산 기준을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차상위자 선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평가액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금융재산 환산율을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한 월 4.17%로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97, p. 163; 보건복지부, 2019d, p. 26). 둘째, 희망키움통장Ⅱ의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의 차상위자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차상위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있지만, 희망키움통장Ⅱ의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한다(보건복지부, 2019e, pp. 33-34). 셋째, 자활급여 특례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할 때 5년 동안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p. 55-57). 따라서 DB에서 자활급여특례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초과로 코딩하였다. 넷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급가구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자를 지원하지만, 하위급여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추가 소득 조건이 존재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19, p. 33, p. 63).

## 5. 급여액 결정 방식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은 대상자에게 기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여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 않는다. 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과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이 월 5만 원일 때보다 10만 원일 때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제공하므로, DB에서 기여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를 ‘차등’으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e, p. 21, p.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는 기여 및 소득·재산 외 사유로 급여를 차등할 때 대체로 ‘차등’으로 코딩하였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 지원,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의 생계비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자활사업의 자활장려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보건복지부, 2019a, p. 232; 보건복지부, 2019b, p. 40; 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보건복지부, 2019e, p. 20; 보건복지부, 2019d, p.137).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지역, 가구 규모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교육급여/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학비 지원은 학교급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교육부, 2019; 보건복지부, 2019c, p. 2; 보건복지부, 2019b, p. 50).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의사상자 및 가족 보상금,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의 부상자 지원 및 주택 피해 지원은 의사상자 등급, 장애등급, 주택 피해 규모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보건복지부, 2019c, p. 2; 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은 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경감한다(보건복지부, 2019f, p. 5). 단, DB의 상위 항목 수준에서 가구 규모, 학교급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만 가구 규모, 학교급 등으로 자격을 구분한 하위항목 수준에서 급여가 균등하면, 상위 항목은 ‘차등’, 하위항목은 ‘균등’으로 코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은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 않는데,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소수의 사업은 소득·재산과 급여의 관계가 정적인 사례와 부적인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계 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과 급여의 관계가 부적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231). 주거급여는 보충급여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급여를 차감한다(국토교통부, 2019a, pp. 39-40). 둘째,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21, p. 64). 셋째, 자활사업의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하는 생계급여이므로, 자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19d, p. 137).

DB에서 기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 않는 사업은 대체로 “정액급여”로 코딩하였다. 단, 교육급여/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교육 지원/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고등학생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지원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은 ‘기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지 않지만 급여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코딩하였다. 그 밖에 주거급여,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내일키움통장,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의상자 및 가족 보상금,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의 부상자 지원/생계비

지원/주택 피해 지원은 ‘기여 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므로 “기타”로 코딩하였다. 또한 DB에는 “정액급여”로 코딩한 사업에 대해 지급주기별 급여액을 함께 입력하였다. 자활사업은 근로 시간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므로 급여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지침이 제시한 월 표준소득액을 입력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p. 64).

급여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 지원/연료비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로 코딩하였다. 교육급여/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육보호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을 연 1회 지원하고,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원한다(교육부, 2019; 보건복지부, 2019c, p.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교육 지원은 학비를 분기 단위로 지원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대체로 1회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해산·장제 지원은 출산·사망 시 1회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pp. 253-255; 보건복지부, 2019b, pp. 53-55; 보건복지부, 2019c, p. 2).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상자 및 가족 보상금,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체로 1회 지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c, p. 2; 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년을 주기로 지원한다(국토교통부, 2019a, p. 40).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은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므로 급여 지급주기를 “기타”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p. 5).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중 자산형성지원 사업, 자활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대체로 급여 지급 기한이 존재한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3년 동안 정부 지원을 적립한다(보건복지부, 2019e, p. 20, p. 36, p. 45, p. 64). 자활사업은 하위급여에 따라 12~60개월로 참여기간을 제한하는데, 단 근로유지형은 참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9d, p. 58, p. 87, p. 89, p. 90, p. 91, p. 119, p. 138).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체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 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3개월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b, p. 40). DB에서는 심의 없이 지원 가능한 최대 기한인 3개월로 코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침을 참고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학비 지원, 연료비 지원의 급여 지급기한을 각각 2분기, 3개월로 코딩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pp. 50-51, p. 52).

## 6. 예산 및 수급자 규모

DB에는 세부사업 단위 예산액 및 결산액을 입력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주거급여 예결산액은 국민기초생활제도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포함한다(국토교통부, 2019b, p. 548).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결산액은 DB에서 제외된 현물급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거·의료·시설 지원 등을,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의료·고궁 이용 지원 등을,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구호물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을 포함

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19c, p. 2; 관계부처 합동, 2017, p. 2, p. 7, pp. 32-44;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p. 21, pp. 54-6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p. 3, pp. 7-8).

〈표 2-8-4〉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수급자 규모를 제시하였다. 사업에 따라 급여 대상과 수급자 규모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수급자 규모의 단위를 함께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하위급여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을 지원하지만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20b, p. 391)에 지원 건수가 집계되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건수는 주거·의료·시설 지원 등 현물급여가 포함된 수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8-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급자 규모

세부사업명	급여명	수급자 규모	출처
생계급여		942,925가구	보건복지부. (2020a). 2019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21.
주거급여지원		1,187,953가구	
교육급여		292,773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계	13,552명	보건복지부. (2020b). 보건복지 통계연보. p.393.
	희망키움통장 I	1,350명	
	희망키움통장 II	7,324명	
	내일키움통장	3,825명	
자활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1,053명	보건복지부. (2020b). 보건복지 통계연보. p.392.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10,441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29,449명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1,629명	
긴급복지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6,834명	보건복지부. (2020b). 보건복지 통계연보. p.391. 주거·의료·시설 지원 등 현물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336,782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272,567명	보건복지부. (2020c). 202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 p.3.

자료: 표의 출처에 제시하였다.



## 제6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추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므로, 가구 단위 소득·재산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정이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점은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2019년 시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로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 2019년 시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다. 둘째,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로 출산자 및 사망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적 낙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잠재적 대상자가 수급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 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넷째, 서베이 데이터로 파악한 소득·재산 정보와 수급 행정에서 활용되는 소득·재산 정보의 범위, 개념, 정확도에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부동산을 시장가격으로 조사하지만 수급행정에서는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추정과 유사한 수준의 한계를 전제한다면, 대상자 추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f, p.3). 이때 소득인정액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고, 18세 미만 아동은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은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수급가구,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므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집단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지원하는데(보건복지부, 2019e, p. 4),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를 추정할 때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가 가능한 소득·재산 집단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을 당연 지원하기보다는 희망자를 지원하는 형태에 가깝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 수급자가 희망할 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보건복지부, 2019e, p.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수급 대상으로 추정된 집단을 자활사업 대상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8-4>에 보고하였듯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자활사업의 하위급여별 수급자는 약 1,000~30,000명, 전 국민의 0.1% 미만 수준이므로, 몇천~몇만 명 표본의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로 해당 규모의 대상자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서베이에서 조사하지 않는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 추정이 불가능에 가깝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등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지원하고(보건복지부, 2019b, p. 5),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보건복지부, 2019c, p. 1)을 지원하며,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생계 피해, 주택 피해 등이 발생한 집단을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 p. 2; 관계부처 합동, 2020, p.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p. 1). 이와 같은 가구 및 개인 특성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조건이지만,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다.





# 제9장

## 교육·문화예술 분야

제1절 주요 특징

제2절 사업의 범위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특성

제4절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개요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 제 9 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 제1절 주요 특징

본 장에서는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소득보장제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교육 분야 소득보장제도들은 대부분 교육부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연령에 따라 학령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사업, 고등학생 대상 취업 연계 장려금, 대학생 대상 대표적인 소득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과 기획재정부의 중·고등학생 대상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교육 관련 대표적인 기초보장 성격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 다루는 관계로 본 장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성격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예술인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소득보장제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제2절 사업의 범위

소득보장 DB 형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다. 먼저 교육 영역은 교육부의 유아 단계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사업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 고졸 취업자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대표적 지원 사업은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으로 세분된다. 한편 이공계 분야 우수 학생의 조기 발굴과 학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와 기획재정부의 저소득층 중고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추가된다. 소득보장제도 DB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이 있다. 직접적 소득지원의 기준에 의해 교육부의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보조원 인건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운영 등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외하였다. 동일한 사유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디지털방송 시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 <표 2-9-1>은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 범위에 대한 개요이다.



〈표 2-9-1〉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 DB 개요

담당 부처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급여명 <sup>1)</sup>	대상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만 3~5세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중·고등 학생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등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대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문100년장학금	인문사회 대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 대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드림장학금	고등학생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이공계 대학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주: 세부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수행될 경우 동일한 세부급여명을 사용하였고, 세부사업이 다양한 하부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각기 다른 세부급여명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제3절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특성

소득보장제도 DB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 교육부 주관의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1.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

유아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3~5세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누리과정)의 유아들에게 생애 출발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수행되고 있다(교육부, 2018). 2012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들에 대해 무상교육과 보육을 위한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2013년 만 3~4세로 누리과정 대상이 확대되면서 만 3~5세 전 계층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2019년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대상 유아 1,227,017명으로 이 사업의 예산은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sup>2)</sup>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 학비는 6만 원, 방과 후과정비는 5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 학비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로 29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교육부, 2018).

1) 소득보장 DB의 기준 연도가 2019년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9년도에 준한다.

2)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으로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누리과정(일 4~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누리과정 포함 일 7~8시간)은 방과후과정에 속한다(교육부 2018).

## 2.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가 대학 진학 이후 등록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업경로를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과 학업 외 활동 지원 등을 보완하고자 계획되어 장학금, 멘토링·진로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KDI, 2019). 2019년 시범사업 도입 후 지속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선발하고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계층 이동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층 중·고생 약 1,500명에게 매월 장학금 30~4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내 학생들이다(기획재정부, 2019). 장학금은 학업 목적의 학업장려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업 장려비는 교육학습 지원, 체험학습 지원, 다양한 진로 및 취미레저 지원, 안경 등 학업을 위한 부수적 비용을 위해 지원되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액수만큼의 장학금 카드가 지급된다(한국장학재단, 2019a). 또한 1:1 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외에 정서적 지지와 학생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멘토링 캠프, 전문기관의 진로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장학생의 진로 활동을 점검, 학습 지도 등 진로 및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멘토링을 실시하며, 분기당 5만 원의 멘토링 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한국장학재단, 2019a).

###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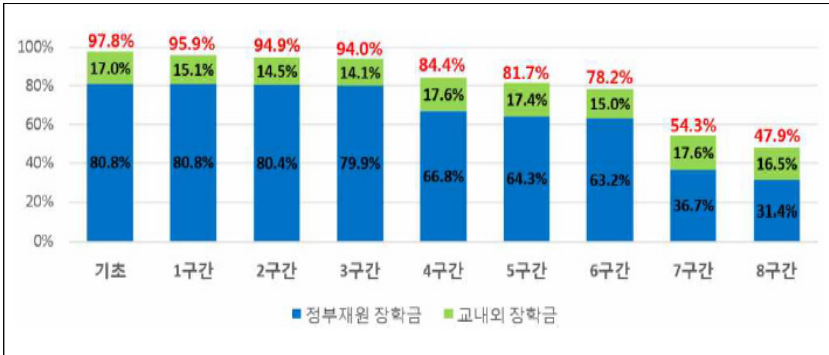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졸 기술·기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교육부 2018). 사업의 수혜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로 국내 직업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 약 25,500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1인당 3백만 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9b). 해당 사업은 선발 시 저소득층 여부, 직업계고 여부, 취업 시기, 성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학생들이 이 장려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전교육 이수 및 중소기업 의무종사(6개월)를 유지해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장려금은 반환 및 환수 조치된다(교육부 2018).

### 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소득보장 DB 구축에서 교육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사업으로 크게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8). 2011년 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국가장학금 사업은 정부재정과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이 정부와 공동으로 등록금 공동 부담을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2019년의 경우 약 6.5조 원(정부재원 장학금 약 4조 원+대학 교내·외 장학금 약 2.5조 원)이 지원되었으며 109만 명이 국가장학금 수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특히 소득 3구간 이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약 95%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p. 2). 국가장학금 지원은 소득 분위별로 정액을 차등 지원하는 I유형,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연계 지원하는 II유형,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9-1] 2019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자료: 교육부(2020),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p. 2.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한국장학재단, 2019b).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입학금, 수업료 등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학별 선별기준을 충족한 자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경우 대학별 자체 선별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되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만약 신청자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이고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된다(한국장학재단 2019b).

2019년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대비 130%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교육부, 2019a).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세부사업인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은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사회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자 시행되었다(교육부, 2019b).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세부사업인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은 인문 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이 있다. 먼저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문 100년장학금은 신입생을 선발하여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공탐색 유형과 4년제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공확립 유형으로 구분된다.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는 공통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로 지원된다(한국장학재단, 2019c). 대학은 자체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및 학생 역량을 고려하여 심사 후 신규 장학생을 추천 대상으로 신청한다. 대학별 재학생 수에 따라 선발인원을 배정하되, 지역별 배정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를 적용한다(한국장학재단, 2019c).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신규 장학생 대상 최초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당 180만 원의 추가 생활비가 지원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 일반 및 조건부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을 의미한다(한국장학재단, 2019d). 인문 100년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이나 학생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으로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전공별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장학생을 추천한다. 지역별 배정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하게 50%를 적용한다(한국장학재단, 2019d).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해외 유학 장학사업인 드림장학사업은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학부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신 2등급 이내의 우수한 성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들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월 50만 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월 70만 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유학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교육부, 2017; 교육부, 2018).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I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II유형)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대상인 I유형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고졸 직장인 대상인 II유형의 경우 등록금 전액 또는 50%(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2,600명에 대해 지원한다(교육부, 2019c).

## 5.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다음으로 소개할 교육 관련 소득보장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이다. 이 사업은 이공계 분야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비를 지원하여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최우수 과학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9,000명 내외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이 2003년 신설된 이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등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관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관장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9e). 신규 장학생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 지원하고,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8회로 지원 가능하다.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 지원 가능하고 재학 중 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는 선발된 해당 학기에 한해 1회 지원 가능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지원의 내용은 장학생 선정 후 계속 지원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대학 우수 학생 장학생은 등록금의 50%,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학생 부담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한다. 생활비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sup>3)</sup>에 한해 학기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소득보장제도로 대표적인 사업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의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3)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정 범위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용자 지원 사업이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예술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해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인 예술인을 위한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사업은 최대 4,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임차 중도금 지불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만기 최대 8년까지 상환 가능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 제4절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개요

소득보장제도 DB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은 앞에서 설명한 세부급여별로 제시되었다. 단위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명으로 세부급여를 칭하였으며,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세부급여명을 부여하였다(〈표 2-9-1 참조〉). 즉 데이터베이스의 한 행(raw)은 항목별 세부급여의 내용으로 세분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각각의 세부사업 내용을 기초로 소득보장 DB의 구조에 따라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코딩 개요를 설명하고, DB 작성 시 사업별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sup>4)</sup>

4) 본 절의 세부 내용은 소득보장 DB의 작성 구조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 1. 제도의 기본정보

소득보장 DB는 먼저 제도의 기본정보로 시작한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는 각 부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명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이 하부사업으로 구분될 경우 세부급여로 제시하였다. 세부급여에 제시된 사업이 소득보장 DB의 기본 분석 단위이며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소득 DB는 세부급여에서 제시된 사업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격기준의 경우 교육 분야는 취학 전 유아, 취학 후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상황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예술인의 기준을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지원 방식은 현금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 영역의 경우 대부분이 현금지급의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육비 및 보육료로 지급되는 유아교육비 보육료의 경우 급여로, 대학생 대상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근로급여로 코딩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용자 프로그램이어서 단순용자로 코딩하였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급여 대상은 모두 개인단위이다.

## 2. 대상자 선정기준-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보장 DB 작성을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의 경우,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은 성별의 구분은 없다. 연령 기준은 사업 내용에 따라 연령의 하한과 상한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의 경우 만3세를 연령의 하한으로, 만 5세를 연령의 상한으로 코딩하였다. 교육 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사업이므로 학력 조건이 존재하는

관계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력 조건의 상한과 하한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시하였고 재학 여부도 DB에서 고려하였다. 세부급여에서 전공영역 별로 사업이 제시된 경우, 전공은 해당 사업에 맞춰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즉 사업에 따라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술체육계 등이 사업별로 지정된 경우 이에 따라 코딩하였다. 그 외 종사 산업, 사업장 규모, 종사상지위 제한, 가구 특성 등은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다만 직업 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용자사업은 대상이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 제한에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 3.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우, 대부분이 장학금 및 단순급여 지급 방식의 교육 및 문화예술사업들은 기여 조건의 유무 및 성격 항목에서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여부 항목의 경우 선정 대상의 기준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고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즉 소득분위별로 정액 지원하는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과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등학생들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 조사의 단위는 가구로 제시하였다. 소득 및 재산 관련 환산 및 기준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사용할 시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선정 시 사업별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코딩에 적용하였다. 소득 기준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다만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대학 자체 선발에서 저소득층

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과 소득 기준이 선발의 필수조건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우선 선발을 권고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 기준에 해당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예술인의 생활자금 용자 성격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므로 소득 조건이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 4. 급여액 결정 방식

급여액 결정 방식 영역은 기여 이력이나,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은 대부분이 장학금 혹은 단순급여 방식이므로 기여 이력이나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에는 차등이 없이 설계되므로 균등으로 코딩되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의 차이가 있는 소득연계 국가 장학금의 경우 차등으로 코딩하였다. 급여는 모든 사업에 정액급여로 코딩하였으며, 지급주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학기 혹은 월 단위로 코딩하였다. 다만 고졸 취업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과 예술인에 대한 대출사업인 예술인 생활자금 용자사업은 1회로 코딩하였다. 지급기한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 재학 중인 학교의 정규 학제 및 최대 수급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소득보장 DB에는 해당 사업별 내용대로 코딩하였다. 다만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득 조건 충족 시 학업 목적의 학업장려비가 계속 장학금 카드로 지급되어 최대 수급기간과 지급기한에 대해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정액 급여액은 해당 사업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소득보장 DB에 제시하였다.

## 5. 예산 및 수급자 규모

회계 구분을 위한 재원과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 예산 금액 및 결산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사업 내용에 따라 항목을 기입하였다. 교육 영역의 대부분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회계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기금 등 해당 내용으로 코딩하였다. 교육 및 문화예술 영역의 소득보장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의 지역별 차이가 없으며, 예산 및 결산 금액은 2019년 사업 시행 계획 및 각 부처 사업 설명서에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수급자 규모 또한 각 부처의 해당 사업에 대한 수급자 규모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2-9-2〉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수급자 규모

(단위: 명)

세부사업명	세부급여명	수급자 규모	출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1,227,017	교육부(2018)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1,500	기획재정부(201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5,500	교육부(2018)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965,000	교육부(2019a)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110,000	교육부(2019a), 교육부(2019b)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문100년장학금	2,400	교육부(2019a)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80	교육부(2019a)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드림장학금	108	교육부(2019a)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12,600	교육부(2018), 교육부(2019c)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9,000	교육부(2018), 한국장학재단(2019e)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600	문화체육관광부(2018)

자료: 저자 작성.

## 제5절 사업별 대상자 추정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중 교육 분야의 사업별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및 재산 관련 자격 조건이 부여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가구 단위 소득 및 재산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가구 단위 소득 및 재산의 정보가 조사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별 대상자 추정이 가능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의 규모와 가구주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어 교육 관련 세부사업별, 자격기준별 대상자 추정에 용이하다. 본 조사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의 대상자 추정이 가능한 사업들은 근로를 포함한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이다. 또한 개별 가구 가구원에 대한 연령, 교육 정도, 재학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가계금융조사를 통해 연령기준이 적용되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사업의 대상자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관련 자격기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우수한 성적이 자격기준으로 제시되는 드림장학금과 수시 및 수능 성적 우수 학생이 선발기준이 되는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정은 개별 학생의 성적이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도 개별 대학의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이 있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사업의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 정보가 없어서 대상자를 추정하기 어렵다.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의 경우 예술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관계로 3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제3부

###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제10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제11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제12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 제10장

##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 특성 분포

제1절 분야별 DB의 종합과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제2절 세부 사업의 기본적 특성 분포



# 제 10 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통해 본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 분포

## 제1절 분야별 DB의 종합과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이 장에서는 이상에서 작성된 분야별 DB를 취합하여 소득보장제도 DB<sup>1)</sup>를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DB 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특성별 분포에 대해 분석한다. 분야별 DB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전체 소득보장제도 DB는 모두 9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도의 위계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급여, 자격별 세부급여를 모두 포함한다면 458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측치는 앞의 3장에서 설명된 제도별 위계를 갖는다. 458개의 관측치 가운데 세부사업, 급여, 세부급여, 자격별 세부급여 등에 해당되는 관측치의 수는 <표 3-10-1>과 같다.

<표 3-10-1> 소득보장제도 DB의 제도 위계별 구성

(단위: 개, %)

제도 위계 구분	빈도	백분율
세부사업	99	21.6
급여	247	53.9
세부급여	66	14.4
자격별 세부급여	46	10.0
계	458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하 10장에서는 세부사업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 이하 이 장에서는 DB로 지칭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세부사업을 분석 단위로 삼는 이유는 급여와 세부급여 등 하위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세부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제도의 예산 분포와 관련된 정보가 세부사업까지만 모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분야별 DB에 포함되었던 세부사업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유아교육비지원 사업은 이 장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두 99개의 세부사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예산 합계는 약 100조 원이다. 다음 절부터는 이들 99개 세부사업의 특성별 분포를 주로 사업의 개수와 예산 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2절 세부 사업의 기본적 특성 분포

### 1. 담당 부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제도의 시행 부처이다. <표 3-10-2>는 DB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와 예산을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복지부로 세부사업 수는 23개, 예산 규모는 약 44.4조 원이다. 이는 비교 대상 99개 세부사업의 예산 총액에서 44.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음으로는 노동부(19개 세부사업, 약 19조 원), 인사처(5개 세부사업, 약 18조 원) 등의 순이다. 보훈처의 경우는, 세부사업은 20개로 많은 편이지만 전체 예산은 약 4.3조 원이다.

이 표에서 상위층을 이루고 있는 부처는 모두 사회보험제도를 담당

2) 일부 급여나 세부급여의 경우 예산 및 결산 금액 관련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관측치에 대해 예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까지였다.

하는 부처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노동부는 고용보험, 인사처는 공무원 연금,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인 연금을 담당한다. 사회보험을 담당하지 않는 부처 가운데 예산의 규모가 큰 부처는 보훈처와 국토부(약 1.7조 원)이다. 여성부, 중기부, 과기부나 기재부 등의 경우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1개이며 예산 비중도 크지 않다.

물론 이 수치는 본 DB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도출한 것이다. 사회보장 사업 가운데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 등 이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까지를 포함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표 3-10-2〉 부처별 세부사업 수 및 예산(예산 규모 순)

(단위: 개, 백만 원, %)

부처명	세부사업 수	예산(백만 원)	예산 비중(%)
복지부	23	44,401,450	44.3
노동부	19	19,069,468	19.0
인사처	5	17,958,228	17.9
교육부	8	8,557,912	8.5
보훈처	20	4,338,577	4.3
국방부	9	3,515,857	3.5
국토부	3	1,698,260	1.7
행안부	3	317,826	0.3
여성부	1	206,933	0.2
중기부	1	56,460	0.1
과기부	1	50,688	0.1
통일부	1	41,136	0.0
법무부	2	29,620	0.0
환경부	1	16,137	0.0
문체부	1	8,500	0.0
기재부	1	4,402	0.0
	99	100,271,454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지원 방식과 성격

〈표 3-10-3〉은 현금지원의 방식에 따라 세부사업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준다. 72개의 세부사업들이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 총예산은 약 93조 원에 이른다. 용자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와 지출감면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각각 15개와 4개이나 예산은 약 2.3조 원으로 비슷한 규모이다. 〈표 3-10-3〉에서 ‘복합’이라고 분류된 항목은 세부 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급여 및 세부급여)의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 3-10-3〉 지원 방식의 분포

(단위: 개, 백만 원, %)

부처명	세부사업 수	예산(백만 원)	예산 비중
현금 지급	72	93,258,576	93.0
용자	15	2,286,031	2.3
지출감면	4	2,320,738	2.3
기타	2	99,019	0.1
복합	6	2,307,090	2.3
계	99	98,293,548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0-4〉는 지원 성격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세부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개 사업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급여이다. 그 예산 규모는 84.6조 원이며 비교 대상인 세부사업 전체 예산의 약 84.3%를 차지한다.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출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은 4.5조 원 규모이다. 세부사업의 수 측면에서는 단순용자 사업이 16개로, 단순급여 다음으로 많다.



〈표 3-10-4〉 지원 성격의 분포

(단위: 개, 조 원, %)

부처명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단순급여	49	84.6	84.3
인건비	3	1.1	1.1
지출보조	9	4.5	4.5
자산형성지원	3	1.1	1.1
장학금	7	0.1	0.1
단순용자	16	2.3	2.3
이차보전	1	0.0	0.0
복합	11	6.5	6.5
계	99	100.3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급여의 대상

제도의 대상이 개인인지 가구인지 여부는 급여의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본 DB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은 개인, 가구로 구분된다. 가구 일부는 전체 가구원 가운데 일부만을 급여 대상으로 삼는 경우인데, 기초연금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전체 가구구성원 가운데 노인 또는 노인 부부만을 급여의 대상으로 삼는다. 〈표 3-10-5〉는 지원 대상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3-10-5〉 지원(급여) 대상의 분포

(단위: 개, 조 원, %)

부처명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개인	89	83.0	82.8
가구	2	5.4	5.4
가구 일부	1	11.5	11.5
복합	7	0.3	0.3
계	99	100.3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0-5〉에서 보듯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89개로 압도적으로 다수이며, 예산도 8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구 대상 급여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있는데, 그 예산은 합하여 5.4조 원이다. 한편 복합은 세부급여를 구성하는 급여나 세부급여들 가운데 개인 대상 제도와 가구 대상 제도가 섞여 있는 경우이다.

#### 4. 급여액의 결정과 지급방식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크게 기여에 따른 급여와 기여 이력과 무관한 급여로 구분된다. 기여에 따라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급여의 대표적인 예가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이다. 기여와 무관한 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기초연금 같은 제도이다. 〈표 3-10-6〉은 급여를 받기 위해 기여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기여 이력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먼저, 전체 세부사업 예산 가운데 기여 조건이 있는 제도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 조건이 있는 제도 대부분이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여 조건이 없는 제도는 당연히 기여 이력에 따른

급여의 차등도 없다. 기여 조건이 있는 25개 세부사업 가운데 기여 이력에 따라 급여액의 차등이 없는 경우도 7개가 있다.

〈표 3-10-6〉 기여 조건 여부와 기여 조건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단위: 개, 조 원, %)

	기여 조건 없음		기여 조건 있음		복합		계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균등	72	35.2	7	2.9			79	38.1
차등			15	61.7			15	61.7
복합			3	0.3	2	0.1	5	0.5
계	72	35.2	25	64.9	2	0.1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3-10-7〉은 급여액의 결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분류한 것이다. 약 80개가 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소득 또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급여액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7〉 수급자 특성별 급여 차등 여부

(단위: 개, 조 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등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세부사업 수	예산	세부사업 수	예산
균등	81	78.1	82	68.4
차등	5	15.0	11	27.0
복합	13	6.6	6	4.9
계	99	100.3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소득 또는 재산) 선정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이 급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통상 보충급여 방식이라고 한다. 반대로 선정기준선과 수급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차이와 무관하게 급여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정액급여로 분류하였다. <표 3-10-8>은 정액급여와 보충급여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3-10-8> 정액급여 및 보충급여 분포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정액급여	80	74.8
(기준선 미달액 연동) 보충급여	1	3.8
(기준선 미달액 초과) 보충급여	1	1.0
기타	9	8.2
복합	8	12.5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0-8>에서 보충급여는 기준선 미달액 연동 보충급여와 기준선 초과액 연동 보충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기준선 미달액 연동 보충급여란 기준선 미달액, 즉 선정기준선과 (수급자의) 소득(또는 재산)의 차이가 급여액 결정에 연관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기준선 초과액 연동 보충급여)란 수급자의 소득(또는 재산)이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정도가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제도가 정액급여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선정기준선이나 소득 또는 재산 금액 이외에 다른 기준(예, 장애의 정도)에

3)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며, 복합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은 그 하위 제도인 급여 가운데 정액급여와 보충급여 방식이 혼재하는 경우이다.

〈표 3-10-9〉은 각 세부사업의 급여 지급주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은 월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학기 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 관련 제도이다. 급여가 단 1회 지급되고 다시는 지급되지 않는 제도도 19개 세부사업 약 4.2조 원에 해당한다.

〈표 3-10-9〉 급여 지급주기의 분포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월	38	54.9
반기	8	5.1
연	3	1.2
부정기	9	2.2
1회 한정	19	4.2
기타	1	0.4
복합	21	32.2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급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급여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표 3-10-10〉에서 보듯이 22개의 세부사업은 최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 각종 장학금 지원 등의 제도이다.

〈표 3-10-10〉 급여 지급 한도(최대 수급기간) 유무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있음	22	13.7
없음	72	85.9
복합	5	0.7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5. 재원

제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재원의 회계 구분이다. 〈표 3-10-11〉에서 보듯이 현금지원제도 가운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의 수 측면에서는 기금 사업이 48개로 가장 많으며 예산의 규모도 64.4조 원으로 기금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회계 사업은 46개로 기금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예산 규모 면에서는 33.7조 원으로 기금사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이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연금실업크레딧 등의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금 양쪽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표 3-10-11〉 회계 구분별 분포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일반회계	46	33.7
특별회계	2	0.2
기금	48	64.4
일반회계+기금	3	2.0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들 가운데 다수는 지방정부의 대응 지출을 요구한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 즉 국고보조율이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검토 대상 99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국고보조율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18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는 세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적 규정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서울 안에 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서울의 구가 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제11장

##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제1절 개인 대상 급여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분포

제2절 소득-재산 기준의 분포

제3절 수급자의 분포 특성



# 제 11 장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의 분포

## 제1절 개인 대상 급여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건 분포

10장의 내용이 주로 제도의 공급자 측면에서 본 특성을 분석한 것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주로 수급 대상자(수요자)의 선정과 관련된 제도별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각종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지역 등)에 따른 제약을 두기도 하고 소득이나 재산 보유액에 제약을 두기도 한다. 흔히 선정기준이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특성들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할(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채택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포괄 범위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규모를 결정한다. 요컨대 선정기준 관련 특성은 제도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특성이다.

앞의 10장 2절의 내용은 급여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와 가구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것이었다. 이 절에서는 우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90개 급여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1-1〉~〈표 3-11-3〉은 각각 수급자격에 성별, 연령, 장애 관련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제도의 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수급자격에 성별 제약이 없으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표 3-11-1〉 수급자격의 성별 제한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없음	87	82.8
여성	1	0.0
혼합	1	0.1
계	89	83.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격에 연령의 하한을 두거나(예, 기초연금제도) 상한을 두는(예, 아동수당) 제도들이 있다. 상한 또는 하한이 있는 제도들을 합하여 연령 제한이 있는 제도들로 간주하였을 때, 그 세부사업의 수는 〈표 3-11-2〉에서 보듯이 모두 58개이며 예산의 합은 약 27.8조 원이다. 연령 제약이 있는 제도가 숫자 측면에서는 더 많으나 예산 규모는 더 작다.

〈표 3-11-2〉 수급자격의 연령 제한 여부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있음	58	27.8
없음	31	55.3
계	89	83.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격에 장애와 관련된 제약이 있는 없는 경우는 75개이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합계는 52.7조 원이다. 장애 관련 제약이 있더라도 장애 등급에 대한 제약을 추가로 두는 경우가 있다. 〈표 3-11-3〉에서 보듯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는 제도는 2개인데,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과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표 3-11-3〉 수급자격의 장애 관련 제약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조건 없음	75	52.7
경증 또는 중증	5	0.3
중증	2	0.8
혼합	7	29.3
계	89	86.8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 관련 제약에서 ‘혼합’으로 구분되는 세부사업은 하위급여에서 장애 관련 제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들이다. 한편 〈표 3-11-3〉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일부 급여나 세부급여의 경우 장애 관련 제약이 기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체계가 아닌 사업별로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갖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들이다. DB의 급여 또는 세부급여 차원의 제도를 분석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제2절 소득-재산 기준의 분포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적용한다. 얼마나 많은 제도와 얼마나 큰 규모의 재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그때의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선(수급자 선정기준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이 결정된다. 이 절에서는 DB에 포함된 사업들의 소득과 재산 기준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DB를 활용하여

소득이나 재산 계층별 현금급여의 배분 실태나 급여 수급 실태에 대해 직접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up>1)</sup> 대신 다양한 제도들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여부,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선의 분포를 검토함으로써 소득보장제도가 어느 계층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1-4〉는 DB에 포함된 99개 세부사업 가운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적용에 따른 급여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66개 세부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적용하지 않았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5개 세부사업이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를 적용하는 20개 세부사업 가운데 18개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4〉 소득-재산 기준 적용 유형

(단위: 개, 조 원)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적용 유형	세부사업 수	예산
없음	66	73.8
소득 조건만 있음	5	1.5
소득 및 재산 조건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18	19.1
소득 및 재산 조건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이외)	2	0.2
혼합	8	5.7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급여 대상의 분포 측면에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보다 개인 대상 세부사업이 더 많았으나 소득-재산 조사를 부가하는 세부사업 가운데에서는 〈표 3-11-5〉에서 보듯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더 많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단위가 가구 일부인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기초연금

1) DB에 사업별 잠재적 수급자의 규모 추정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가구구성원 가운데 노인 부부만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세부사업의 예산이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들에 비해 작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가구를 단위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세부사업이 본 DB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11-5〉 소득-재산 조사의 단위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해당 없음	66	73.8
개인	4	1.4
가구	20	7.7
가구 일부	3	12.3
혼합	6	5.2
계	99	100.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재산 조사는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재산 조사(means test)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조사를 통칭한다. 그런데 일부 제도에서는 소득 조건만 부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 조건만 부과할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하는지도 다를 수 있다.

한편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더라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선정 기준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정기준선을 정할 때 어떤 범주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제도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선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인정액이란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부과하며, 이때 선정기준에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범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표 3-11-6〉 소득-재산 조사의 방식과 기준선 범주

(단위: 개, 조 원)

소득-재산 조건 기준선 범주	소득 조건만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방식 이외)		혼합		계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기준중위소득	2	0.0	16	6.9	1	0.1			19	7.1
정액	3	1.5	2	12.2	1	0.0			6	13.7
기타							3	0.6	3	0.6
혼합							5	5.1	5	5.1
계	5	1.5	18	19.1	2	0.2	8	5.7	33	26.5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1-6〉의 각 열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33개 세부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소득-재산 조건을 부과하는지 구분한다. 소득 조건을 부과하고 수급 대상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세부사업이 5개이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면서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는 세부사업이 18개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예산의 규모도 19.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표 3-11-6〉의 각 행은 선정기준으로 어떤 범주를 사용하는지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 33개 세부사업 가운데 19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준중위 소득 개념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는 세부사업(예, 기초연금)이 6개로 세부사업의 수는 적지만 예산 규모로는 가장 크다.

세부사업의 수 측면에서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부과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세부사업이 소득 또는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의 절반에 이른다. 이는 소득과 재산 조사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엄밀하게 적용해 왔던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을 선정기준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부과된다. <표 3-11-7>은 그 비율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3-11-7>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세부사업의 선정기준선 분포(기준중위소득 대비 %)

(단위: 개, 십억 원,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누적 비중
30	1	3,751	53.0
40	1	21	53.3
44	2	1,707	77.5
50	8	618	86.2
52	1	207	89.1
75	2	151	91.3
100	1	14	91.5
120	1	35	92.0
복합	2	569	100.0
계	19	7,072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1-7>에 따르면 비교 대상 19개 세부사업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선을 선정기준으로 채택하는 경우로, 8개의 세부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의 30%선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이다. 이른바 차상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선 이내에 19개 세부사업 전체의 약 86%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며, 52% 선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90%의 예산이 이른바 차상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수급자의 분포 특성

수급자는 각 제도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자의 규모를 보면 각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구)를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물론 수급자의 절대적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해당 제도의 포괄성이나 효과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수급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제도의 설계상으로는 더 많은 규모의 인구(가구)가 대상자(잠재적 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중 일부만 실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DB에 잠재적 수급자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수급자의 규모는 제도의 포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하 이 절에서는 수급자의 규모가 보고된 세부사업에 한정하여 수급자 규모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3-11-8>에는 수급자의 규모를 세는 단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 대상 제도의 경우 수급자 단위는 명이고, 가구 대상 제도인 경우 수급자 단위가 가구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수급자의 계측 단위가 '건'인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에는 현실적으로 '명'과 동일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동일인에게 반복 지급이 허용됨에 따라 '건'을 계측하는 것이 타당한 세부사업도 있었을 것이다. 수급자를 '건' 단위로 계측하는 것의 의미가 분명

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건’ 단위를 별도로 간주였다.

〈표 3-11-8〉 수급 대상자 단위 분포

(단위: 개, 조 원)

	세부사업 수	예산
명	38	77.2
가구	2	5.4
건	11	5.6
혼합	2	1.1
계	53	89.4

주: 수급자의 규모가 보고된 세부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됨.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의 규모가 보고된 53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명 단위로 보고된 것이 38개로 가장 많다. 예산도 77.2조 원으로 전체의 약 86%에 이르는 수준이다. 수급자 계측 단위가 건인 세부사업 가운데 다수가 개인 대상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수급 단위를 명으로 간주해야 하는 사업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표 3-11-9〉는 수급자 규모의 계측 단위가 명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수급자 수가 많은 순으로 세부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수급자 규모가 가장 큰 세부사업은 기초연금제도로, 수급자의 규모는 약 535만 명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약 519만 명), 고용보험 구직급여(약 153만 명),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약 109만 명) 등의 순이다. 사회보험(공적연금)을 제외하면 특정 연령대에 대해 보편적 급여 성격을 띤 세부사업의 수급자 수가 많고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건이 부과되거나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9〉 세부사업별 수급자 수(개인단위, 수급자 수 순)

(단위: 명)

부처	세부사업명	수급자
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5,345,728
복지부	국민연금급여 지급	5,190,010
노동부	구직급여	1,527,189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090,388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84,117
인사처	(공무원연금)퇴직급여	532,641
노동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505,991
복지부	장애인연금	368,716
노동부	산재보험급여	320,184
교육부	교육급여	292,773
복지부	차상위계층 지원	272,567
복지부	장애수당(기초)	259,692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223,056
노동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151,060
복지부	장애수당(차상위 등)	124,102
국방부	(군인연금)퇴직급여	94,147
교육부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83,176
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82,402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80,000
보훈처	국가유공자 대부(용자)	28,901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5,50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19,778
보훈처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학습보조비 등)	18,436
복지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3,552
노동부	생활안정자금(용자)	11,481
과기부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9,000
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8,266
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	2,586
보훈처	체대군인 대부(용자)	1,743
문화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600
기재부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1,500
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62
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1,166
보훈처	장학금	601*
보훈처	5·18민주 유공자 대부(용자)	188
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용자)	99
계		17,375,000

주: \*는 5·18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학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값이다.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표 3-11-10>은 건 단위로 수급자가 보고된 세부사업들을 수급 건수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수급자 단위를 건수로 보고한 사업들의 다수는 공적연금 관련 세부사업이고, 그 가운데 다수는 용자사업이다.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긴급복지제도로, 수급 건수가 약 34만 건이며,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급여(약 24만 건)이다.

<표 3-11-10> 세부사업별 수급 건수(수급 건수 순)

(단위: 건)

부처	세부사업명	수급 건수
복지부	긴급복지	336,782
인사처	(공무원연금)재해보상급여	235,229
교육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용자)	72,048
인사처	대여학자금 용자(용자)	39,754
인사처	(공무원연금)퇴직수당	38,786
교육부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31,222
교육부	국고대여학자금 용자(사립학교연금기금)(용자)	19,505
인사처	공무원연금 대부(용자)	14,310
교육부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11,332
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용자)	9,894
계		6,873,719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급자의 규모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아쉽게도 많은 세부사업들의 수급자 규모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보다 하위 위계의 제도들로 내려가면 수급자 규모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부사업이 다양한 성격의 급여로 구성되어 세부사업의 수급자 규모의 계측 단위가 ‘혼합’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제도 분석의 기본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한정했지만 만일 수급자 정보가 제공되는 급여나 세부급여 단위로 분석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제도들의 수급자 규모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본 DB의 지속적 발전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2장

##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제2절 DB의 개선을 위한 과제





# 제 12 장 결론과 DB의 개선 과제

##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 1.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면 전체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특성별 분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DB를 작성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사업 목록에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출하였고, 사업 부서가 발행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양적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소득보장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즉 현금급여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와 제도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엄밀한 이론적 정의에 따라 DB에 포함될 제도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DB에 포함 시키되 각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DB의 사용자들이 분석 범위를 각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였다.

소득보장제도 DB는 제도를 하나의 관측 단위로 하는 데이터인 만큼 제도를 구분하는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에는 사업의 위계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을 더 세분하여 급여, 세부급여 등의 위계를 추가로 두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기준별 세부급여로 관측 단위를 세분하였다.

각 제도를 비교할 때에는 제도별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제도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설명 틀이 필요하다. 본 DB에는 주로 제도명(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등), 담당 부처, 지원 방식과 성격 등 항목이 포함되었고 또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건(성별, 연령, 학력 등), 소득 및 재산 조건(공제 및 환산 관련 정보 포함) 등 관련 변수가 포함되었다. 또한 급여의 성격과 결정 방식, 예산 및 결산 관련(회계 구분, 예결산 금액 등) 정보, 수급자의 규모 등 항목이 포함되었다.

## 2. 분야별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제도에는 은퇴한 개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과 근로연령층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각종 공적연금 관련 제도들이 포함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3대 특수지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각 연금 관련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업과 용자사업이 포함되었다. 공적연금과는 별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었다.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업이나 노인단체나 노인보호시설 지원 사업 등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DB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는 모두 18개 사업이다.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DB에는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총 37개의 현금지원 제도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개별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액 결정 방식, 예산 및 수급자 규모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시했다.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는 크게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현금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국세청이 담당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장애·보훈 분야 DB는 주로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장애 분야에 포함되는 사업은 고용복지 지원, 산업재해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훈 분야는 국가유공자 지원, 제대군인 지원, 장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2개 분야, 6개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장애·보훈 분야 사업은 정부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72개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31개 세부사업은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1개 세부사업이 소득보장 DB에 포함되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는 자활사업과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포함

하였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다. 우선 급여 형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현금 급여’로 코딩하였지만,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긴급복지 지원 제도/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현물급여’로 코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이다. 즉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사업, 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 해산·장제급여처럼 직접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타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교육 분야 소득보장제도들은 대부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 사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연령에 따라 학령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사업, 고등학생 대상 취업연계 장려금, 대학생 대상 대표적인 소득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과 기획재정부의 중·고등학생 대상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제도로는 예술인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3. 소득보장제도 DB 종합 분석

분야별 DB를 합하여 종합 DB를 구축한 결과 458개의 관측치를 포함

하는 데이터셋이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99개의 세부사업(총예산 약 100조 원)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세부사업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23개 세부사업, 예산 약 44.4조 원)이고 지원 방식 면에서는 현금 지급, 지원 성격 면에서는 단순급여가 세부사업 수나 예산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89개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보험 관련 제도에서 기여 조건이 있는 사업은 수적으로는 기여 조건이 없는 사업에 비해 소수이지만 예산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이 사업 수와 예산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 관련 특성은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DB에 포함된 제도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87개의 세부사업이 성별에 따른 수급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58개 세부사업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75개 세부사업이 장애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부과하고 있는 사업은 20개였는데, 그 가운데 18개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 가운데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하면서 기준중위소득 범주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범주를 활용하는 사업 예산의 약 90%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선정기준선을 두고 있는 세부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2절 DB의 개선을 위한 과제

### 1. 제도 목록의 확장을 위한 과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DB에 가능한 한 많은 제도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절에서는 본 DB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DB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한계는 포괄하는 제도의 범위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사업 가운데 (현물이 아닌) 현금을 (시설이 아닌)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제외된 사업들이 다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포함되었으나 사회보험료 감면 사업들은 제외되었다. 현물지원과 현금 지원의 구분이 모호한 사업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DB의 대상을 현물지원까지 포함하여 확장하는 단계에서 DB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지원 사업 가운데 조세지출사업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제외하고는 본 DB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세지출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제도 목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던 「예산편성현황」에서부터 조세지출 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사업 역시 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형식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DB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조세지출사업 목록이 예산사업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제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DB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범위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이론적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나감으로써,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DB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DB의 관측치(records)와 관련하여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제도의 위계가 갖는 의미가 모든 세부사업들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DB에서 세부사업명까지는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명칭을 그대로 이용했지만, 급여명과 세부급여명은 DB의 작성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부여한 것이다. 세부사업을 어떤 급여로 나누는 기준, 급여를 세부급여로 나누는 기준이 모든 세부사업에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부사업을 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위 제도를 급여로 구분하다 보니 급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격기준, 급여액, 급여의 유형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제도의 위계별로 다양한 의미를 띠 수 있다는 점은 해석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업 및 농가 지원 분야의 사업은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과 사업체 또는 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적지 않은 수의 세부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소요 예산의 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각 제도가 가구나 개인 대상 지원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다른 현금지원 소득보장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 및 농가지원 분야의 사업은 DB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사업 특성에 대한 주요 설명만 본 연구의 〈부록〉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향후 이 분야의 제도들에 대해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것을 유형화 및 (타 분야 소득보장제도들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된다면 DB의 목록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의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제도의 특성을 계량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한다. 비교 분석에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복잡한 제도 내용을 수량화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측치의 제도적 위계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이 방법이 모든 정보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다. 제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가운데 본 DB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서 DB를 보완하는 것은 이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본 DB에 포함된 제도별 특성 항목과 각 항목의 선택지들은 현재의 DB를 전제로 구상된 것이다. 이 역시 DB를 이용한 분석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DB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더욱 다양한 성격의 제도들이 DB에 포함된다면 항목이 추가되거나 항목별 구분 값이 달리 설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DB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DB의 시계열을 연장하고 제도의 목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작성된 2019년 기준 DB의 일부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B의 항목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항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항목은 잠재적 수급자의 규모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잠재적 수급자는 제도의 선정기준(인구학적 특성,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말한다. 만일 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실제 보고된 수급자의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급률(take up ratio)이라는 주요한 특성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수급자 규모 그 자체로도 각 제도가 얼마나 큰 포괄성을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적 수급자를 추정하여 DB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DB의 항목에 잠재적 수급자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규모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수급자격을 위한 복잡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조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미시 조사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와 같은 가구 및 개인 단위의 미시 조사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개인) 특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제도들이 부과하는 다양한 수급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잠재적 수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추정치에 대한 오차의 범위가 제도별로 상이하게 되고 따라서 이 추정치를 합산하는 등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오차의 크기를 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치의 오차를 고려하여 본 DB에서는 잠재적 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항목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DB에 포함시킬지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DB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핵심은 DB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본 DB에 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될 경우 사용상의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DB가 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망라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데이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만일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들이 본 DB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면 DB의 유용성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간 연계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본 DB의 어느 관측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제도 목록의 작성 방식과 관련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계획된 연구의 1년 차 연구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DB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제도 목록과 특성 변수 목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 제1장 서론

-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강신욱. (2017).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정책, 24(1), 213-237.
- 강신욱, 노대명, 이현주, 정해식, 김계환, 김근혜, 조한나. (2017a).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임완섭, 정해식, 강병구, 박찬임, 이진범, 박형준, 이병재. (2017b). 사회보장제도 생계지원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이원진, 노대명, 이지혜, 백승호, 서정희, 양재진, 오건호, 최한수, 홍경준, 금민. (2021).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손병돈. (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회, 25(4), 35-52.
- 권혁창. (2021).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지역별 비교. 사회복지정책, 48(1), 39-62.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박종철출판사.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권 3호, 289-315.
- 김낙희, 변양호, 이석준, 임종룡, 최상목. (2021). 경제정책어젠다 2022: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21세기북스.
- 김상호. (2021).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41-64.
- 노대명, 김현경, 정해식, 이원진, 길현중, 오상봉, 권혁진. (2020).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의 방안 연구: 제도 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57-77.
- 손병돈. (2012).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7-28.
- 여유진. (2009).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5(1), 45-68.
- 열린재정 재정정보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윤상용. (2013).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 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2), 159-188.
- 이용재, 김용미. (2018).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2), 77-86.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 홍경준. (2011).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 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65-88.

##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Alcock, P., T. Haux, M. May & Wright S. eds. (2016a). Income Maintenance and Social Security.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5th edition(pp. 337-343). West Sussex: Wiley Blackwell.
- OECD.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 OECD. (2020). *The OECD tax-benefit simulation model: Methodology, user guide and policy applications*.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Overview*. <https://www.ssa.gov/ssi/text-over-ussi.htm>에서 2022. 12. 20. 인출.
- U. 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0).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0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 제3장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구성

- Nelson, K.(2010a). *Documentation SA/MIP: The Social Assistance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terim Data-Set*.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2011/02/SaMIP-beta-documentation.pdf> 에서 2021. 9. 28. 인출.
- Nelson, K. (2010b). *Variable and Code Book SA/MIP: The Social Assistance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terim Data-Set*.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06-91. <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2011/02/SaMip-beta-codes.pdf> 에서 2021. 9. 28. 인출.
- Schechtl, M.(2020). Family Tax Benefit Database. OSF. doi: 10.17605/OSF.IO/8PE7B. <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files/resources-other-FTBD-doc.pdf>에서 2021. 9. 28. 인출.

## 제2부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

### 제4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공무원연금공단. (2019). 2019년 공무원연금 실무.

- 공무원연금공단. (2020). 2019년 공무원연금통계. <https://www.data.go.kr/data/15054010/fileData.do#tab-layer-recommend-data>.
- 국민연금공단. (2020). 2019년 제32호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2020). 201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19).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2020).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에서 2022. 12. 5. 인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 2019 사학연금통계연보.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 제5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 e-나라지표. (2022).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https://www.index.go.kr>에서 2022. 11. 22. 인출.
- 고용노동부. (2019a).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 고용노동부. (2019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
- 고용노동부. (2019c).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2호, 2019년 10.1일 고시.
- 고용노동부. (2020. 1. 23.). 2019년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221227440a028ab9abc94da9a25674530f64e8d4.hwp&rs=/viewer/ENEWS/2020/>.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rList.do>에서

2022. 11. 23. 인출.
- 기획재정부. (2019).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법무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법무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https://www.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a).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2b). 긴급구조. <https://easylaw.go.kr>에서 2022. 7. 6. 인출.
- 보건복지부. (2019a).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b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a
-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3권.
- 보건복지부. (2019e). 2019년 아동사업안내 1권 아동발달계좌.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3권 자립수당.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여성가족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여성가족부. (2022). 주요통계. [http://www.mogef.go.kr/io/stt/io\\_stt\\_s003.do](http://www.mogef.go.kr/io/stt/io_stt_s003.do)에서 2022. 11. 22. 인출.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go.kr](http://www.openfiscaldat.go.kr)에서 2021. 9. 28. 인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일부.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2021). 2021년도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 제6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 고용노동부. (2019a).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19b).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고용노동부. (2019.1.), 2019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2019.2.), 고용보험 안내.
- 고용노동부. (2019.03.19.).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06](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06)에서 2022. 5. 12. 인출
- 고용노동부. (2019.7.).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에서 2022. 11. 5. 인출
- 국세청. (2019a).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2019b),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에서 2022. 9. 10. 인출.
- 근로복지공단. (2022a). 근로자 생활안정사업 안내.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에서 2022.6.26.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2022-20,20220222\)](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2022-20,20220222))에서 2022. 11.5.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d).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2018-44,20180531\)](https://www.law.go.kr/행정규칙/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2018-44,20180531))에서 2022.11.5. 인출.
-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9).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행정안전부. (2020).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제7장 장애보훈 분야

- 국가보훈처. (2019a).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대부지원.
- 국가보훈처. (2019b). 2019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국가보훈처. (2019c). 201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국가보훈처. (2019d). 2019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 국가보훈처. (2019e). 2019년 보훈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 국가보훈처. (2020). 2019년 12월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
- 근로복지공단. (2020). 2019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근로복지공단. (202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안내.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90010010>에서 2022년 10월 29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2020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20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 제8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 관계부처 합동. (2017). 2017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국민안전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2020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행정안전부.
- 교육부. (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 세종: 교육부.
- 국토교통부. (2019a).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9b).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세종: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 자활사업안내(I).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e). 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f). 2019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종합 안내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제9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2017).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사업. 교육부.
- 교육부. (2018).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 교육부. (2019a). '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19b). 2019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19c).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 교육부. (2020).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KDI 공공투자관리 센터.
- 한국장학재단. (2019a). 2019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2019b).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안).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2019c). 2019년도 인문100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2019d). 2019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2019e). 2019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 한국장학재단.

## 부록 2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부록 3 농업·농촌 분야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 9. 28. 인출.
-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2. 9. 28. 인출





## 부록 1. DB의 항목 구성과 항목별 값의 구분

### 1. 제도 기본정보

변수설명	범주
1-1. 제도 ID	부처 2자리+기존 사업 구분번호 5자리+예비 2자리+급여 2자리+세부급여 2자리+자격기준 구분번호 2자리=총 15자리
1-2. 사업 구분번호	'열린재정(2019)'의 사업 구분번호
1-3. 프로그램명	'열린재정(2019)'의 프로그램명
1-4. 단위사업명	'열린재정(2019)'의 단위사업명
1-5. 세부사업명	'열린재정(2019)'의 세부사업명
1-6. 급여명	사업 내 급여명
1-7. 세부급여명	
1-8. 급여 구분번호	동일 세부사업 내 급여 번호
1-9. 세부급여 구분번호	동일 급여 내 세부급여 번호
1-10. 자격기준 구분번호	동일 세부급여 내 자격기준 번호
1-11. 담당부처	중앙부처 차원
1-12. 현금/현물	①현금, ②현물
1-13. 지원 방식	①현금지급, ②용자, ③감면, ④기타
1-14. 지원 성격	①단순급여, ②인건비, ③지출보조(실비지원 포함), ④자산형성지원, ⑤장학금, ⑥단순용자, ⑦이차보전, ⑧기타
1-15. 급여 대상	① 개인 ②가구 ③가구 일부 ④기타(예, 시설입소 개인)

## 2. 대상자 선정기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설명	범주
2-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2. 연령_하한(~세 이상)	만 나이
2-3. 연령_상한(~세 이하)	만 나이
2-4. 장애 유무	①없음, ①경증 또는 중증, ②경증, ③중증, ④기타
2-5. 학력 조건 (하한, ~이상)/학교급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전문대(3년제 이하), ⑦대학교, ⑧대학원 이상, ⑨기타
2-6. 학력 조건 (하한, ~이상)/졸업 여부	①재학(휴학 제외), ②재학(휴학 포함), ③중퇴, ④졸업
2-7. 학력 조건 (상한, ~이하)/학교급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전문대(3년제 이하), ⑦대학교, ⑧대학원 이상, ⑨기타
2-8. 학력 조건 (상한, ~이하)/졸업 여부	①재학(휴학 제외), ②재학(휴학 포함), ③중퇴, ④졸업
2-9. 전공	①인문사회계, ②이공계, ③예술체육계, ④기타
2-10. 종사 산업	①농림어업, ②제조업, ③서비스업, ④기타
2-11. 사업장 규모 제한 (하한, ~인 이상)	규모 숫자 기입
2-12. 사업장 규모 제한 (상한, ~인 이하)	규모 숫자 기입
2-13. 직업 제한	①없음, ①있음
2-14. 종사상지위 제한	①없음, ①있음
2-15. 종사상지위 제한 내용	①임금근로자(전체), ②임금근로자(정규직), ③임금근로자 (비정규직), ④자영자(특고 포함), ⑤미취업자(비경활 + 실 업자), ⑥실업자, ⑦비경활, ⑧임금근로자(전체)+자영자(특 고 포함), ⑨임금근로자(비정규직)+자영자(특고 포함), ⑩임 금근로자(비정규직)+자영자(특고 포함)+실업자, ⑪자영자 (특고 포함)+실업자, ⑫기타
2-16. 질병 보유 제한	①없음, ①있음
2-17. 기타 개인 특성 제약 유무	①없음, ①있음
2-18. 가구 특성 제약 유무	①없음, ①있음

## 3.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

변수설명	범주
3-1. 기여 조건 유무	㉞없음, ①있음
3-2. 기여 조건 성격	①사회보험 관련, ②사회보험 이외
3-3. 소득 및 재산 조건 여부	㉞없음, ①소득 조건만 있음, ②재산 조건만 있음, ③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이외)
3-4. 소득 조사(파악) 단위	①개인, ②가구, ③가구 일부
<3-5. 소득원천별 합산 여부>	
3-5-1. 근로소득	①합산, ②제외
3-5-2. 사업소득	①합산, ②제외
3-5-3. 재산소득	①합산, ②제외
3-5-4. 사적이전소득	①합산, ②제외
3-5-5. 공적이전소득	①합산, ②제외
3-5-6. 기타소득	①합산, ②제외
3-6. 소득공제 여부	①소득공제 있음, ②소득공제 없음
3-7. 소득 선정기준 범주	①기준중위소득, ②정액, ③기타
3-8. 소득 선정기준 범주의 ~%	숫자 기입(예, 30%) 정액은 금액 표기(월 기준, 단위는 천 원)
3-9. 이하/미만/이상/초과	①이하, ②미만, ③이상, ④초과
3-10. 소득 조사 추가조건 유무	㉞없음, ①있음
3-11. 재산 조사 단위	①개인, ②가구, ③가구 일부
<3-12. 재산(유형별) 합산 항목>	
3-12-1. 주거용 재산	①합산, ②제외
3-12-2. 일반재산	①합산, ②제외
3-12-3. 금융재산	①합산, ②제외
3-12-4. 자동차	①합산, ②제외
3-13. 부채공제 방식	①공제 안 함, ②일부 공제, ③전부 공제, ④기타
<3-14. 재산 유형별 공제 대상 여부>	
3-14-1. 주거용 재산	①공제 대상, ②공제 대상 아님
3-14-2. 일반재산	①공제 대상, ②공제 대상 아님
3-14-3. 금융재산	①공제 대상, ②공제 대상 아님
3-14-4. 자동차	①공제 대상, ②공제 대상 아님
<3-15. 재산(유형별) 환산 적용 여부>	

변수설명	범주
3-15-1. 주거용 재산	①적용, ②미적용
3-15-2. 일반재산	①적용, ②미적용
3-15-3. 금융재산	①적용, ②미적용
3-15-4. 자동차	①적용, ②미적용
3-16. 환산율 적용 기간	①월, ②년, ③기타
<3-17. 재산 유형별 환산율(%)>	
3-17-1. 주거용 재산	숫자로 기입
3-17-2. 일반재산	숫자로 기입
3-17-3. 금융재산	숫자로 기입
3-17-4. 자동차	숫자로 기입
3-18. 재산 선정기준 범주	①기준중위소득, ②정액, ③기타
3-19. 재산 선정기준 범주의 ~%	숫자 기입, 정액은 금액 표기(단위는 백만 원)
3-20. 이하/미만/이상/초과	①이하, ②미만, ③이상, ④초과
3-21. 재산 조사 추가 조건 유무	⑥없음, ①있음
3-22. 기타 조건 유무	⑥없음, ①있음

#### 4. 급여액 결정 방식

변수설명	범주
4-1. 기여 이력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4-2. 인구사회적 특성(성, 연령)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4-3.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4-4. 정액/보충 급여	①정액급여, ②(기준선미달액 연동) 보충급여, ③(기준선초과액 연동) 보충급여, ④기타
4-5. 지급주기	①월, ②분기, ③반기, ④연, ⑤1년 초과, ⑥부정기 (반복 수급 가능), ⑦1회 한정, ⑧기타
4-6. 지급기한 유무(최대 수급기간 유무)	①있음, ②없음
4-7. 지급기한	숫자로 기입
4-8. 지급기한 단위 * 분기, 반기 등은 개월로 입력	①연, ②개월, ③일, ④회
4-9. 정액급여액 (정액급여의 경우에만 표기)	숫자로 기입(단위: 천 원), 지급주기는 4-5와 연동



## 5. 예산

변수설명	범주
5-1. 재원(회계구분)	①일반회계, ②특별회계, ③기금, ④일반+특별회계, ⑤일반회계+기금, ⑥기타
5-2. 국고보조율의 지역별(서울/지방) 차이 여부	①지역별 차이 있음. ②지역별 차이 없음
5-3. 서울 국고보조율 최저치(%)	숫자로 표기(단위: %)
5-4. 서울 국고보조율 최고치(%)	숫자로 표기(단위: %)
5-5. 지방 국고보조율 최저치(%)	숫자로 표기(단위: %),
5-6. 지방 국고보조율 최고치(%)	숫자로 표기(단위: %)
5-7. 예산 금액(백만 원)	숫자로 표기(단위: 백만 원)
5-8. 결산 금액(백만 원)	숫자로 표기(단위: 백만 원)

## 6. 수급자

변수설명	범주
6-1. 수급자 규모	숫자로 표기
6-2. 수급자 규모 단위	①명, ②가구, ③건, ④ha, ⑤좌

## 부록 2.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부표 2-1〉 가족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 이외의 제도 목록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방식
인권활동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시설지원
	법률구조	법률구조	서비스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터	서비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운영비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취약지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기반 조성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운영비
보육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아동자립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서비스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지원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현물
여성·아동 인권보호 및 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서비스
	가족서비스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방식
여성·아동 인권보호 및 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역량강 화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청소년정책 및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 건강지원	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훈련	운영비
이북5도	이북도민 관련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기관 및 인력에게 운영비/인건비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부록 3. 농업·농촌 분야

#### 제1절 사업 범위

농업농촌 분야의 사업은 농업인(농가)에 대한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이 포함되고,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농업인(농가)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 농업농촌 분야 소득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농업인(농가) 지원 사업 중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농업농촌 분야의 소득지원 사업은 크게 직불사업, 정책금융(융자, 이차보전) 사업, 감면·할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표 3-1〉 농업농촌 분야 소득지원 사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고
저축 장려	저축장려	저축장려금	이차보전
농가경영 안정	재해대책	재해대책비	
	재해대책	재해대책비(융자)	융자
	농가소득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직불 (현금)
	농가소득보전(직불)	발농업직불제	
	농가소득보전(직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자체)	
	농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농가소득보전(직불 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경영회생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융자)	융자
	농업정책보험 (농촌계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감면/할인
농업 신산업 육성	농가소득보전 (직불, 친환경) (농촌계정)	친환경농업직불	직불 (현금)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고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농촌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현금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기금)	맞춤형 농지 지원(용자)	용자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농가소득보전 (직불, 지역경관)	경관보전직불	직불 (현금)
	농촌복지 증진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가소득 안정(복지) (농지기금)	농지연금(용자)	용자
	농가소득 안정(복지)(농특)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감면/할인

주: 디브레인(열린재정) 자료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 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 직접지불사업(직불제),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차보전 등), 정책보험 지원 사업, 농지연금, 창업 지원, 후계 농업인 장학금 지원 사업, 저축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 사업,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 우대 저축 사업 등은 소득지원과 연계가 높다. 이 중 정책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농가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지원 성격이 있지만, 사전에 감면 및 할인이 되고,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득지원이라기보다는 농업 경영비와 연계성이 높고 현금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정책보험료 지원 중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일종의 산재보험) 지원은 영농활동보다는 인적 지원에 해당하여 포함하였다.

## 제2절 농업·농촌 분야 지원 사업 특징

### 1. 산업지원 특성을 고려한 사업 대상 구분

일반적으로 소득지원 사업은 장애 유무, 소득계층에 따른 취약계층, 가족, 아동 등 특정 그룹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 농촌 분야 소득지원 사업은 농업이라는 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때 연령, 소득/재산 조건 등 타 분야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교육, 성별, 연령 등 대상을 구분하는 조건이 농업에서는 적용되는 기준이 전혀 아니어서, 소득/재산 기준이 아닌 영농 규모로 보조지원 대상을 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현금지급 사업인 직불금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이 직불금 지급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면적 베이스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쌀고정 직불금 단가: 100만 원/ha) 규모가 큰, 소득 및 재산이 많은 농가가 오히려 보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 이는 직불금 제도의 성격이 단순히 농가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직불제도의 지급 대상은, 세부 급여로 보면 소득 기준 이라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급여 금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 사업 대상 품목 유형의 다양성

산업 지원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종, 축산을 구분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세부적으로도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어야 하는 특성상 세부

품목별로 사업을 구분하기도 한다. 즉, 영농활동에 있어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별도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다양한 품목의 다양한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배경에서, 일관되게 소득 혹은 수입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

소득지원 사업 성격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장려금(금융위원회) 사업의 경우에도 농어민이 일정 기간(3년, 5년) 저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 농어민 대상과 저소득 농어민 대상으로 차등하여 이율을 가산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다. 일반 농어민은 농민인 경우 1ha 초과~2ha 이하 농지 소유자, 어민의 경우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양축의 경우 젖소 20마리 등 축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 가축 소유자를 뜻한다.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농민은 1ha 이하 농지 소유 혹은 임차 경작자, 어민은 5톤 이하 어선 소유자, 양축은 일반 농어민 기준 1/2 규모의 가축 소유자를 뜻한다.

따라서 영농 규모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 단가에 연동되기도 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 달성 정도에 따라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소득세 체계에서 작물재배업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영농 규모로 설정한 사유가 있고, 실제 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을 치환하는 데에는 또 다른 부가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농지 면적, 양축 규모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 3. 세부사업 목적의 이질성

소득지원 사업 DB의 대부분류는 노후소득, 가족 및 아동, 기초생활보장 등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되었지만, 농업·농촌 분야는 그 산업의 이질성으로 인해 산업 및 공간(농업·농촌)을 기준으로 보통 분류되고 분야 내에서 다시 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급여의 목적이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대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소득 지원의 목적상으로는 이질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장학금 사업의 경우 장애·보훈 분야의 국가유공자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자녀 및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인 자녀에 대한 대학, 고교장학금뿐만 아니라 농업 후계인력의 농고 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어 소득지원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정책보험 지원의 경우에도 보험료 감면 사업은 소득지원 성격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이 소득지원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가 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농가의 농업활동 지속 가능성, 즉, 산업 기반 유지 성격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급여로 갈수록 목적의 이질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제3절 농업·농촌 분야 DB 사업 구성

위와 같은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지원 DB 구축 시 농업농촌 분야는 대상 기준을 분류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소득 DB와 연관이 있는 사업의 종류, 예산, 세부사항, 사업개요가 작성되었다.

〈부표 3-2〉 농림업 분야 DB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세부사항
금융 위원회	저축장려	저축장려금	70,814	
	재해대책	재해대책비	66,634	
농림 축산 식품부	재해대책	재해대책비(용자)	180	
	농가소득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40,716	
	농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제	207,790	밭 고정
	농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제		논 이모작
	농가소득보전(직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자체)	805,770	
	농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51,647	농지
	농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초지
	농가소득보전(직불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0	
	경영회생 지원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용자)	293,299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	71,202	
	농가소득보전(직불, 친환경)(농촌계정)	친환경농업직불	35,475	유기
	농가소득보전(직불, 친환경)(농촌계정)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
	농가소득보전(직불, 친환경)(농촌계정)	친환경농업직불		유기 지속
	농촌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0,306	
	맞춤형 농지 지원 (농지기금)	맞춤형 농지 지원 (용자)	449,112	
	농가소득보전(직불, 지역경관)	경관보전직불	8,193	경관
	농가소득보전(직불, 지역경관)	경관보전직불		준경관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세부사항
	농촌복지 증진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3,995	대학 장학금
	농촌복지 증진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고교 장학금
	농촌복지 증진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기타 장학사업
	농가소득 안정(복지)(농지기금)	농지연금(용자)	153,796	
	농가소득안정(복지)(농특)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53,525	
산림청	입업정책자금 지원(농특)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용자금)	15,132	
	입업정책자금 지원(농특)	산림사업 종합자금(용자금)	42,640	
	입업정책자금 지원(농특)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6,374	
	입업정책자금 지원(농특)	입업인 경영자금 지원	5,768	
	입업정책자금 지원(농특)	입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3,010	

주: 예산은 2019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  
 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농업·농촌 분야 사업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금액 기준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은 저축장려금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불금 사업과 유사하게 대부분 지급 상한액은 두고 있다.

조건을 적용하는 단위는 주로 가구(농가) 단위이고, 개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은 마찬가지로 저축장려금, 장학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재해 대책 용자사업 등 용자사업들이 포함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직계존속의 재산 여부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직불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 단위로 지급하지만,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월 단위 지급이다.

## 제4절 농업·농촌 분야 지원 사업

### 1. 재해대책비

재해대책비 정책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농업 시설물, 수리시설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및 가축, 수리시설 등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재해 복구 및 재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부표 3-3〉 재해대책비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재난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해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			
사업기간	• 1967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38,455	123,385	76,859
사업규모	• 해당 사항 없음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형태	• 보조 및 용자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대책비</li> <li>- (보조) 국비 24.5~70%(농업시설 24.5%, 대파대 35%, 농약대 70%)</li> <li>- (지자체) 국가관리: 국비 100%, 지방관리: 국비 50, 지방비 50,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국비 70, 지방비 30</li> </ul>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추진체계 (절차)	피해발생 신고(농가)시군 → 피해조사(지자체) → 지역별 복구지원 계획 수립·보고(지자체)농식품부 → 복구지원 계획 심의확정(농식품부) → 복구비 지원(농식품부)지자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재해대책비(용자)

재해대책비(용자) 정책은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부표 3-4〉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와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표 3-4〉 재해대책비(용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재난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해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			
사업기간	• 1967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13,500	3,656	6,187
사업규모	• 해당 사항 없음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형태	• 보조 및 용자			
지원조건	• 재해대책비(용자) : 30~70% (금리 1.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추진체계 (절차)	피해발생신고(농가)시군 → 피해조사(지자체) → 지역별 복구지원 계획 수립·보고(지자체)농식품부 → 복구지원 계획 심의·확정(농식품부) → 복구비 지원(농식품부)지자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3. 경영이양직불

경영이양직불 정책은 영농경력 10년 이상의 65~74세 농업인이 경영 이양 전 3년 이상 소유한 경지를 전업·후계농 등에게 매도, 임대하는 경우 경영이양 면적(ha), 지급단가, 지급기간(연)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을 지원 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부표 3-5〉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고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표 3-5〉 경영이양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경영이양 고령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등의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2~10년간 연간 매도 330만 원/ha, 임대 250만 원/ha			
사업기간	• 1997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54,517	49,662	47,179
사업규모	• 17천ha			
지원대상	• 농업인(65~74세)			
지원형태	• 민간 경상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현지조사 및 심사→대상자 선정→약정체결→직불금 지급→수령자 명단 공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4. 발농업직불제

발농업직불제 정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 당해 연도 발농업보조금 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6〉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소득 발생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여 생산율을 높이고, 지원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업 분야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발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표 3-6〉 발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 및 발 작물의 자급률 제고			
사업내용	• 발 고정 평균 55만 원/ha, 논 이모작 50만 원/ha			
사업기간	• 2012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184,963	192,793	207,790
사업규모	• 발 고정 294천ha, 논 이모작 92천ha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직불금 지급→수령자 명단 공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5.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정책은 지급 조건에 맞춰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값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부표 3-7〉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쌀값 하락에서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다.

〈부표 3-7〉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사업내용	• 평균 100만 원/ha 지급			
사업기간	• 2001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832,000	818,742	805,770
사업규모	• 803천ha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서류·현지조사 및 등록→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직불금 지급→사후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 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6. 조건불리지역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정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 대상 토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단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8〉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농업종사자의 이탈을 예방하고 농가를 유지 및 활성화하는 것이다.

〈부표 3-8〉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농지 65만 원/ha, 초지 40만 원/ha 지급			
사업기간	• 2004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43,103	44,481	51,647
사업규모	• 농지 103천ha, 초지 2.8천ha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직불금 지급→수령자 명단 공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7.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보험료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의 총보험료 중 5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9〉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부담을 최소화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표 3-9〉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사업기간	• 1996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0	0	71,202
사업규모	• 농업인안전보험 800천 명			
지원대상	• 만 15~87세(일부 상품 84세)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형태	• 민간 보조			
지원조건	• 일반 농가 국고 50%, 영세 농가 국고 70%			
시행주체	• 농협생명			
사업추진체계 (절차)	• 농업인 ⇄ 보험사업자(지자체) ⇄ 농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8.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증 구분 및 작목별 지원 금액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0〉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부표 3-10〉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및 농지에 인증단계·품목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 1999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0	0	38,110
사업규모	• 농가 36,000호, 면적 36,000ha(2019년 신청 기준)			
지원대상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농업인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체계 (절차)	•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 이행점검 실시 → 예산 교부 요청 → 예산 교부 →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9.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정책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에게 정착지원금 외에 창업자금 및 농지지원,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1〉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지원을 강화하여 급격한 농가 고령화와 청년 농가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촌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부표 3-1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인력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내용	• 청년 창업농이 영농 초기 영농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			
사업기간	• 2018~(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0	0	21,372
사업규모	• 청년 창업농 3,200명			
지원대상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창업농			
지원형태	• 민간 경상 보조, 자치단체 경상 보조			
지원조건	• 국비 50~100%, 지방비 30~5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시군구 서면심사→시도 면접심사→최종 선발→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https://uni.agrix.go.kr/docs7/cu_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0. 경관보전직불

경관보전직불 정책은 경관 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관리하는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동 또는 리 단위로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 단위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 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초화류인 18종의 경관작물과 8종의 준경관작물 등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부표 3-12〉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방문객 증가로 인한 판매 소득 증가, 농촌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부표 3-12〉 경관보전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 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시장·군수와 마을경관 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 등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 보전활동 지원			
사업기간	• 2005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0	0	8,356
사업규모	• 2019년 기준 11,462ha, 583지구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 시장·군수			

구분	내용			
사업추진 체계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 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 (수요 조사)	4월	추진 위원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 사업 신청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
	↓			
	사업 수요 제출	5~6월	시·도, 시·군, 읍·면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 면적 배정	7월	농림 축산 식품부	· 신청 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 대상 지구 신청	8월	시·도, 시·군	· 사업 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추진위)
	↓			
	협약 체결	9~10월	시·군, 추진위 원회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 이상 공고(시·군)
↓				
사업 대상 신청 결과 제출	11월	시·도, 시·군	· 시·군별 사업 대상 선정(협약체결) 결과 및 면적배정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예산 배정	12월	농림축 산 식품부	· 시·도별 대상 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이행 점검	(차년도) 개화기 (4~5월 · 9~10 월)	국립농 산물품 질관리 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	
↓				
보조 금 지급	(차년도) 6월, 11 월	시·도, 시·군	·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 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3〉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많은 농어업인들이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도록 도와 농업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표 3-1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사업내용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사업기간	• 건강 2004년~계속, 연금 1995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	-	353,525
사업규모	• 건강보험료 325천 세대, 연금보험료 380천 명			
지원대상	•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지원형태	• 민간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업추진체계 (절차)	• 농어업인 ⇄ 각 공단(지사) ⇄ 농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2.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정책은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농식품 후계인력 인재 양성을 위해 농식품 계열 학과 1~2학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농 후계 장학금’,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우수한 농업 후계인력 유치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 계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고교장학금’을 농업인, 농업인 자녀, 농식품 계열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4〉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농업인 자녀와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식품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부표 3-14〉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li> <li>•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양성</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계속</li> </ul>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 원)	13,700	13,090	13,995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47명, 12,229백만 원 지원</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농업인 자녀 및 농업계열 대학생, (고교) 농업계열 재학생 및 농촌 학교 문화체육 분야 우수 학생</li> </ul>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보조</li> </ul>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100%</li> </ul>			
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희망재단</li> </ul>			
사업추진체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3.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정책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에 따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부표 3-15〉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부표 3-15〉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쌀의 공급 과잉 기조 및 시장 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 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생산 농업인에게 변동직불금 지급			
사업기간	• 2005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1,490,000	1,080,000	253,300
사업규모	• 656천ha(2019년 예산기준)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형태	• 국고 보조			
지원조건	• 국고 100%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체계 (절차)	사업 신청→서류·현지조사 및 등록→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직불금 지급 →사후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 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4.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정책은 고령 은퇴 농업인,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 농지 등을 매입하고, 경영규모 및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젊은 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6〉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매입한 농지를 청년층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표 3-16〉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영농 규모가 적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li> <li>* 20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으로 통합</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은행이 고령·은퇴·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차 후 2030세대,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맞춤형지원체계에 따라 농지 매도·임대 지원(내역으로 농지매매·장기임대·공공임대 등이 있음)</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계속</li> <li>* 2018년 농지규모화(1990~2017), 농지매입비축(2010~2017) 사업을 통합,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개편</li> </ul>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li> <li>* (맞춤형 농지지원) 93,797억 원</li> <li>* (前 농지매입비축) 18,015억 원, (前 농지규모화) 75,782억 원</li> </ul>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 원)	0	0	450,628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까지 187,057ha</li> <li>* (前 농지매입비축) 7,181ha, (前 농지규모화) 179,876ha</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농업법인</li> </ul>			

구분	내용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100%</li> </ul>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농지지원 내역사업별 지원조건</li> <li>*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 매입비(농어촌공사에서 매각시 상환)</li> <li>* 농지매매용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li> <li>* 임차·임대용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li> <li>*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li> </ul>
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어촌공사</li> </ul>
사업추진 체계 (절차)	<p>【농지매매】</p> <pre> graph TD     A[농식품부] &lt;--&gt; B[한국농어촌공사]     B &lt;--&gt; C[농지 소유자]     B &lt;--&gt; D[지원농가 (청년농, 일반농 등)]     C -- "• 매도대금 지급" --&gt; B     B -- "• 농지매도 신청" --&gt; C     D -- "• 매도" --&gt; B     B -- "•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사업정산", "• 사후관리보고" --&gt; A     B -- "• 지정시달", "• 사업계획 승인" --&gt; A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 승인 신청</li> <li>• 사업정산</li> <li>• 사후관리보고</li> <li>• 지정시달</li> <li>• 사업계획 승인</li> <li>• 매도대금 지급</li> <li>• 농지매도 신청</li> <li>• 매도</li> <li>• 농지매입 신청</li> <li>• 매입 대금 분할 납부</li> </ul>
	<p>【임차임대】</p> <pre> graph TD     A[농식품부] &lt;--&gt; B[한국농어촌공사]     B &lt;--&gt; C[농지 소유자]     B &lt;--&gt; D[지원농가 (청년농, 일반농 등)]     C -- "• 임차료 선지급" --&gt; B     B -- "• 임대 신청" --&gt; C     D -- "• 임대" --&gt; B     B -- "•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사업정산", "• 사후관리보고" --&gt; A     B -- "• 지정시달", "• 사업계획 승인" --&gt; A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 승인 신청</li> <li>• 사업정산</li> <li>• 사후관리보고</li> <li>• 지정시달</li> <li>• 사업계획 승인</li> <li>• 임차료 선지급</li> <li>• 임대 신청</li> <li>• 임대</li> <li>• 농지임차 신청</li> <li>• 임차료 납부(매년)</li> </ul>

구분	내용
	<p>【교환·분합】</p> <pre> graph TD     A[사업시행지구 (경지정리)] -- 판지 --&gt; B[농업인]     A -- 교환 분합 --&gt; B     B -- 자금지원 --&gt; C[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C -- 자금모형 --&gt; B     C -- 분할상환 --&gt; B         </pre> <p>【공공임대용 농지매입】</p> <pre> graph TD     A[농식품부] -- 사업 계획 승인 신청 --&gt; B[한국농어촌공사]     A -- 사업정산 --&gt; B     A -- 사후관리보고 --&gt; B     B -- 지점시달 --&gt; A     B -- 사업계획 승인 --&gt; A     B -- 정산 --&gt; A     B -- 핵심대금 지급 --&gt; C[농지 소유자]     C -- 매도신청 --&gt; B     B -- 농지임대 신청 --&gt; D[지원농가 (청년농, 일반농 등)]     D -- 임차료 납부 --&gt; B     E[지원농가 (청년농, 일반농 등)] -- 임차인신청 --&gt; B         </pr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5. 경영희생지원 농지 매입

경영희생지원 농지 매입 정책은 농가경영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매입한 뒤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부표 3-17〉 참조).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재무구조를 조정하여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업경영체는 부채를 청산하고 매각한 농지에 대한 임차 및 환매권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부표 3-17〉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 정상화 지원,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사업기간	• 2006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 원)	0	0	293,300
사업규모	• 2019년까지 30,605억 원(14,176ha)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형태	• 용자 100%			
지원조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백만 원 이상인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체계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 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1.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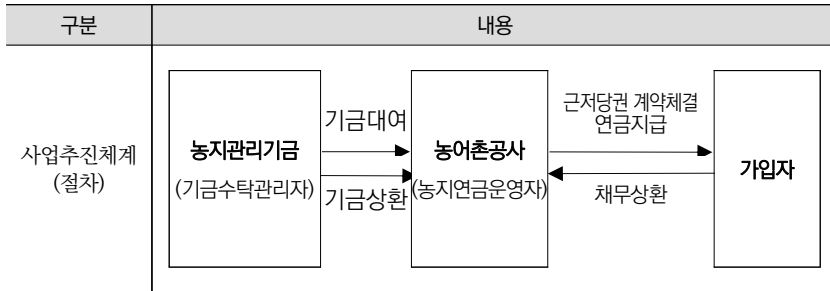
## 16. 농지연금(용자)

농지연금(용자) 정책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가격(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의해 가격 결정), 가입연령, 지급방식(종신형, 기간형, 우대형)에 따라 결정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부표 3-18〉).

이들 정책의 주목적은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농촌 사회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부표 3-18〉 농지연금(용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사업기간	• 2011년~계속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 (백만 원)	0	0	153,929
사업규모	• 2019년까지 14,492건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형태	• 용자 100%			
지원조건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맞춤형 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에서 2022. 9. 28. 인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